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양미선 · 김나영 · 박은정 · 오미애 · 송신영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저 자

양미선, 김나영, 박은정, 오미애, 송신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양 미 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나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오 미 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신 영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12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29-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가정내 양육을 활성화하고, 아동가구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0,1세 영아수당 도입을 발표하였고, 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모급여 제도를 발표하였고, 2023년 출생아(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영유아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아동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기관보육이 필요한 연령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서비스 지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가정양육수당 등 선택권 부여에 따라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본 보고서가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적정 양육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보육정책 및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부모님과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	---

I. 서론	13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8
4. 선행연구	22

II. 가정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31
--------------------	----

1. 가정양육비용 지원	33
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49

III. 해외 사례	57
------------	----

1. 핀란드	59
2. 프랑스	63
3. 시사점	68

IV. 영유아 현금지원정책 빅데이터 분석	71
------------------------	----

1. 분석 개요	73
2. 소셜 트렌드 분석	75
3. 온라인 여론 분석	77
4. 현금지원정책별 감성분석	99
5. 시사점	106

V.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및 가구 현황	107
-------------------------	-----

1. 아동 및 가구 특성	109
2.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122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133
4. 사교육 기관 이용	146

5. 자녀양육 서비스 이용	152
6. 가정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165
7. 가정양육수당 지원가구 심층면담(FGI) 결과	171
8. 시사점	184
VI.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관계	187
1. 개요	189
2.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 가구의 특성	191
3.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195
VII. 정책 제언	203
1. 영유아 가구 현금지원체계 재구조화	205
2.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양육지원 체계 구축	209
3. 맺는 말	210
참고문헌	213
Abstract	221
부록	225
부록 1. 빅데이터 추가 분석 결과	225
부록 2. 부록 표	234
부록 3. 조사표	238



표 목차

〈표 Ⅰ-3-1〉 조사 내용	20
〈표 Ⅰ-3-2〉 조사대상 아동 가구 특성	20
〈표 Ⅰ-3-3〉 FGI 참석자 자녀 연령 및 자녀양육 및 기관 이용 유형	22
〈표 Ⅰ-4-1〉 가정양육수당 적정금액 관련 조사 연구	25
〈표 Ⅱ-1-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별 지원단가	34
〈표 Ⅱ-1-2〉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34
〈표 Ⅱ-1-3〉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35
〈표 Ⅱ-1-4〉 가정양육수당 수급률: 2010~2021년	37
〈표 Ⅱ-1-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 2020년	39
〈표 Ⅱ-1-6〉 가정양육수당 사업 예산	40
〈표 Ⅱ-1-7〉 아동수당 지원 규모	42
〈표 Ⅱ-1-8〉 아동수당 예산	43
〈표 Ⅱ-1-9〉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2018~2021년	44
〈표 Ⅱ-1-10〉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8~2021년	45
〈표 Ⅱ-1-11〉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추이: 2018~2020년	45
〈표 Ⅱ-1-12〉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2018~2021년	46
〈표 Ⅱ-1-13〉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8~2021년	46
〈표 Ⅱ-1-14〉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8~2021년	47
〈표 Ⅱ-1-15〉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결산 규모: 2019~2021년	48
〈표 Ⅱ-2-1〉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변화	50
〈표 Ⅱ-2-2〉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51
〈표 Ⅱ-2-3〉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정	53
〈표 Ⅱ-2-4〉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54
〈표 Ⅱ-2-5〉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54
〈표 Ⅲ-2-1〉 가족보조금 지원의 연간 소득 한도	65
〈표 Ⅲ-2-2〉 연간 소득 기준에 따른 가족보조금 지원액 : 부부	65
〈표 Ⅲ-2-3〉 연간 소득 기준에 따른 가족보조금 지원액 : 한부모	66
〈표 Ⅲ-2-4〉 자녀교육 분담 지원의 연간 소득 한도	68
〈표 Ⅳ-1-1〉 분석 방법	74

〈표 IV-2-1〉 채널별 언급 내용 특징	77
〈표 IV-3-1〉 가정양육수당 관련 화제어 분석 TOP15	79
〈표 IV-3-2〉 기간별 사용처 변화 비교	85
〈표 IV-3-3〉 아동수당 관련 화제어 분석	88
〈표 IV-3-4〉 아동수당 기간별 사용처 변화 비교	93
〈표 IV-3-5〉 영아수당 관련 화제어 분석	95
〈표 IV-4-1〉 가정양육수당 3개년 긍·부정 단어 변화(TOP15)	100
〈표 IV-4-2〉 아동수당 2개년 긍·부정 단어 변화	102
〈표 IV-4-3〉 긍·부정 단어	104
〈표 V-1-1〉 아동 월령 및 성별	110
〈표 V-1-2〉 출생 순위	110
〈표 V-1-3〉 건강상태	111
〈표 V-1-4〉 가구원 수	112
〈표 V-1-5〉 가구 유형	113
〈표 V-1-6〉 부의 취업 상태	114
〈표 V-1-7〉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모 취업 상태	115
〈표 V-1-8〉 아버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	116
〈표 V-1-9〉 어머니 주당 평균 근무시간	117
〈표 V-1-10〉 월평균 가구소득	118
〈표 V-1-11〉 월평균 가구 지출액	119
〈표 V-1-12〉 자녀양육 위한 본인 육아휴직 경험 여부: 모	120
〈표 V-1-13〉 자녀양육 위한 본인 육아휴직 경험 여부: 부	121
〈표 V-1-14〉 자녀양육 어려움으로 인한 직장 그만둔 경험	122
〈표 V-2-1〉 가정양육수당 최초 수급시기	123
〈표 V-2-2〉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경험 여부 및 중단 횟수	124
〈표 V-2-3〉 가정양육수당 최초 중단 시기	125
〈표 V-2-4〉 가정양육수당 총 지원기간	126
〈표 V-2-5〉 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127
〈표 V-2-6〉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의 적절성	128
〈표 V-2-7〉 적정 지원금액	129
〈표 V-2-8〉 가정양육수당 주 사용처: 1+2순위	130
〈표 V-2-9〉 가정양육수당 주된 사용처: 1순위	131
〈표 V-2-10〉 가정양육수당의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에의 도움 정도	132

〈표 V-2-11〉 가정양육수당이 자녀양육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133
〈표 V-3-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경험 여부	134
〈표 V-3-2〉 향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계획	135
〈표 V-3-3〉 향후 어린이집 이용 시기	136
〈표 V-3-4〉 향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이유	138
〈표 V-3-5〉 향후 사교육 기관(유치원 형태) 이용 여부	139
〈표 V-3-6〉 이용기관 유형	139
〈표 V-3-7〉 이용 어린이집 유형	141
〈표 V-3-8〉 어린이집 이용 이유	141
〈표 V-3-9〉 어린이집 이용기간	143
〈표 V-3-10〉 이용 유치원 유형	144
〈표 V-3-11〉 유치원 이용 이유	144
〈표 V-3-12〉 유치원 이용 기간(종료시점 - 시작시점)	145
〈표 V-4-1〉 학원, 방문과외,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 이용 시작 시기	146
〈표 V-4-2〉 학원, 방문과외, 학습지 관련 정보 습득처	147
〈표 V-4-3〉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교육서비스	148
〈표 V-4-4〉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이용 빈도	149
〈표 V-4-5〉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주된 이용 이유	150
〈표 V-4-6〉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이용 비용	151
〈표 V-5-1〉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여부	153
〈표 V-5-2〉 시간제보육 이용 빈도	153
〈표 V-5-3〉 시간제보육 월평균 이용 비용	154
〈표 V-5-4〉 시간제보육 보육료 부담 정도	155
〈표 V-5-5〉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현황	156
〈표 V-5-6〉 낮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양육자	157
〈표 V-5-7〉 주 양육자: 가족 및 친인척	158
〈표 V-5-8〉 주 양육자: 비혈연인	159
〈표 V-5-9〉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	160
〈표 V-5-10〉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주당 돌봄 횟수	161
〈표 V-5-11〉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시간	162
〈표 V-5-12〉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시간	163
〈표 V-5-13〉 개인양육서비스 비용: 혈연	164

〈표 V-5-14〉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 비용	165
〈표 V-6-1〉 집 주변 자녀양육지원 인프라의 충분성	166
〈표 V-6-2〉 어린이집·유치원 적정 이용 시작시기	167
〈표 V-6-3〉 만3세 이상 아동 가정양육수당 미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68
〈표 V-6-4〉 만3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의향	169
〈표 V-6-5〉 어린이집·유치원 보낼 의향 없는 이유	170
〈표 VI-2-1〉 가구 수 비교	191
〈표 VI-2-2〉 작년 한 해 총 근로소득 비교: 2009~2019년	192
〈표 VI-2-3〉 보육·교육 소요 비용 비교: 2009~2019년	193
〈표 VI-2-4〉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 비교	194
〈표 VI-2-5〉 정부 지원의 도움 정도 비교: 2013~2019년	195
〈표 VI-3-1〉 요약 통계	196
〈표 VI-3-2〉 가정양육수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200
〈표 VI-3-3〉 가정양육수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주40시간 이상 근무)	201



그림 목차

[그림 II-1-1]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	36
[그림 II-1-2] 월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률: 2021년	38
[그림 II-1-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과 미이용 아동 비율	39
[그림 II-1-4]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41
[그림 II-1-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예산	49
[그림 II-2-1]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추이: 2015-2021년	52
[그림 II-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추이: 2018-2022년	55
[그림 IV-1-1] 분석 개요	73
[그림 IV-1-2]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75
[그림 IV-2-1] 연도별 문서 발생 추이	76
[그림 IV-2-2] 주제별 문서 발생 채널 현황	77
[그림 IV-3-1] 가정양육수당 기간별 문서 발생 추이	78
[그림 IV-3-2] 가정양육수당 관련 담론 유형 비중	81
[그림 IV-3-3] 가정양육수당 워드 클라우드	82
[그림 IV-3-4] 가정양육수당 관련 네트워크 분석	82
[그림 IV-3-5] 가정양육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82
[그림 IV-3-6] 가정양육수당 주요 사용처	83
[그림 IV-3-7] 가정양육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세부 현황	84
[그림 IV-3-8] 3개년 사용처 대분류별 평균 언급량에 따른 언급량 증감을 분포 비교	85
[그림 IV-3-9] 아동수당 기간별 문서 발생 추이	87
[그림 IV-3-10] 아동수당 관련 담론 유형 비중	89
[그림 IV-3-11] 아동수당 주요 화제어 워드클라우드	90
[그림 IV-3-12] 아동수당 관련 네트워크 분석	90
[그림 IV-3-13] 아동수당 사용처 관련 Word Cloud (Top50 키워드)	91
[그림 IV-3-14] 아동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세부 현황	91
[그림 IV-3-15] 2개년 사용처 대분류별 평균 언급량에 따른 언급량 증감을 분포 비교	92
[그림 IV-3-16] 영아수당 기간별 문서 발생 추이	95
[그림 IV-3-17] 주요 화제어 Word Cloud	95

[그림 IV-3-18] 영아수당 관련 담론 유형 비중	96
[그림 IV-3-19] 사용처 관련 Word Cloud (Top50 키워드)	98
[그림 IV-3-20] 영아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세부 현황	98
[그림 IV-4-1] 가정양육수당 관련 긍·부정 분석	100
[그림 IV-4-2] 가정양육수당 관련 긍·부정 Word Cloud (Top50)	101
[그림 IV-4-3] 아동수당 관련 긍·부정 분석	102
[그림 IV-4-4] 아동수당 관련 긍·부정 Word Cloud (Top50)	103
[그림 IV-4-5] 영아수당 관련 긍·부정 분석	104
[그림 IV-4-6] 영아수당 관련 긍·부정 Word Cloud (Top50)	105
[그림 V-2-1] 가정양육수당 주 사용처: 1+2순위	130
[그림 V-3-1] 아동 월령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계획	136
[그림 VI-2-1] 작년 한 해 총 근로소득 비교: 2009~2019년	193
[그림 VI-2-2] 보육·교육 소요 비용 비교: 2009~2019년	194
[그림 VI-3-1]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 가구 비율과 취업 여성 비율: 2009~2019년	197
[그림 VI-3-2]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 가구 비율과 취업 여성 비율: 2013~2019년	198
[그림 VII-2-1] 현행 영유아 현금지원체계	208
[그림 VII-2-2] 영유아 현금지원체계 개편(안)	209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IV-5-1〉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관련 문서 발생량	228
〈부록 표 IV-5-2〉 아동수당 금융비용 관련 문서 발생량	230
〈부록 표 V-1-1〉 가정양육수당 표본 배분	234
〈부록 표 V-2-1〉 조사 표본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수와 양육수당 대상이 되는 아동 수	235
〈부록 표 V-2-2〉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의 성비	235
〈부록 표 V-2-3〉 가정양육수당 대상 연령별 구성	236
〈부록 표 V-7-1〉 자녀양육지원 정책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정책	237
〈부록 표 V-7-2〉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가정양육수당 인상 vs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237
〈부록 표 V-7-3〉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가정양육수당 vs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37
〈부록 표 V-7-4〉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vs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37



부록 그림 목차

[부록 그림 IV-3-1] 가정양육수당 관련 전체 채널 사용처 언급 비중	225
[부록 그림 IV-3-2] 가정양육수당 기간별 사용처 변화: 2011, 2013, 2022 ..	226
[부록 그림 IV-3-3] 아동수당 관련 전체 채널 사용처 언급 비중	227
[부록 그림 IV-3-4] 2018년(아동수당 도입 시기) 긍·부정 분석 결과	228
[부록 그림 IV-5-1]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언급량 변화 추이	228
[부록 그림 IV-5-2] 아동수당 금융비용 관련 문서 발생 추이	230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특성과 어린이집·유치원 및 양육 서비스 (돌봄 및 교육)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둬.

나. 연구내용

- 영유아 가정 양육지원정책 관련 법 및 제도, 선행연구 등을 고찰함.
 -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지원 아동 추이, 예산 등의 통계자료를 검토함.
 -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를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가 순수 자체 예산으로 영유아 가구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육아수당, 육아지원금 등 현금 지원사업의 현황과 예산 규모를 파악함.
- 양육수당, 가정 내 양육가구 지원 제도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을 파악함.
 - 포털 블로그 또는 카페, 지식인 등에 나타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과 이미지, 사용처 등을 살펴봄.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가구의 특성 및 양육방식 등을 파악함.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특성을 비롯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외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함.
-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함.
- 아동 생애단계별 적정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양육수당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가정양육수당 등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 및 제도, 가정양육수당 제도 변화, 지원 실적,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정리함.
 - 가정양육수당 및 가정양육가정 지원서비스 등 관련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함.
-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육·교육 비용 규모,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조사를 실시함.
- 블로그 및 카페, 지식인 등의 포털과 국내 100여개 언론사 뉴스 기사 등에 언급된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아동 가구의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취학 전 영유아 부모 총 31명을 대상으로 FGI 심층면담을 실시함.
- 자문회의와 간담회 개최하여 설문조사 등 실증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방안을 모색함.

2. 영유아 현금지원정책 빅데이터 분석

가. 분석 개요

- 영유아기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현금지원정책 관련 온라인 관심도와 주요 담론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하고, 현금지원정책별 사용 형태 및 트렌드를 분석함.
- 분석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다음 카페 등의 포털 사이트와 국내 100여개 언론사의 관련 뉴스 기사임.
- 분석 주제는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3가지 정책이며, 분석기간은 주제별로 정책 시행시기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분기 단위로 설정함.
 - 2021년 도입된 영아수당은 시행시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 1월 1

일부 4월 28일까지로 설정함.

□ 분석방법은 소셜 트렌드 분석, 온라인 여론 분석, 긍·부정 요인 분석 실시함.

나. 소셜 트렌드 분석

□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약 12년 간 현금지원정책별로 연도별 문서 발생량을 확인함.

- 총 발생 문서량은 622,988건, 채널별 문서 발생 비중은 네이버, 다음 포털의 “맘카페”와 복지, 유아교육 관련 정보 교류 카페가 54.7%, 블로그 31.3%, 뉴스 10.6%, 지식IN 3.3%임.

□ 현금지원정책별 온라인 언급량은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순임.

- 온라인 언급량은 ‘가정양육수당’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도입 시기 등 고려하면 ‘아동수당’이 시행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언급량이 가장 많음.
-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금액이 그간 동결되었고, 아동수당은 보편 지급 특성과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문서 발생 채널은 카페가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블로그가 높음.

- 영아수당의 경우 2022년부터 도입된 최신 시행 정책으로, 단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정보 공유형 게시글이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남.

다. 온라인 여론 분석

1) 가정양육수당

□ 정부의 현금지원정책 관련 문서 622,988건 중 ‘가정양육수당’ 문서 발생량은 24.8%를 차지함.

-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온라인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언급량은 2020년, 2021년, 2013년 순임.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양육수당 예산 추가 확보 보도 등 중심으로 문서 발생량이 폭증하였고, 2013년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증가함.

□ 가정양육수당 관련 담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로 수령금액, 신청방법, 출생신고 일자에 따른 소급지원 등의 언급이 발생함.

□ 가정양육수당의 사용처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통장과 병원, 접종 등이 다수 언급됨.

- 세부 이용 형태 기준으로 예금, 보건의료비, 증권, 가정 식비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2) 아동수당

□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여 분기별 문서 발생량을 분석함.

-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지원정책 관련 문서는 약 369,047건이고, 이 중 '아동수당' 문서 발생량은 39.7%를 차지함.
- 아동수당 언급량은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19년 1분기 순임.

□ 아동수당 관련 담론 분석 결과, 지원 연령 확대에 따른 소급 지원, 세금 관련 문의, 통장 변경 등의 언급이 발생하다가 이후에는 연령 확대에 따른 소급지원 관련 언급이 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를 보임.

□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양육수당, 지급, 계좌, 만원 등의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발생함.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대, 양육수당, 지급일, 아기 적금과 같은 키워드가 출현 빈도가 높음을 확인함.

□ 아동수당 주요 사용처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금융 비용(28.5%), 보건의료비(22.3%), 식료품비(14.1%) 순으로 주요 사용처 언급량이 발생함.

- 코로나19 전후로 아동수당 사용처 패턴에 변화가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그 이후인 2022년의 변화폭이 큰 아동수당 사용처는 금융비용(5.07%), 식료품비(-3.29%), 의류·미용(-2.51%) 순임.

3)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문서 발생량을 분석함.

- 해당기간 내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문서는 총 69,559건이며, 이 중 '영아수당' 문서 발생량은 9,869건으로 14.2%를 차지함.

- 채널별로는 블로그 61.8%, 카페 27.1%, 뉴스 8.5%, 지식인 2.6% 순임.
- 화제어를 분석한 결과, 처음 시행된 영아수당 신청 관련 키워드 언급량이 증가하였고, 구체적으로 신청, 지급,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의 키워드임.
- 영아수당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수령금액, 소급 적용,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등의 언급이 발생함.
- 영아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수령금액 관련 언급이 가장 많고, 지역별 출산/육아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하게 나타남.

라. 현금지원정책별 감성분석

1)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만족도에 대해 긍정 40%, 부정 60%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 긍정 비율이 2011년 35.2%에서 2013년 47.1%, 2022년 50.4%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 언급되는 주요 내용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 ‘단가’ 중심의 언급이 주로 나타나며 기본적인 수급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일반적으로 나타남.
 - 부정적 내용으로는 보육료에 비해 지원 단가가 적음에 대한 불만 표출 관련 부정 인식이 존재하며 출산 후 경력단절에 대한 언급

2) 아동수당

- 아동수당 관련 긍·부정 분석을 살펴보면, 긍정 44.0%, 부정 56.0%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됨.
- 가정양육수당과 유사하게 시기별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지급연령이 2021년 기준 만7세 미만에서 2022년 1월부터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이 일부 반영된 것임.
- 아동수당에 대한 긍정 반응은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형평성’ 중심의 언급이

주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지원단가에 대한 만족에 관한 내용임.

- 부정 반응은 지원단가에 대한 불만족과 제도 도입 초기 차등 지원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 해당됨.

3) 영아수당

- 영아수당 만족도 관련 긍·부정 분석 실시한 결과, 긍정 65.0%, 부정 35.0%임.
 - 지원단가가 2022년 30만원에서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긍·부정 관련 내용은 '수혜 대상에 관한 형평성' 중심의 언급이 주로 나타났으며,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만족이 언급됨.
 - 부정적 인식은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는 점에 대한 불만임.

3.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및 가구 현황

가. 아동 및 가구 특성

-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총 2,295명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현황 조사에 참여함.
 - 가정양육수당 지원받는 아동 연령은 평균 48.9개월임.
 -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 90.4%, 둘째 9.2%, 셋째 이상 0.4%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이 있는 가구 총 2,057가구가 조사에 참여함.
 - 가구원 수는 3명 69.4%, 4명 24.3%로 이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90.2%로 다수를 차지하고,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는 7~8% 정도임.
 - 아버지의 97.0% 취업 중, 1.7% 휴직 중(육아휴직 포함), 1.3%만 미취업 상태, 어머니의 47.9% 취업 중, 13.4% 휴직 중, 38.7% 미취업(구직 및 학업 중 포함) 상태
 - 어머니 중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경험이 없고, 36.2%는 과거에 육아휴직 경험이 있으며, 4.5%만 현재 육아휴직 중임.

- 어머니 중 42.9%는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없음.

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 24개월 이상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최초 지원받기 시작한 시기는 0~11개월 67.8%, 12~23개월 9.8%, 24~35개월 9.8%, 36개월 이상 12.6%임.
-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횟수는 아동 1인당 평균 1.1회
 - 가정양육수당 지원 최초 중단시기는 평균 49.4개월이며, 36개월 이상이 77.6%, 24~35개월 15.8%, 12~23개월 5.8%, 0~11개월은 0.8% 순임.
- 자녀가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부적절 40.5%, 매우 부적절 35.3%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적절성 점수는 4점 평균 1.9점
 - 가정양육수당 적정 금액으로 46.0%는 30~50만원, 50~70만원 26.2%, 30만원 미만 21.4%, 70만원 이상 6.4% 순이었고 평균 39.5만원임.
- 자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가정양육수당의 주 사용처를 1,2순위로 알아본 결과, 식료품비 61.6%, 생활필수비 39.6%, 의료비 23.1%, 자녀보험비 18.0%, 자녀적금 및 주택청약 16.3% 순임.
- 가정양육수당의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 도움 정도에 대해 부모 중 48.8%는 어느 정도 도움, 18.3%는 매우 도움된다, 도움정도는 평균 2.8점임.
 -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89.7%가 자녀한테 드는 비용이 지원금액에 비해 적다, 5.6%는 가족 생활비 통장에 입금되어 가족 전체 생활비로 사용

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 조사대상 아동 중 76.9%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음.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계획에 대해 31.4%는 유치원, 31.3%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둘다 보낸다는 아동은 13.3%임.
 - 어린이집 이용 계획 있는 경우, 이용 시기로 자녀 월령 36개월 미만 41.2%, 36~48개월 미만 38.7%, 48개월 이상 20.1% 순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 아동의 성장발달 52.1%, 16.8%는 부모 모두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서, 13.6%는 양육 부담

을 덜기 위해서라고 답함.

- 향후 사교육기관 이용 계획이 있는 아동은 16.6%임.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만 이용 82.4%, 어린이집·유치원 둘다 이용 13.5%, 유치원만 이용 4.1% 정도임.
- 어린이집 이용 이유로, 47.4%가 생업(취업, 자영업) 등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워서, 아동발달을 위한 교육 26.9%, 양육부담 경감 16.0%임.
- 유치원 이용 이유로, 아동발달 위한 교육 43.4%, 생업(취업, 자영업) 등으로 직접 양육 어려움 34.0%, 양육부담 경감 11.2%,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6.4%임.

라. 사교육 기관 이용

- 사교육기관 이용 시작시기는 평균 42.1개월부터로,
 - 52.8% 학습지(방문형, 비방문형), 37% 문화센터, 27.6% 시간제 학원, 25% 교육용 온라인콘텐츠, 17% 교재 활용 교육을 이용함.
 - 사교육 이용 이유로, 자녀의 재능과 소질 개발 43.0%, 자녀가 원해서 19.5%,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3.3%, 초등학교 선행학습 9.1%임.
 - 사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으로 월 32.7만원을 지출함.

마. 자녀양육 서비스 이용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84.2%로 다수를 차지함.
 -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 주기는 매일 이용 49.1%, 주3~4회 25.6%, 주 1~2회 10.9%임.
 - 시간제보육 이용 비용은 월평균 24만 6,700원이고, 비용 부담 정도는 4점 평균 2.3점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2.7%이고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음.
 - 이용 서비스는 장난감 대여 41.2%, 도서 대여 23.9%, 부모교육 14.8%, 부모자녀 프로그램 14.5%, 양육상담 4.4%임.
-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82.7%,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인이 돌보는 경우

가 23.5%, 비혈연인은 3.0%임.

- 주 양육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비동거 외조부모 44.4%, 비동거 친조부모가 27.0%, 동거 외조부모 16.2%, 동거 친조부모 8.7%임.
- 주 양육자가 비혈연인인 경우, 아이돌보미 58.9%, 베이비시터 27.5%. 동거 비혈연인이나 파출부 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모 등은 각각 3% 임.
-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는 기관 적응 우려 27.1%, 비용 부담 12.5%, 기타 12.2%, 이용 희망 기관 대기자 문제 11.4%,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불안 10.7%

바. 가정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 ☐ 자녀양육지원 인프라(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 대여점 등)의 충분성에 대해 부모 중 23.6%만 충분하다고 답함.
- ☐ 어린이집·유치원의 적정 이용 시작시기로, 만3~4세가 32.7%, 만2~3세 25.9%, 만4~5세 15.4%, 만5세 이상 13.8% 순이며 평균 2.9세임.
- ☐ 만3세 이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51.6%가 찬성함.
- ☐ 만3세 이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 56.7%가 있다고 응답
 -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39.9%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 18.2%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월 내는 추가 비용 부담, 10.3%는 자녀가 영어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해서, 8.3%는 초등학교 선행학습에 학원이 적합하기 때문임.

4.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관계

- ☐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2차-22차(2009년-2019년) 데이터를 활용함.
-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2009년 도입되고, 2013년 지원대상이 만0-5세까지만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9년 이후 조사 자료 분석에 포함, COVID-19 영향이 일부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2020년 자료를 제외함.

-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중 만 0세부터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둔 여성 중 만 20세~49세 사이에 있는 여성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가. 종속변수(취업 여부)에 따른 추정된 결과

- 모형1은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자녀를 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확률이 24% 더 낮음.
 - 개인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개인의 비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그 확률이 7%로 낮아짐.
- 모형2는 이중차분모형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 가정양육수당의 보편적 지급은 만 0세 또는 만 1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음.
 -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여성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나. 종속변수(주 40시간 이상 근로 여부)에 따른 추정된 결과

- 주당 40시간 근로 여부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자녀를 둔 여성의 풀타임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위와 동일한 모형으로 추정함.
 - 2013년 이후 자료만으로 추정한 결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풀타임 근로 가능성이 17.7% 낮고, 개인 고정효과까지 포함한 결과 4.3% 낮게 나타남.
-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2013년 가정양육수당의 보편적 확대가 여성의 풀타임 근로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개인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에서 가정양육수당의 보편적 확대가 만 0세 자녀를 둔 여성의 풀타임 근로 가능성을 5.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옴.

5. 정책 제언

가. 영유아 가구 현금지원체계 재구조화

- 그간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주로 지원단가 인상에 집중되어 있었음.

- 아동, 보육 학계에서는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영아의 불필요한 기관 이용을 차단하고, 영유아가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영유아 부모들도 기관 이용 영유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육료 수준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어야 하며, 보육료 인상 수준에 맞춰 매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 여성계는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원단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움.
-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는 0~2세 전계층으로 확대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간 유지됨.
- 가정양육수당 제도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하락 추세를 보였고, 영아의 기관 이용을 부추기게 만들.
-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도입으로 그간 0~5세 전 계층에 지원하여 오던 가정양육수당 제도 개편이 불가피해짐.
- 영아수당 도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12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으로 축소되었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될 경우 24개월~취학 전으로 더욱 축소됨.
-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대상을 0,1세에서 2세까지로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일몰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아동 및 부모, 가구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만3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도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겠다는 이유로 부모 중 39.9%가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지적한 바 있어 어린이집·유치원의 질 개선이 시급함.
- 최근 몇 년간 가정양육수당 외에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의 지원목적이나 지원대상이 유사 중복되는 현금지원정책이 도입됨.
-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들은 정작 이들 정책을 제대로 구분하거나 지원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단순화시키고, 정책 수요자 대상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하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일몰함.
- 또래 아동들에 비해 발달이 늦거나 장애 등 개인적 특성이 있는 아동,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조손 가구 등 가구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호주 등의 국외 사례와 같이 특별수당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 시간제보육 지원대상을 유아까지로 확대하고,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문화바우처 등의 양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대체 지원함.
- 현금 대체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월10만원)보다 혜택 수준을 높이고, 각각의 지원 금액을 공시하여 부모 만족도를 높임.

나.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양육지원 체계 구축

- 2023년 부모급여 시행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나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임.
-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종일제), 시간제보육, 장난감, 도서, 양육물품 등 대여서비스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부모-자녀 체험실 등 영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유아 대상의 서비스를 확대함.
- 농어촌 등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분속 등의 거점 형태의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간제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부모의 요구에 따라 기관을 이용하거나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 신청, 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
- 아동 발달 특성 상 기관 이용이 바람직한 연령의 아동을 위해서는 질 높은 어린이집·유치원을 확대함.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선행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을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영유아보육법 제34조2항을 개정하여 양육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도입 근거로 ‘출산 기피’를 막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제공되는 수당제도 즉, 보육서비스와 대체 관계에 있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되었으며, 이후 지원대상을 확대하다가 2013년 3월부터는 만0~5세 아동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김인경(2012)은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간의 지원 형평성 논리에서 시행하였으나 2012년 무상 보육 수요를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재정적 우려로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홍승아 외(2013)는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시설 이용과 가정 내 양육의 두 가지 자녀 양육 방식 중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현금이 지원된다는 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저소득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가정 내 자녀의 올바른 사회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요소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는 2010년 0,1세 51,838명¹⁾(보건복지부, 2011a)에서 2013년 1,053,071명(보건복지부, 2014a)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²⁾ 이후 출생아 수 감소로 지원 아동 수가 2020년 642,095명까지 줄었다³⁾(보건복지부,

1) 0세 5.5%, 1세 6.2% 총 5.8%(보건복지부, 2011a).

2) 0~11개월 32.3%, 12~23개월 71.0%, 24~35개월 30.4%, 36~47개월 13.2%, 48~59개월 8.5%, 60~71개월 8.6%, 72~86개월 8.2%(보건복지부, 2014a).

3) 0~11개월 91.7%, 12~23개월 61.5%, 24~35개월 19.4%, 36~47개월 9.4%, 48~59개월 7.9%, 60~71개월

2021a). 전체 지원율은 12~23개월과 48~59개월, 60~71개월 등 3개 구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양육이 보편화되면서 특히 유아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상승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 확대, 저소득 가구의 가정 내 방임 등의 여지가 있다.

한편,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는 보육료와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지원단가 인상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첨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적절성, 타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고제이 외, 2015; 김나영 외, 2019; 김미곤 외, 2019; 양미선·이윤진 외, 2016; 유해미 외, 2011; 이정원·이혜민, 2014; 이정원 외, 2012, 2018)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적정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신윤정 외(2009)는 아동연령, 소득기준, 급여액수 등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분석하였고, 최현수 외(2012)는 2013년 양육수당 확대 개편에 따른 선정기준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고제이 외(2015)는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를 추정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김나영 외, 2019; 김미곤 외, 2019; 양미선·이윤진 외, 2016; 유해미 외, 2011; 이정원 외, 2012, 2018; 이정원·이혜민, 2014)에서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의 적정 지원단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0,1세 영아에게 2022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아동수당도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수급 연령을 확대하였다.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의 현금지원정책 간의 정합성⁴⁾뿐만 아니라 양육방식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그간 여성계가 꾸준히 주장하였던 0,1세 현금지원 인상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월 8.4%, 72~86개월 9.8%(보건복지부, 2021a).

4) 생일 하루 차이로 2년간 360만원 킬 받아"...영아수당이 뭐길래(머니투데이, 2021.11.9.일자 기사)

일부에서는 영아수당(0,1세)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가정 양육수당이 단가만 인상되었을 뿐 제도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과 만 0,1세 연령 아동이 출생 시점의 작은 차이로 장기간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14 재인용).

마지막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정한 출발선 보장 차원에서 아동 생애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아동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시설보육이 필요한 연령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서비스 지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가정양육수당 등 선택권 부여에 따른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부모의 선택권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기반 위에서 성장단계별로 최선의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적정 양육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대상 연령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내에서 양육하더라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와 부모가 아닌 양육자가 돌보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측면에서 가정양육수당 유지 여부와 적정 지원방식과 지원수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특성과 어린이집·유치원 이외의 서비스(돌봄 및 교육)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행 양육지원체계를 재검토하고, 아동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자녀양육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아동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체

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양육수당 관련 법 및 제도,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제도 변화에 따른 지원 아동 추이, 예산 등의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성과와 의의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 관련 법 및 제도, 예산, 가정양육수당과의 정합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순수 자체 예산으로 영유아 가구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육아수당, 육아지원금 등 현금 지원사업의 현황과 예산 규모를 파악하였다.

셋째, 양육수당, 가정 내 양육가구 지원 제도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포털, 블로그 또는 카페, 지식인 등에 나타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의 가정양육지원정책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과 이미지, 사용처 등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가정양육수당 가구의 특성 및 양육방식을 파악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특성을 비롯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외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제도 취지와 실제 지원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소득계층 및 모취업 여부, 양육방식(가정내 양육, 교육서비스 이용, 가정내 돌봄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였다.

여섯째,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곱째, 아동 생애단계별 적정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양육수당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가정양육수당 등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 및 제도, 가정양육수당 제도 변화, 지원 실적,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및 가정양육지원서비스 등 관련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나. 자료 분석

1)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관련 통계자료 분석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DB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월령 구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육·교육 비용 규모,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실태조사

1) 조사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연령 및 지역 등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가구특성(부모 연령, 취업여부, 근로형태, 소득 등) 및 지역규모, 주양육자(부모, 혈연·비혈연 등),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이유, 기타 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베이비시터 등) 및 사교육(사설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등) 이용 현황, 향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계획,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가정양육수당 제도(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적절성 및 만족도, 아동 생애단계별 양육지원 정책의 적절성 및 충분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I-3-1〉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I. 가구 특성	- 가구원 수, 가구형태 등 - 부모사항: 연령, 학력, 건강상태, 취업여부 및 미취업 이유, 직업, 종사상 지위, 토요근무여부, 출퇴근시간, 총 근로시간, 소득 - 가계경제: 월평균 총 가구소득과 총 지출액
II. 자녀양육특성	- 낮시간 주 양육자, 육아정보 및 상담 정보처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이유 및 계획, 향후 어린이집 입소시기, 어린이집 이용 이유 - 지원유형별 지원여부,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금액만족도,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월평균 양육비, 가정양육수당 가계도움정도
III.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실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여부, 이용경험, 자녀양육 도움정도 • 시간제보육 인지 여부, 정보처, 이용주기, 1회 이용시간, 이용 이유, 만족도, 미이용 시 이용 의향, 차등지원 의견, 지원시간 및 대상 확대 시 이용 의향 • 시간제 학원, 학습지, 개별교육 등 이용 여부, 이용 개수 및 비용
IV. 개인양육 지원 서비스	개인 양육자 유형, 이용 이유, 정보습득 경로, 양육시간, 비용
V. 양육지원체계 정책 관련 의견	아동 생애단계별 양육지원제도의 적절성 및 충분성

3) 조사 결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조사에 참여한 아동 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3-2〉 조사대상 아동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자녀 수		맞벌이 여부	
1명	50.9(1,169)	맞벌이	58.4(1,341)
2명	39.4(904)	외벌이	41.6(954)
3명	8.8(203)	가구소득	
4명	0.9(20)	250만원 이하	4.0(92)
수급 자녀 출생순위		251~350만원	16.0(367)
첫째	90.4(2,075)	351~500만원	29.1(668)
둘째	9.2(212)	501~600만원	16.3(374)
셋째 이상	0.4(9)	601만원 이상	34.6(794)
수급 아동 월령		지역규모	
24~36개월 미만	23.5(539)	대도시	49.9(1,146)
36~48개월 미만	28.9(664)	중소도시	41.1(943)
48~60개월 미만	17.7(406)	농어촌	9.0(207)
60개월 이상	29.9(686)		
전체	100.0(2,295)	전체	100.0(2,295)

최종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자녀를 둔 2,057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총 2,295명의 아동 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가구의 총 자녀수를 보면, 1명이 50.9%로 절반을 차지하고, 2명 39.4%, 3명 8.8%, 4명 0.9% 순이었다. 수급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 90.4%, 둘째 9.2%, 셋째 이상 0.4%로 첫째가 다수를 차지하고, 월령은 24~36개월 미만 23.5%, 36~48개월 미만 28.9%, 48~60개월 미만 17.7%, 60개월 이상 29.9% 순이었다. 아동 가구의 부모 중 58.4%는 맞벌이이고, 나머지는 외벌이이며, 가구소득은 34.6%가 601만원 이상, 29.1%가 351~500만원, 16.3%가 501~600만원, 16.0%가 251~350만원, 4.0%가 250만원 이하 이었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49.9%로 다수이고, 중소도시 41.1%, 농어촌 9.0% 이었다.

라. 빅데이터 분석

블로그 및 카페, 지식인 등의 포털과 국내 100여개 언론사 뉴스 기사 등에 언급된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아동 가구의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동수당은 2018년,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제도 도입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의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인 TousFlux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의 사용처 및 정책 만족도, 적정 금액 등에 대한 여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소셜 트렌드 분석, 온라인 여론 분석(워드클라우드분석, 네트워크분석), 긍·부정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제4장에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마. FGI 심층면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취학 전 영유아 부모 총 31명을 대상으로 FGI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월령 및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표 I-3-3〉 FGI 참석자 자녀 연령 및 자녀양육 및 기관 이용 유형

단위: 명

구분	참여 인원	연령
기관 미이용	24	24개월~5세
영어학원	6	6~7세
놀이학교	1	32개월

주: 영어학원은 종일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함.

면담내용은 가구특성(부모 연령, 취업여부, 근로형태, 소득 등), 기관 이용 여부, 기관 이용 시 사유 및 이용 현황(기관유형 및 비용 부담금액 등), 기관 미이용 시 사유 및 서비스 이용 현황(주 양육자, 기타 돌봄 서비스 및 사교육 이용 여부와 유형, 향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계획,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등), 정부 지원제도(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적절성 및 만족도, 정부 양육지원체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바. 간담회 및 자문회의

관련 전문가, 부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방향 및 연구방법, 조사문항, 조사방법, 정책 제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문조사 등 실증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선행연구

가.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제도 개편

신윤정 외(2009)는 양육수당 제도 도입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확대 시행을 위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과 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양육수당은 도입 초기 소득수준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의 1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09~2012년 기간에 대해 지급 연령, 가구 소득기준,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별 수혜자 규모 및 그에 따른 정책 효과, 예산 추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양육수당이 현금

으로 지급되고, 여성의 취업 의사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 1인당 양육비용과 여성의 취업 의사를 저해시킬 수준의 양육수당 액수⁵⁾ 조사결과가 지급액에 미치지 못함을 근거로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주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이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급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등 기타 양육지원 정책과 중복되지 않으며, 정책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해 특정 서비스에 한해 제공되는 바우처 형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안하였다.

홍승아 외(2013)는 양육수당의 과도한 시설 이용률 감소에 대한 효과는 0, 1세에 한정되며 지방재정의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양육수당 대상자를 1세 이하 아동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양육수당의 젠더효과와 계층효과를 보완하고, 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므로 아동수당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이 경우 국고보조를 재검토와 아동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수당 내에 편입하는 방안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채정(2017)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7년 기준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가 0세반 825,000원, 1세반 569,000원인데 비해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0,000원, 24개월 미만 150,000원, 36개월 미만 100,000원으로 절대적인 지원단가가 적을 뿐 아니라, 부모의 직접 돌봄이나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시 지출하게 되는 실질적인 양육비용을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보육료 전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개인 대리양육서비스 이용률과 지출 비중을 근거로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수당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은영(2012)은 양육수당 지급 시 바우처 형태를 취하고 시간제 보육과 부모교육·아동의 건강검진 등 조건을 두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에 추가적인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현수 외(2012)는 2013년 보육료 지원 확대와 함께 양육수당을 소득인정액 하

5) 2009년 기준 자녀 1인당 양육비는 28만원, 여성의 취업 의사를 저해시킬 수준의 양육수당 액수는 30만원으로 집계됨.

위 70% 이하 2세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정책 실행을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 가구 소득과 재산 보유실태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고, 보장단위, 기초공제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액과 소득환산율 수준, 가구 균등화 지수 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종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4인 가족 기준 5,834,000원으로 추산했다.

나. 가정양육수당 적정 지원단가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도입 이후 대상 및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지원액의 적정금액 수준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보육료 지원과의 차이로 인한 선택권 보장 문제, 실제 양육비용과의 차액,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칠지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며(김나영 외, 2019; 김미곤 외, 2019; 양미선·이윤진 외, 2016; 유해미 외, 2011; 이정원 외, 2012, 2018; 이정원·이혜민, 2014), 사회적 측면에서 성장과 소득 분배 효과에 대해 다루어진 연구가 일부 있다(고제이 외, 2015).

이들 연구는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주로 실시하였는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수준, 양육방식 변경을 고려할만한 지원수준, 취업모가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지원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질문 형식이나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위한 금액보다는 양육방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금액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취업 등 경제활동 선택을 변경할 만큼의 금액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 및 조사 결과는 <표 II-2-1>에 정리하였다.

고제이 외(2015)는 양육수당 개편과 관련하여 6가지 정책시나리오⁶⁾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만 0-2세에 한정하여 21-2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나리오가 장·단기적으로 성장-분배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시나리오로 나타났으며, 만 0-2세 한정 10만원 인상하는 조정안

6) 6가지 정책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① 각 연령별 약 20-23만원 인상, ② 약 14-16만원 인상, ③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최대수준 인상, ④ 만 0-2세 대상 약 21-22만원 인상, ⑤ 만 0-2세 대상 10만원 인상, ⑥ 양육비용 전액 보전을 위해 연령에 따라 19-33만원 인상

또한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제이 외(2015)는 만 0-2세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최소 10만원 이상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I-4-1〉 가정양육수당 적정금액 관련 조사 연구

구분	질문	적정금액
유해미 외 (2011)	- (양육수당 수급자&비수급자) 귀하는 현재 지급하는 양육수당 금액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면,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적정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급자) 12개월 미만: 35.86만원 12-24개월 미만: 29.56만원 24-36개월 미만: 28.02만원 (비수급자) 12개월 미만: 34.31만원 12-24개월 미만: 27.63만원 24-36개월 미만: 24.82만원
	- (양육수당 비수급자) 양육수당이 증액된다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시겠습니까? 얼마를 받으면 집에서 키우시겠습니까?	47만원
	- (양육수당 수급 취업모) 양육수당 금액이 현재 수준보다 증액된다면 양육수당을 받고 직장을 그만둘 의향이 있습니까? 월 얼마를 받으면 직장을 그만두시겠습니까?	59만원
	- (보육료 수급 취업모) 보육료 지원 대신 양육수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집에서 직접 돌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73만원
이정원 외 (2012)	- (기관병행 영아양육가구) 추후 양육수당이 지금보다 증액되고 귀댁이 수급 자격이 된다면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만 양육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양육수당이 얼마 정도 된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생각이십니까?	51.3만원
이정원 외 (2014)	(양육수당 수급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양육수당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4.76만원(0세: 41.72만원, 1세: 34.21만원, 2세: 31.06만원, 3세: 27.86만원, 4세: 26.73만원, 5세: 29만원, 6세: 31.50)
	만약에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5-10만원/10-15만원/15-20만원) 만큼 인상한다면 지금 보육관련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추고 가정양육을 더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5-10만원: 36.2%, 10-15만원: 22.7% 15-20만원: 51.9%

(표 1-4-1 계속)

구분	질문	적정금액
고제이 외 (2015)	(양육수당 수급자&비수급,기관이용자) 적정 가정양육수당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0만원 증액: 18.4%, 15만원 증액: 6.0% 20만원 이상 증액: 63.3%
	- (양육수당 수급자&비수급,기관이용자)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만원: 5.9%, 15만원: 3.8%, 20만원 8.6%, 20만원 이상: 33.4%
	- (양육수당 수급자&비수급,기관이용자)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계신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수급자) 10만원: 9.6%, 20만원: 12.6%, 30만원 이상: 30% (비수급, 기관이용자) 10만원: 1%, 20만원: 7.4%, 30만원 이상: 36.8%
양미선·이윤진 외 (2016)	- 가정양육 인상 시 어린이집을 그만둘 의향이 있습니까?	가정양육 의향 비율 11.7% 적정 금액 41.9만원
이정원 외 (2018)	- (양육수당 수급자) 현재 받고 있는 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3.1만원 (0세: 47.8만원, 1세: 45만원, 2세: 37.2만원, 3세: 27.7만원, 4세: 40.8만원, 5세 이상: 35.5만원)
	- (보육/교육기관 이용가구) 만약 정부가 양육수당을 현 지원수준보다 인상한다면,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인상하면 가정에서 양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린이집 이용자) 28만원 (0세: 27.8만원, 1세: 28.5만원, 2세: 30.4만원, 3세: 29.8만원, 4세 22.6만원, 5세: 24.1만원) (유치원 이용자) 24.1만원 (3세: 23.9만원, 4세: 20.7만원, 5세: 26.4만원)
김나영 외 (2019)	- (부모 직접 돌봄가구) 양육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양육수당으로 적절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35만원(만0세: 37.7만원, 만1세: 35.2만원, 만2세: 31만원, 만3세: 29.1만원)
	- (어린이집 이용가구) 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가정 양육수당이 얼마나 상향되면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46.9만원
김미곤 외 (2019)	- (만17세 이하 자녀 부모) 가정 돌봄에 대한 적정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39.6만원

자료: 고제이 외(2015).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나영 외(2019).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미곤 외(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미선·이윤진 외(2016). 2016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외(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외(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Ⅲ) -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최은영 외(2020). 보육료 합리화 및 가정양육지원체계 마련. 충남도청·육아정책연구소. pp.18-20. 재인용.

다. 정책 효과

가정양육수당은 국가별로 도입 배경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타 제도의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목적과 기대효과가 달라진다(송다영·박은정, 2019).

우리나라는 아동발달 증진,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보장,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유해미 등(2011)의 연구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36개월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시기에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아동발달 증진, 부모의 선택권 보장, 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양육수당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아동발달 증진 측면에서 실제 수급자는 아동발달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동시에 현금성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기관 이용을 막아 아동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소득수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 급여수준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혜원(2013)은 여성가족패널 3차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일부 추가출산 의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가구 대상 월 100만원 소득 증가 시 추가 자녀 출산 의향이 약 15%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보육비 지출액 20만원 감소 시 추가 출산의향 3% 증가로 추정하였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을 월 소득 증가로 간주하고 주양육자의 경제활동 감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고 연구자 역시 이러한 정책을 출산율 증가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간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3년 양육수당이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된 후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양육

수당 수급자 및 사용처, 정책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서문희·이혜민, 2013, 홍승아 외, 2013). 우선 서문희와 이혜민(2013)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양육수당이 양육비 부담 완화 등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양육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영아이며,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용처가 교육비의 일부로 사용되고,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수혜비율이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부모의 선택권 보장에 대한 효과는 영아에게서만 유효하고, 유아에게서는 고가의 학원비 지출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홍승아 등(2013) 역시 양육수당 사용자가 취약계층과 학원 이용자로 양극화되며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도 2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하였다.

양미선 등(2014)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인지 여부,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는데 대상자의 95.3%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4점 만점 기준 2.4점에 불과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0~3세 미만은 불만족하는 비율이 50%가 넘고, 4, 5세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제도 도입 초기 새로운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라지고, 실제 지원금액이 양육비용에 못 미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미이용가구 특성 분석을 통해 양육수당 수혜 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양미선 등(양미선·손창균 외, 2016; 44)의 연구에서 0세, 1세, 2세, 3세 이상으로 나누어 관련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였다. 3세 이상 응답자가 소수에 불과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0세 89.4%, 1세 79.2%, 2세 77.4%가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고 보고한 반면 3세 이상에서는 어머니와 기타 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이고 기타기관 응답자가 3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는 기저귀, 분유, 저축 등의 순서로 나타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라. 소결

가정양육수당이 아동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는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영아 자녀에 한정되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이 적고, 보육·교육비 지원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실제 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추가 출산 의향이나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

가정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01 가정양육비용 지원

0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II. 가정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제2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가정양육지원 제도와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각종 현금지원 사업과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등의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가정양육비용 지원

1절은 정부가 그간 추진하여 온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영유아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다.

가. 가정양육수당

1) 개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 서비스 대체 수단으로 지원되는 현금지원제도로 2009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09년부터는 출생아부터 23개월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였고(보건복지부, 2009; 245), 2013년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3b; 301, 보건복지부, 2022b; 381).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에는 월 10만원으로 연령에 따른 지원단가 차등을 두지 않았지만(보건복지부, 2009; 245), 지원대상이 36개월 미만까지로 확대된 2011년에는 월령별로 지원단가를 차등하여 지원하였다. 지원단가가 12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11b; 271).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된 2013년에도 지원단

가가 차등 적용되었고, 36개월 미만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고 36개월 이후는 월 10만원을 지원하였다(보건복지부, 2013b; 301)(표 II-1-1 참조).

〈표 II-1-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별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	2009~2010년	2011~2012년	2013~2020년	2021년
0~11개월	10	20	20	-
12~23개월		15	15	-
24~25개월	-	10	10	10
36~47개월	-	-	10	10
48~59개월	-	-	10	10
60~77개월	-	-	10	1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보육사업안내. p.245.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육사업안내. p.269.

보건복지부(2011b). 2011년 보육사업안내. p.271.

보건복지부(2012b). 2012년 보육사업안내. p.313.

보건복지부(2013b). 2013년 보육사업안내. p.301.

보건복지부(2014b). 2014년 보육사업안내. p.325.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안내. p.284.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보육사업안내. p.300.

보건복지부(2017b). 2017년 보육사업안내. p.327.

보건복지부(2018b). 2018년 보육사업안내. p.344.

보건복지부(2019b). 2019년 보육사업안내. p.353.

보건복지부(2020b). 2020년 보육사업안내. p.367.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보육사업안내. p.375.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보육사업안내. p.381.

〈표 II-1-2〉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단가	지원대상	지원단가	지원대상	지원단가
0~11개월	200천원	0~11개월	200천원	0~35개월	200천원
12~23개월	150천원	12~23개월	177천원		
24~35개월	100천원	24~35개월	156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개월	129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100천원		
	100천원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보육사업안내. p.381.

지원대상별로 보면, 일반 아동은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은 연령 기준이나 지원단가가 일반아

동과 달리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 이상 1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양육수당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0~11개월은 동일하나 12~23개월은 17.7만원,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으로 다소 높고, 48개월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동일하다(보건복지부, 2022b; 381). 2013년 개편된 지원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되었고, 2021년에는 영아수당 도입으로 24개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2) 현황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아동 수는 2021년 말 기준 총 560,768명이다.

〈표 II-1-3〉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구분	단위: 명(%)							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취학전	
2010년	24,447	27,391	-	-	-	-	-	51,838
2011년	36,662	38,408	14,644	-	-	-	-	89,714
2012년	37,727	44,128	18,486	1,178	573	401	180	102,673
2013년	384,042	346,264	144,551	62,887	38,204	40,317	40,844	1,064,522
2014년	383,389	309,908	145,075	60,126	39,152	34,803	39,883	1,012,336
2015년	386,361	310,212	132,195	66,546	40,139	37,894	35,999	1,009,346
2016년	363,178	305,911	117,342	47,840	34,709	30,609	33,602	933,153
2017년	319,122	274,043	106,541	43,217	29,100	32,166	32,101	836,290
2018년	291,106	236,328	88,440	39,719	28,089	28,401	33,594	745,677
2019년	269,362	203,769	66,223	31,442	27,913	29,534	30,207	658,450
2020년	243,132	187,316	64,249	34,313	32,688	37,356	43,041	642,095
2021년	232,863	158,980	53,307	26,399	23,987	30,204	35,028	560,768
영·유아	231,727	157,981	52,666	25,864	23,719	29,990	34,852	556,799
장애아동	5	154	312	375	221	183	166	1,416
농어촌	1,131	845	329	160	47	31	10	2,553
비중	(41.5)	(28.4)	(9.5)	(4.7)	(4.3)	(5.4)	(6.2)	(100.0)

주: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 0~6세 영유아 수*100으로 산출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https://jumin.mois.go.kr> (2022. 4.30. 인출).

보건복지부(2011a). 201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2a). 2011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3a). 2012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4a). 2013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5a). 2014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6a). 2015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7a). 2016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9a). 2018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0a). 201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1a). 2020년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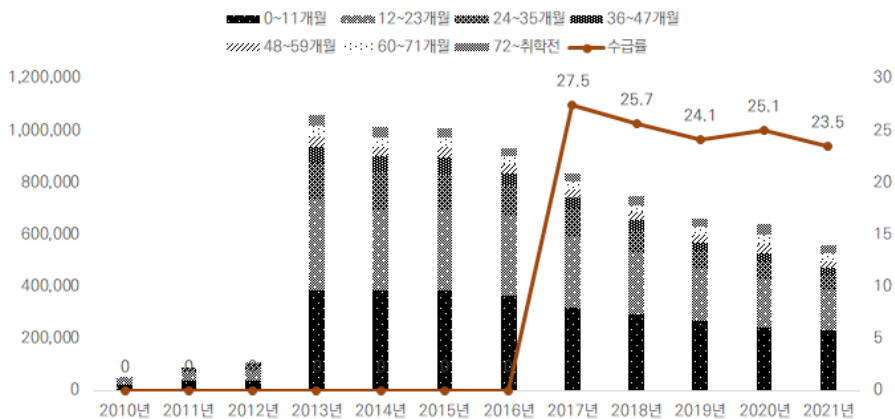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22a). 2021년 보육통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1.do> (2022. 4.22. 인출).

이 중 일반아동 자격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556,799명이고, 장애아동 1,416명과 농어촌 2,553명이 소수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2a). 월령별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0~11개월 아동은 2021년 기준 232,863명이며 전체 지원아동의 41.5%를 차지한다. 12~23개월 아동은 158,980명으로 28.4%, 24~35개월 아동은 53,307명 9.5%, 36개월 이상은 2~3만명 대로 전체 지원 아동의 4~5% 정도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22a).

전체 영유아 중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아동의 비중을 산출하였다. 2021년 기준 23.5%로 지원대상이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된 2013년 32.5%에서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돌봄기관이 긴급 돌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아동 월령별로 보면, 0~11개월은 수급률이 전체 아동 대비 91.7%로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보다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23개월은 이 비율이 57.9%로 떨어지고, 24~35개월로 올라가면 17.4%까지 하락한다. 36개월 이상 구간은 7% 내외로 10%에 못 미친다(표 II-1-3 참조).

[그림 II-1-1]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



자료: 보건복지부(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 2020a, 2021a, 2022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보육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https://jumin.mois.go.kr> (2022.4.30.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1.do> (2022. 4.22. 인출).

지난 10여 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0~11개월은 2013년 91.1%에서 2016년 92.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91%대로 떨어졌고, 12~23개월은 2013년 71.2%에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서 2019년 61.6%까지 떨어졌고, 2021년에는 60% 대가 무너졌다. 24~35개월도 2013년 30.5%로 전체 영유아 중 1/3 정도는 기관 이용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았으나, 이후 매년 하락 추세를 보여서 2019년에는 10% 대까지 떨어졌다. 36~47개월 사이는 2013년 13.3%에서 2017년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후 7~9%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48개월 이상 구간은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된 이후 1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시기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1-4〉 가정양육수당 수급률: 2010~2021년

단위: %

구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취학전	전체
2010년	5.5	6.2	-	-	-	-	-	2.8
2011년	8.1	8.2	3.3	-	-	-	-	2.8
2012년	8.1	9.3	3.9	0.3	0.1	0.1	0.0	3.1
2013년	91.1	71.2	30.5	13.3	8.5	8.6	8.2	32.5
2014년	91.3	70.6	29.7	12.7	8.3	7.8	8.5	31.5
2015년	91.0	70.8	30.0	13.6	8.4	8.0	8.0	31.7
2016년	92.3	69.3	26.7	10.9	7.1	6.4	7.1	29.6
2017년	92.3	66.9	24.1	9.8	6.6	6.6	6.7	27.5
2018년	91.6	65.4	21.5	9.0	6.4	6.4	6.9	25.7
2019년	91.3	61.6	18.2	7.6	6.3	6.7	6.8	24.1
2020년	91.7	61.5	19.4	9.4	7.9	8.4	9.8	25.1
2021년	91.7	57.9	17.4	7.9	6.6	7.3	7.9	23.5

주: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 0~6세 영유아 수*100으로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1a). 201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2a). 2011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3a). 2012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4a). 2013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5a). 2014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6a). 2015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7a). 2016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9a). 2018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0a). 2019년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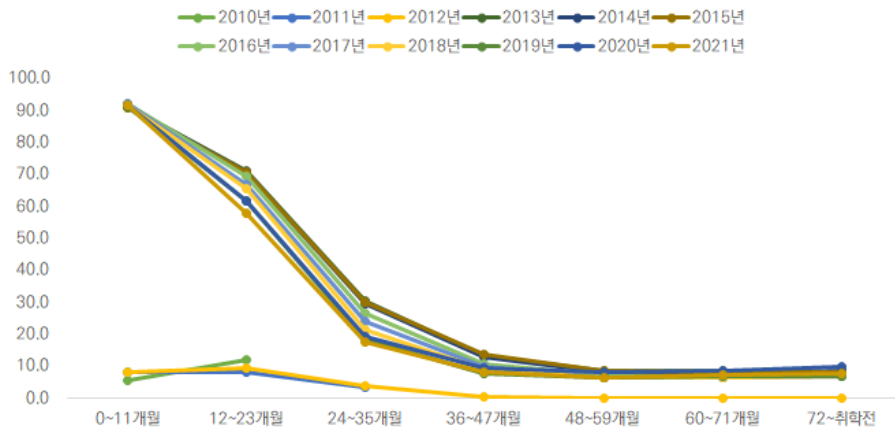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21a). 202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2a). 2021년 보육통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1.do> (2022. 4.22.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https://jumin.mois.go.kr> (2022. 4.30. 인출). 연구자 작성.

[그림 II-1-2] 월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률: 2021년



자료: <표 II-1-4>를 그림으로 구성함.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이용 어린이집의 최초 이용시기가 2012년 28.3개월(서문희 외, 2012)에서 2015년 26.5개월(김은설 외, 2015), 2018년 22.3개월(이정원 외, 2018)로 낮아졌고, 연령별로는 2012년 영아 20.9개월, 유아 36.8개월(서문희 외, 2012)에서 2015년 영아 20.2개월, 유아 34.3개월, 2018년 영아 18.5개월, 유아 27.3개월(이정원 외, 2018)로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영아와 유아 모두 이용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표 II-1-5>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산출하여 기관 미이용 아동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2021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 영유아 중 49.4%,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24.4%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26.2%이다.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된 2010년부터 살펴보면, 기관 미이용 아동은 전체 영유아 중 44.0%에 달하였으나,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그 비율이 36.0%로 떨어졌고, 2017년 이후에는 20%대 후반까지 떨어져서 영유아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관 이용률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1-5, 그림 II-1-2 참조).

〈표 II-1-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 2020년

단위: 명, %

구분	0~6세 영유아수 ¹⁾ (a)	어린이집 ²⁾ (b)	유치원 ²⁾ (c)	계 (b+c)	어린이집 (b/a)	유치원 (c/a)	전체 (b+c/a)	미이용
0세 반 ³⁾	528,579	119,621	-	119,621	22.6	-	22.6	77.4
1세	306,120	252,542	-	252,542	82.5	-	82.5	17.5
2세	332,157	301,914	-	301,914	90.9	-	90.9	9.1
0~2세 소계	1,166,856	674,077	-	674,077	57.8	-	57.8	42.2
3세	363,613	190,393	133,257	323,650	52.4	36.6	89.0	11.0
4세	412,739	161,020	207,528	368,548	39.0	50.3	89.3	10.7
5세	444,555	154,363	241,489	395,852	34.7	54.3	89.0	11.0
3~5세 소계	1,220,907	505,776	582,274	1,088,050	41.4	47.7	89.1	10.9
2021년	2,387,763	1,179,853	582,274	1,762,127	49.4	24.4	73.8	26.2
2020년	2,562,100	1,239,338	612,253	1,851,591	48.4	23.9	72.3	27.7
2019년	2,726,967	1,359,475	633,520	1,992,995	49.9	23.2	73.1	26.9
2018년	2,904,953	1,409,680	675,559	2,085,239	48.5	23.3	71.8	28.2
2017년	3,044,577	1,443,535	693,830	2,137,365	47.4	22.8	70.2	29.8
2016년	3,153,489	1,443,784	703,506	2,147,290	45.8	22.3	68.1	31.9
2015년	3,187,718	1,445,417	681,855	2,127,272	45.3	21.4	66.7	33.3
2014년	3,210,156	1,488,435	651,794	2,140,229	46.4	20.3	66.7	33.3
2013년	3,264,476	1,477,151	654,821	2,131,972	45.2	20.1	65.3	34.7
2012년	3,265,160	1,475,331	612,794	2,088,125	45.2	18.8	64.0	36.0
2011년	3,212,933	1,331,714	564,312	1,896,026	41.4	17.6	59.0	41.0
2010년	3,208,694	1,259,340	537,577	1,796,917	39.2	16.8	56.0	44.0

주: 1) 인구수는 2020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2) 어린이집 자료는 2020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20년 4월 통계로 6세 이상 제외함.

3) 보육 연령 기준으로 0세반은 0,1세가 포함된 수치임. 연령반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4) 6세 이상은 제외하여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2010~2021 각 년도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https://jumin.mois.go.kr> (2022. 4. 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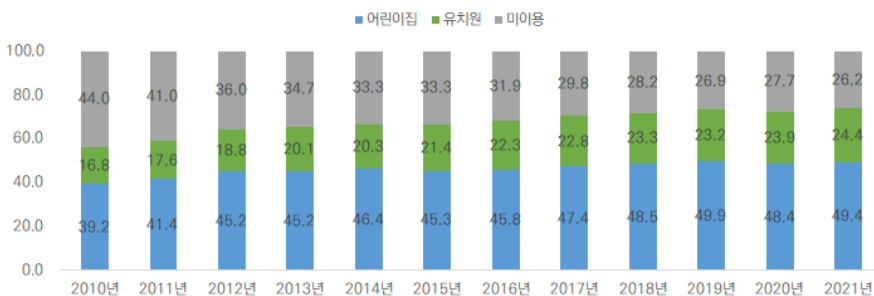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 2020a, 2021a).

2010~2021년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1.do> (2022. 4. 30. 인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0~2021년 교육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2022. 4. 30. 인출).

[그림 II-1-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과 미이용 아동 비율



자료: 〈표 II-1-5〉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3) 예산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2022년 기준 508,163백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22b; 317). 0,1세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2010년에는 65,664백만원 정도이었으나(보건복지부, 2010; 465), 지원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2013년에는 880,950백만원까지 증액되었고(보건복지부, 2013b; 173), 2017년에는 1조가 넘는 1,224,184백만원까지 늘어났다(보건복지부, 2017b; 267). 그러나 초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2019년 1조 이하로 줄었고(보건복지부, 2019b; 295), 영아수당이 도입된 2022년에는 5천 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보건복지부, 2022b; 317)(표 II-1-6 참조).

〈표 II-1-6〉 가정양육수당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65,664	89,794	102,646	880,950	1,215,319	1,101,768	1,219,200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1,224,184	1,089,137	892,330	815,717	760,779	508,163	

주: 당해연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465.
 보건복지부(2011b). 2011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529.
 보건복지부(2012b). 2012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579.
 보건복지부(2013b). 2013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173.
 보건복지부(2014b). 2014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175.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193.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241.
 보건복지부(2017b).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267.
 보건복지부(2018b). 2018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269.
 보건복지부(2019b). 2019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295.
 보건복지부(2020b). 2020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320.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327.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317.

나. 영아수당

1) 개요

영아수당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⁷⁾에 따라 만

7)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01&lsiSeq=237515#> (2022.5.10. 인출).

2세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22d; 4).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0~23개월)이며, 현금(가정양육)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로 지급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d; 4). 2022년에는 아동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보건복지부, 2022d; 4)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된다.⁸⁾

[그림 II-1-4]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단위 : 만원)

2021년					2022년 이후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아동수당		월10			아동수당		월10		
보육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	시설미이용	현금 월30 ⇒ 월50 (‘22년) (‘25년)		
	시설이용	월20	월15	월10		시설이용	영아수당 바우처 (보육료) 월50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10	보육료(바우처)지원 월28 ~ 월36

* '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자료: 보건복지부(2022d).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p.4 재인용.

2022년 출범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모급여로 0~11개월 아동에게 2023년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⁹⁾.

생애 초기 중복지원 문제, 정부의 재정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아동수당, 첫만남이 용권, 영아수당 등의 현금지원 제도들 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예산

영아수당 예산은 2022년 기준 373,132백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22e; 27). 2025년까지 0,1세 아동에게 50만원까지 인상될 계획으로 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3. 31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572> (2022.5.10. 인출).
9)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120대 국정과제 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https://www.opm.go.kr/opm/info/government04.do> (2022.5.10. 인출).

다. 아동수당

1) 개요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2018c; 3).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에 법적근거를 둔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¹⁰⁾.

지원대상은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2018년에는 만0세부터 만6세 미만 아동(0~71개월)이 있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90%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보건복지부, 2018c; 3). 2019년에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만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보건복지부, 2019c; 3), 2020년에는 만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 전체로 확대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20c; 3), 2022년에는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까지로 지원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c; 3). 지원단가는 취학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월10만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2c; 3, 6).

2) 현황

아동수당 지원 아동 수는 2018년 2,380천명(보건복지부, 2018d; 69)에서 지원대상 확대로 2020년 2,635천명까지 증가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20d; 24), 출생아 수 감소로 2021년에는 2,472천명까지 줄었다(보건복지부, 2021c; 20) (표 II-1-7 참조).

〈표 II-1-7〉 아동수당 지원 규모

단위: 천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정치)
지원 아동 수	2,380	2,470	2,635	2,472	2,732

자료: 보건복지부(2018d).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69.
보건복지부(2019d).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22.
보건복지부(2020d).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24.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20.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2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0367#0000> 2022.5.10. 인출).

3) 예산

아동수당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 2,196억원이다(보건복지부, 2022e: 23). 상위 10%에게 지급하지 않던 2018년에는 7,096억원에 그쳤으나(보건복지부, 2018d: 69), 지원대상이 전계층으로 확대된 2019년에는 2조 1,627억원으로 증가하였고(보건복지부, 2019d: 22) 이후 2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II-1-8〉 아동수당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정치)
예산	7,096	21,627	22,834	2,2196	24,039

자료: 보건복지부(2018d).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69.
보건복지부(2019d).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22.
보건복지부(2020d).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24.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20.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23.

라. 지방자치단체 양육비용 지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현금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들 수 있다. 출산지원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출산 가구의 출산 비용 지원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유입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지원금액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으나, 출산지원금을 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면서¹¹⁾ 지원방식을 일시금에서 분할 지급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지원금 제도 추진 목적이 당초 설정한 출산가구의 비용 지원보다는 자녀양육 비용 지원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육비, 다자녀 양육비(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양육비용을 지우며하고 있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

11) 출산장려금 ‘해남의 역설’... 지원금 받고 36%가 5년내 떠나더라(중앙일보 2022.3.15.일자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420> 2022. 7.6. 인출).

1) 출산지원금

가) 현황

(1) 광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2021년 기준 14개 지역으로 전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82.4%에 해당한다(양미선·김혜진, 2021; 87). 2018년 12개(70.6%)에서 2019년 14개(82.4%)로 확대된 이후(양미선 외, 2019; 양미선·이재희 외, 2020)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표 II-1-9 참조). 중앙정부가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담 등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을 축소하거나 사업 자체를 일몰하고 있다¹²⁾.

〈표 II-1-9〉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2018~2021년

단위: 개,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지원규모	12	70.6	14	82.4	14	82.4	14	82.4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8, 2019, 2020,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5.

양미선·이재희 외(2020).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95.

양미선·김혜진(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7.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다가 최근에는 출생순위가 첫째까지로 확대되고 있다(양미선·김혜진, 2021; 87).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6개 지역 정도이었으나(양미선 외, 2019; 76) 2020년(양미선·이재희 외, 2020; 96)과 2021년(양미선·김혜진, 2021; 87)에는 10개 지역으로 늘어났다(표 II-1-10 참조).

12) 대구 둘째셋째 출산장려금 사라졌다(매일신문, 2022. 1. 16일 기사)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11413005433211> 2022. 7. 6. 인출)

〈표 II-1-10〉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8~2021년

단위: 개, %

구분	지자체 수					백분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2021	10	13	14	14	14	58.8	76.5	82.4	82.4	82.4
2020	10	13	14	14	14	58.8	76.5	82.4	82.4	82.4
2019	9	13	14	14	14	52.9	76.5	82.4	82.4	82.4
2018	6	11	12	12	12	35.3	64.7	70.6	70.6	70.6
(전체)	(17)	(17)	(17)	(17)	(17)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8, 2019, 2020,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6.

양미선·이재희 외(2020).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96.

양미선·김혜진(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7.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금액은 2021년 기준 10만원이며, 최대 금액은 1,920만원이다(양미선·김혜진, 2021; 87). 둘째아는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920만원, 셋째아 이상은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920만원까지 지원한다(양미선·김혜진, 2021; 87)(표 II-1-11 참조). 출산지원금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지만 출산지원금을 많이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시금과 분할금을 혼합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 331-322).

〈표 II-1-11〉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추이: 2018~2020년

단위: 만원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21	10	1,920	20	1,920	50	1,920	50	1,920	50	1,920
2020	10	1,440	20	1,440	30	1,440	30	1,440	30	1,440
2019	10	1,440	20	1,440	30	1,440	30	1,440	30	1,440
2018	10	120	20	200	30	360	30	360	30	360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8, 2019, 2020,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양미선·신윤정 외(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6.

양미선·이재희 외(2020).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96.

양미선·김혜진(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7.

(2) 기초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2021년 기준 222곳이다(양미선·김혜진, 2021: 88). 거의 대부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2019년에는 216곳(95.6%)에서 지원하였으나, 2020 219곳(96.9%), 2021년에는 222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표 II-1-12 참조).

〈표 II-1-12〉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2018~2021년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지자체																		
2021	25	16	5	10	5	4	5	-	31	18	11	15	14	22	23	18	-	222
2020	25	16	4	9	5	3	5	-	31	18	11	15	14	22	23	18	-	219
2019	25	16	4	7	5	2	5	-	31	18	11	15	14	22	23	18	-	216
2018	25	16	3	7	5	2	5	-	31	18	11	15	14	22	23	18	-	215
전체	25	16	8	10	5	5	5	-	31	18	11	15	14	22	23	18	-	226
백분율																		
2021	1000	1000	625	1000	10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82
2020	1000	1000	500	900	10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9
2019	1000	1000	500	700	1000	4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56
2018	1000	1000	375	700	1000	4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95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9, 2020,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7.

양미선·이재희 외(2020).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97.

양미선·김혜진(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8.

〈표 II-1-13〉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8~2021년

단위: 개, %

구분	지자체 수					지원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2021	192	210	219	221	221	85.0	92.9	96.9	97.8	97.8
2020	177	204	215	218	218	78.3	90.3	95.1	96.5	96.5
2019	158	196	212	215	215	69.9	86.7	93.8	95.1	95.1
2018	158	196	212	215	215	69.9	86.7	93.8	95.1	95.1
전체	226	226	226	226	226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9, 2020,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7.

양미선·이재희 외(2020).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98.

양미선·김혜진(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9.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2021년 기준

192곳, 둘째아 210곳, 셋째아 219곳, 넷째아 이상 221곳이다(양미선·김혜진, 2021; 89).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158곳(78.3%)(양미선 외, 2019; 79)에서 2020년 177곳(69.9%)(양미선·이재희 외, 2020; 98), 2021년에는 192곳(85.0%)이다(양미선·김혜진, 2021; 89)(표 II-1-13 참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 중 지원금액 최소 금액은 5만원이며,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둘째아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 셋째아 이상은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200만원으로 출생순위가 낮아질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난다(표 II-1-14 참조).

〈표 II-1-14〉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8-2021년

단위: 만원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21	5	720	5	1,400	5	3,200	5	3,200	5	3,200
2020	5	700	5	1,400	10	3,000	10	3,000	10	3,000
2019	5	700	5	1,400	10	2,600	10	3,000	10	3,000
2018	5	700	5	1,400	10	2,600	10	3,000	10	3,000

주: 출산지원금 지원금액은 단위사업에서 아동 1명에게 지원하는 총 지원금액을 의미함.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9, 2020,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1.

양미선·이재희 외(2020).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00.

양미선·김혜진(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91.

나) 예산¹³⁾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원 예산은 2021년 기준 총 215,2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9%가 증가하였다(양미선·김혜진, 2021; 110).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는 2018년 63,518백만원(양미선 외, 2019; 90)에서 2019년 110,946백만원(양미선·이재희 외, 2020; 119), 2020년 142,644백만원(양미선·김혜진, 2021; 110)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기간이 연장 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면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표 II-1-15 참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총 234,690백만원

13) 2018년, 2019년, 2020년은 결산 기준이며, 2021년은 예산 기준임.

으로 전년대비 18.6%가 증가하였다(양미선·김혜진, 2021; 110). 2018년 143,967백만원(양미선 외, 2019; 90)에서 2019년 179,552백만원(양미선·이재희 외, 2020; 119), 2020년 234,690백만원(양미선·김혜진, 2021; 110)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 크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단가 등을 확대하면서 예산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표 II-1-15〉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결산 규모: 2019~2021년

단위: 백만원, %

구분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체	110,946	142,644	215,274	50.9	179,552	197,918	234,690	18.6
특광역시	50,364	44,497	48,895	9.9	31,810	34,804	43,358	24.6
서울	-	-	-	-	12,219	12,896	17,230	33.6
부산	6,500	5,900	4,950	-16.1	2,824	3,168	4,577	44.5
대구	12,669	11,105	10,118	-8.9	2,918	2,825	2,691	-4.8
인천	19,972	17,000	16,400	-3.5	8,084	9,726	11,555	18.8
광주	1,494	1,312	7,000	433.5	351	264	517	96.0
대전	2,975	2,694	3,907	45.0	393	473	555	17.3
울산	2,134	2,330	2,520	8.2	5,021	5,452	6,233	14.3
세종	4,620	4,156	4,000	-3.8	-	-	-	-
시도	60,582	98,147	166,379	69.5	147,743	163,115	191,334	17.3
경기	-	-	-	-	46,045	48,871	56,990	16.6
강원	15,153	42,800	97,620	128.1	6,336	6,830	8,923	30.7
충북	8,334	6,714	7,886	17.5	11,112	10,395	11,404	9.7
충남	20,142	33,649	45,386	34.9	8,650	10,848	12,819	18.2
전북	-	-	-	-	10,754	11,045	12,749	15.4
전남	3,256	2,927	5,000	70.8	24,422	25,799	29,861	15.7
경북	6,304	5,900	5,400	-8.5	23,825	29,710	36,481	22.8
경남	1,450	1,040	1,040	-	16,599	19,617	22,107	12.7
제주	5,943	5,117	4,047	-20.9	-	-	-	-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9, 2020,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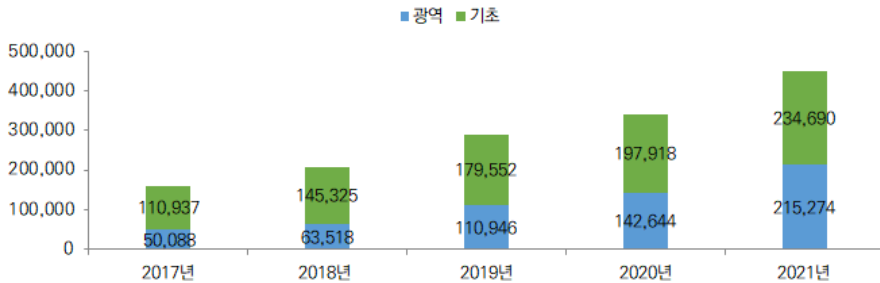
양미선·이재희 외(2020).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19.

양미선·김혜진(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10.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예·결산을 합산한 전체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는 2021년 기준 총 449,96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1%(예산기준)가 증가하였다(양미선·김혜진, 2021; 108). 2018년 226,791백만원(양미

선 외, 2019; 89)에서 2019년 282,654백만원(양미선·이재희 외, 2020; 117), 2020년 340,562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양미선·김혜진, 2021; 108).

[그림 II-1-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예산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9, 2020,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9.

양미선·이재희 외(2020).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17.

양미선·김혜진(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08.

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2절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로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 중심으로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필요에 따라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22b; 307)

정부는 2013년에는 ‘일시보육’이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하반기에는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변경하여 시범사업을 재추진하였다(서문희·양미선, 2014; 5 재인용). 2014년 실시한 시범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정기적 단시간 보육수요까지 목표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맞벌이가족 우대로 차등화 하였다(서문희·양미선, 2014; 5 재인용).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정

책과 맞물려 종일제보육 외에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부모의 보육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시간제보육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가구 자녀는 월 40시간까지 시간당 비용 4,000원 중 2,000원, 취업모, 한부모, 양육부담 가구 등 시간제보육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구 자녀는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3,000원을 지원하였다(표 II-2-1 참조).

〈표 II-2-1〉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변화

단위: 천원

구분	2014~2017년		2018년~2022년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대상	6~36개월 미만 영아		6~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 대상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월 80시간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시간당 1천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4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12.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보육사업안내. p.255.

보건복지부(2016). 2016년 보육사업안내. p.271.

보건복지부(2017). 2017년 보육사업안내. p.277.

보건복지부(2018). 2018년 보육사업안내. p.295.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보육사업안내. p.303.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p.309.

보건복지부(2021). 2021년 보육사업안내. p.316.

보건복지부(2022). 2022년 보육사업안내. p.322.

그러나 2018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제보육 지원기준도 함께 개선이 이루어졌다. 가구특성이나 부모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 아동에게 동일 지원시간(월 80시간)과 지원단가(시간당 3천원) 기준을 적용한다(표 II-2-1 참조).

시간제보육 운영반은 2015년 237개반에서 2017년 438개반, 2021년 863개반까지 확대되었고, 2022년에는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와 영아수당 지원 등에 따른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간제보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접근성,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등 시간제보육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하다.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으로 전환된 2015년 7,297명에서 2019년 20,338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보육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용 아동수가 1만명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2021년에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 II-2-2 참조).

〈표 II-2-2〉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단위: 개소, 개, 명, 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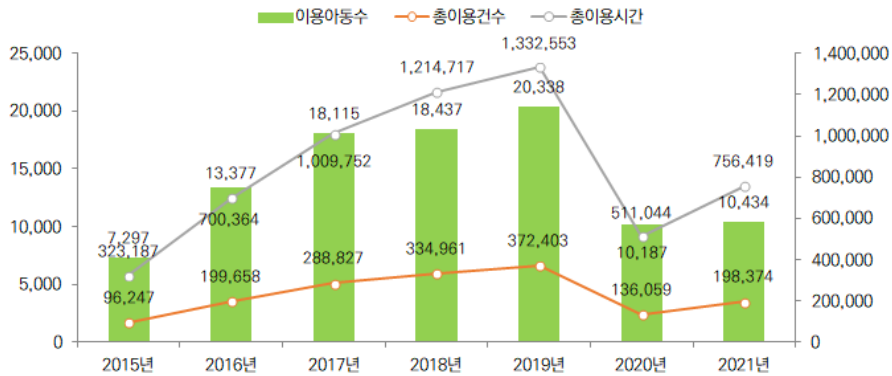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관수	216	347	382	373	402	604	746
제공반수	237	382	437	443	490	710	863
이용아동수	7,297	13,377	18,115	18,437	20,338	10,187	10,434
총이용건수	96,247	199,658	288,827	334,961	372,403	136,059	198,374
총이용시간	323,187	700,364	1,009,752	1,214,717	1,332,553	511,044	756,419
아동1인당 기준							
평균 이용건수	6	6	7	7	7	6	8
평균 이용시간	19	21	23	26	26	25	31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1).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내부자료.

총 이용 건수는 2015년 96,247건으로 아동1인당 평균 6건이다. 2018년 30만 건까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3만 여 건까지 줄었다. 2021년 일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운영을 재개하면서 이용건수가 늘어나 198,374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동 1인당 이용건수는 2018년에 평균 6회이고 2021년에는 8회로 이용건수가 매우 적다(표 II-2-2 참조).

총 이용시간도 2015년 323,187시간에서 2019년 1,332,553시간으로 4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이후 크게 줄었다. 아동 1인당 이용시간을 환산하면 2015년에는 월평균 19시간에서 2019년 26시간까지 늘어났고 2021년에는 31시간으로 더 늘어났다. 그러나 아동 1인에게 지원하는 최대 지원시간(월 80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쳐서 이용이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II-2-2 참조).

[그림 II-2-1]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추이: 2015-2021년



자료: <표 II-2-2>을 그림으로 구성함.

나.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에 법적 근거를 둔다. 이 법에 따르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¹⁴⁾.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 부모에게 가정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¹⁵⁾.

1)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¹⁶⁾.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18023#0000> 2022. 7.6. 인출).

15)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사업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5&L_MENU_CD=020101&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2. 7.6. 인출).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 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에서 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¹⁷⁾.

2) 지원단가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한다. ‘가~다’형은 양육공백¹⁸⁾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라’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가구유형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적용하며,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살펴보면 <표 II-2-3>와 같다. 가형은 정부로부터 2022년 기준 시간당 8,968원, 나형은 시간당 6,330원, 다형은 시간당 1,583원을 지원받는다. 라형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표 II-2-3>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라형	150% 초과	-	10,550원 (100%)

자료: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3호.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 (2022. 7. 6. 인출).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종합형으로 구분된다. AB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16)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CMM/commonGoFront.do> 2022. 7. 6. 인출).

17)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CMM/commonGoFront.do> 2022. 7. 6. 인출).

18)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적용되는데, 기본형 A형의 가형은 2022년 기준 시간당 8,968원, 나형은 6,330원, 다형은 1,583원을 지원하고, B형의 가형은 2022년 기준 시간당 7,913원, 나형은 2,110원, 다형은 1,583원을 지원한다.

〈표 II-2-4〉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550원)				종합형(시간당 13,72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7,913원 (75%)	2,637원 (25%)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2,110원 (20%)	8,440원 (80%)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3,720원	-	13,720원

주: 기본형 A형 2015.1.1. 이후 출생,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종합형 A형 2015.1.1. 이후 출생,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자료: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3호.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 (2022. 7.6. 인출).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기준 277,772백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70,818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10년 간 증가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 예산 규모가 2배 이상 증액되었다.

〈표 II-2-5〉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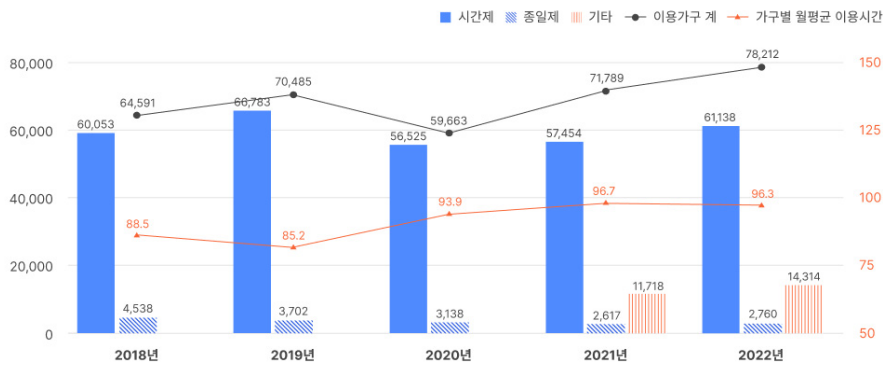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치)
예결산	70,818	79,174	78,716	82,816	87,899	108,377	224,592	248,317	253,149	277,772
증감율	62.9	11.8	-0.6	5.2	6.1	23.3	107.2	10.6	1.9	9.7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6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Ⅲ-1). p.208.
 여성가족부(2017). 2017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Ⅲ-1). p.224.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17.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18.
 여성가족부(2022).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p.6.

3) 이용 현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가구는 2022년 말 기준 78,212가구이다. 2018년 64,591가구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59,663가구로 줄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은 2022년 말 기준 96.3시간이며, 2019년까지 80시간대에서 머무르다가 지원시간 확대로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종일제보다 시간제 이용 가구가 더 많다(그림 II-2-2 참조)

[그림 II-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추이: 2018-2022년



주: 기타: 일시연계,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2&MENU_SITE_ID=FRONT&SEQ=16 (2023. 2.22 인출).

III

해외 사례

01 핀란드

02 프랑스

03 시사점

III. 해외 사례

제3장에서는 핀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도 도입 배경과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1. 핀란드

핀란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사민주의 국가들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일가족 양립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적 돌봄을 강조한다(송다영, 2006; Esping-Andersen, 1999).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핀란드는 다른 사민주의 국가들과 맥을 같이 하지만,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스웨덴, 덴마크와는 다른 경로로 발전되어 왔다.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자유선택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가정양육수당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의 내용과 체계는 상당히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의 제도적 맥락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고, 핀란드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가. 양육수당 도입 배경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부모가 다양한 돌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택이 가능하도록 형평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핀란드는 기관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평성 보장뿐만 아니라 가족의 다양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현대적 가족정책으로 자유선택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eira, 2006; 윤승희, 2015: 6에서 재인용).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이 갖는 실질적인 자유선택의 효과보다는 성별적 효과나 계층적

효과가 부각되면서 상당히 논쟁적인 상태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거나 폐지되었던 국가들(송다영·박은정, 2019)에 비해, 핀란드는 가정양육수당이 우호적으로 도입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1970년대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3년 보육법을 제정하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공적 보육시설 확충은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여 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Repo, 2010; 유해미 외, 2021: 115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 핀란드의 보수당과 중도 우파당은 부모가 기관 보육과 양육수당 중 선택할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하였다. 즉, 도입 당시 부모가 자녀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었으나, 부족한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제도로서의 이점도 작용하였다. 이에 핀란드는 노르딕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양육수당을 도입하게 된다(Hiilamo & Kangas, 2003; 윤승희, 2015: 7에서 재인용).

나. 제도 주요 내용

핀란드의 양육수당은 도입 이후 부모의 다양한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우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이 있으며, 공공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민간양육수당(Private day care allowance)이 있다. 또한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근로를 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탄력양육수당(Flexible care allowance)이 있고, 초등 1, 2학년 자녀를 두고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 부분양육수당(Partial care allowance)을 지급받을 수 있다(유해미 외, 2021: 116-117). 각각 양육수당제도의 지급대상 및 기준, 급여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양육수당

핀란드 가정양육수당은 만 3세 미만 아동을 돌보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중 돌봄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돌볼 경우 지급받는 현금 급여이다.

2022년 9월 4일 이전 출생 자녀의 경우 부모 휴가 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법 개정예 따라 2022년 9월 4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에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양가정의 경우 만3세가 넘어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 휴가 급여의 시작 이후 2년 또는 학교 입학 후 2년까지 지급된다. 2022년 7월 31일부터는 입양 이후 2년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전액 지급되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는 일정 금액 증액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¹⁹⁾.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액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만 3세 미만 자녀 1명에 월 350.27유로가 지급된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증액되는 지급액은 추가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추가 자녀도 만 3세 미만일 경우 각 자녀 당 104.86유로가 증액되며, 만 3세 이상인 취학 전 자녀인 경우는 자녀 당 67.38유로가 지급된다²⁰⁾.

2) 민간양육수당

민간양육수당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 취학 전 자녀를 민간 베이비시터나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볼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2022년 8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이 초기에 종료되었을지라도 생후 9개월이 되는 달 초 이후로 받을 수 있다. 민간양육수당은 핀란드 사회보험청이 민간 돌봄 제공자나 유아교육 제공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²¹⁾.

- 자녀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을 받고 있거나, 서비스 이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는 민간 유아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부모 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일 자녀의 경우(단, 동일 가정 내 다른 자녀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19)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kotihoidontuki#monikkoper-5> (2022. 6. 9. 인출).

20)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kotihoidontuki-maara-ja-maksaminen> (2022. 6. 9. 인출)

21)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yksityisen-hoidon-tuki#yhden-vanhemman-per-6> (2022. 6. 9. 인출)

-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민간양육수당은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다. 핀란드 사회보험청이 민간 양육수당을 매년 검토하고 지원액을 조정하므로 개인이 특별히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가정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민간양육수당은 개별 대상 아동별로 지급된다. 2022년 기준 민간양육수당은 각 아동 당 월 178.32유로이다²²⁾.

3) 탄력양육수당

탄력양육수당은 주당 30시간 이내로 일하거나 풀타임 정규직의 80%보다 적게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만 3세 미만 자녀를 돌볼 경우 지급받는 수당이다. 자영업자 사회보험이나 농민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탄력양육수당은 민간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지자체 공공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탄력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²³⁾.

- 부모 휴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주된 양육자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 가정 내 한 자녀가 부분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 지속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깃(gig) 형태의 개별 근로를 할 경우
- 병가가 4주 이상 지속된 경우(일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 탄력양육수당의 지급 자격 종료)

탄력양육수당도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지급 시에는 한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한 부모의 근무시간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근무 시간이 주당 최대 22.5시간이거나 정규 근무 시간의 60%까지는 월 249.7유로가 지급되며, 월 근로시간이 주당 22.5시간을 초과하고 30시간 이내이거나 정규 근무 시간의 60%를 초과하고 80% 미만인 경우에는 월 166.46유로가 지급된다. 평균 근무 시간 산정은 주마다 변동될 수 있다. 핀란드 사회보험청에서 탄력양육수당을 매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산정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²⁴⁾.

22)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yksityisen-hoidon-tuki-maara-ja-maksaminen> (2022. 6. 9. 인출).

23)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joustava-hoitoraha> (2022. 6. 9. 인출).

24)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joustava-hoitoraha-maara-ja-maksaminen> (2022.

4) 부분양육수당

부분양육수당은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돌봄을 위해 주당 30시간 이하로 근무를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부분양육휴가 제도는 고용주가 허용해야하므로 부분양육휴가 시작 전 최소 2개월 전에 고용주와 합의하여야 한다. 부분양육수당은 두 부모가 다른 시간대에 자녀를 돌본다면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와 동일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돌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도 한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부분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동일 기간에 한 자녀에게는 탄력적인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다른 수당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부모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다른 부모는 일정 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²⁵⁾.

보통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달부터 2학년을 마치는 달까지 부분양육수당이 지급되나, 자녀가 연장 의무교육 대상일 경우에는 유치원(preschool)기간과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분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부분양육수당은 한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한 자녀 당 월 100.30유로가 지급된다²⁶⁾.

2. 프랑스

프랑스는 전통적 가족 이외에도 가족의 개념을 폭넓게 선정하여 경제적 지원과 육아지원을 시행하여 저출산을 극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이다. 프랑스는 합계출산율 1.80명²⁷⁾ (2021), 모성 고용률 73.0% (2019) 등으로 선진국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족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OECD,

6. 10. 인출).

25)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osittainen-hoitoraha#monikkoper-8> (2022. 6. 11. 인출).

26)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osittainen-hoitoraha-maara-ja-maksaminen> (2022. 6. 11. 인출).

27) OECD 합계출산율 평균 수치가 산출된 2020년 자료 기준으로 본다면, 프랑스 1.79명, OECD 평균 1.59명으로 프랑스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음.

2021a). 또한 2017년 현재 프랑스의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유해미 외, 2021: 81, 재인용)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프랑스 양육수당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양육수당인 가족수당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 지원이지만 지원액은 다양한 기준에 준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수평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화하여 수직적인 형평성도 구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유해미 외, 2021: 97). 또한 가족수당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우선에 두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양육수당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가.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수당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수당으로써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수급자격의 여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자산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금고(Caisses' Allocations Familiales, CAF)에서 양육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두 명 이상의 2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원되지만, 지원액은 자녀수, 자녀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가족수당은 둘째 자녀가 태어난 날 다음부터 (혹은 둘째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기 시작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자녀연령 기준으로 보면, 14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증가되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두 자녀 기준으로 월 32.99유로, 65.97유로, 131.95 유로 등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원된다(유해미 외, 2021: 89, 재인용). 또한 가족수당은 가족에 대해 지급되는 다른 모든 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에 해당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이니만큼 가구 상황에 맞게 가족수당을 지원하는데, 별거 혹은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가족수당은 부부 각각에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지속적인 체류를 하고 있다면 국적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윤정 외, 2007: 147).

나. 가족보조금²⁸⁾(Complément Familiale)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수당으로, 소득심사를 통하여 소득수준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정액 추가수당이다. 수당의 목적이 다자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심사를 한다²⁹⁾. 가족보조금 지원에 대한 연간 소득 한도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47,947유로이다.³⁰⁾

〈표 III-2-1〉 가족보조금 지원의 연간 소득 한도

양육 자녀수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한부모
3	39,195 €	47,947 €	47,947 €
4	45,728 €	54,480 €	54,480 €
추가 자녀당	+6,533 €	+6,533 €	+6,533 €

자료: 프랑스 행정부 Service-public.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4> (2022. 6. 10. 인출).

소득에 따라 기본 금액 또는 증액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소득기준은 자녀수 뿐만 아니라 부부 또는 한부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표 III-2-2〉 연간 소득 기준에 따른 가족보조금 지원액 : 부부

양육 자녀수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액
3	19,602 € 이하	23,978 € 이하	262,53 €
	19,602 €~39,195 €	23,978 €~47,947 €	175,00 €
4	22,869 € 이하	27,245 € 이하	262,53 €
	22,869 €~45,728 €	27,245 €~54,480 €	175,00 €

자료: 프랑스 행정부 Service-public.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4> (2022. 6. 10. 인출).

28) 노대명 외(2018). 주요국 사회보장제도10: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7쪽에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함.

29) 수당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은 소득(급여, 토지 및 가구 소득, 농업 이익 등)에서 수수료(위자료, 노인 돌봄 비용 등) 및 세금 수당(65세 이상, 장애인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함.

30)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연간 소득수준이 23,978 유로 이하인 경우 월 262.53유로가 지원되며, 연간 소득수준이 23,978~47,947 유로 구간에 속하면 월 175.00유로가 지원된다. 한부모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³¹⁾.

〈표 III-2-3〉 연간 소득 기준에 따른 가족보조금 지원액 : 한부모

양육 자녀수	소득 기준	지원액
3	23,978 € 이하	262,53 €
	23,978 €~47,947 €	175,00 €
4	27,245 € 이하	262,53 €
	27,245 €~54,480 €	175,00 €

자료: 프랑스 행정부 Service-public.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4> (2022. 6. 10. 인출).

다. 영아양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모든 출생 또는 입양에 대해 파제(La Paje, 영유아 보육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제는 출산·입양 장려금,과 기본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의 네 가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자녀보육 대체보조금과 부모휴직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출산·입양 수당(la prime à la naissance ou la prime à l'adoption)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를 갖게 될 경우 지급되는 일시불 수당이다. 한 자녀를 출산·입양을 할 경우, 2016년 기준, 923.08 유로(한화 121.3만원)가 지급이 되고 쌍생아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는 금액이 두 배로 많은 2,846.16 유로(한화 242.6만원)이 일시불로 부모에게 지원되는데(노대명 외, 2018: 328), 출산의 경우 임신 7개월 동안 1회만 지원되며,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 1인당 1회만 지원된다.

임신 기간 첫 14주 이내에 CAF에 신청하는 경우 매월 2개월부터 3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는 기본수당과 임신 7개월에 지급되는 출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³²⁾.

31)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32)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2) 기초 수당(l'allocation de base)

기초수당은 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거나 20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다. 자녀가 태어난 다음 달 또는 (입양자녀가) 가구에 도착한 달부터 만 3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하며, 특히, 입양의 경우 아동의 20세 생일 한도 내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 지원되는 급여액은 2단계로 구분되는데 구분의 기준은 소득수준, 자녀수, 맞벌이 여부, 한 부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금액은 2단계로 구분 되는데, 2016년 기준, 월 184.62유로(한화 23.8만원)와 92.31 유로(한화 11.9만원)가 지원된다(노대명 외, 2018: 328).

3) 자녀교육 분담 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첫 자녀(출생 또는 입양)부터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자녀에 대해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전문)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자녀 교육 분담에 대한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구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 조건 충족하고, 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20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가구이면서, 부모가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감축한 경우에 지원한다³³⁾.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지원액은 부모의 근무 시간 단축에 따라 다르다. 근로를 중단한 경우 월 €405.97, 50%이하로 중단한 경우 월 €262.45, 50~80%수준으로 중단한 경우 월 €151.39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을 살펴보면, 부부의 경우,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각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생일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한부모의 경우, 근로 활동을 중단한 달부터 자녀의 첫 번째 생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입양가구의 경우, 각 부모는 자녀가 집에 있는 첫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자녀부터는 부부의 경우, 각각 마지막 출생자녀의 3번째 생일까지 최대 24개월³⁴⁾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한부모의 경우, 근로 활동을 중단한 달의 1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3세 생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일부터 다음 달에 갱신된다. 마

33)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34)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산 후 보상되는 출산월수만큼 권리의 존속기간 감축

지막 자녀를 입양한 가구의 경우 각 부모는 자녀가 있는 최대 12개월³⁵⁾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³⁶⁾.

PreParE는 최소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녀가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기관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3세 생일 다음 학년도 시작까지 자원 조건에 따라 지원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III-2-4〉 자녀교육 분담 지원의 연간 소득 한도

양육 자녀수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	32,663 €	41,415 €
3	39,196 €	47,948 €
4	45,729 €	54,481 €
추가 자녀당	+6,533 €	+6,533 €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핀란드, 프랑스의 양육수당 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국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의 양육수당은 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개편해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양육수당제도의 도입 목적이 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나, 실제로 가정 양육을 전제로 하여 현금급여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부모의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비판은 꾸준히 받아왔다. 게다가 여성이 가정에서 돌봄을 하게 만드는 성별화 효과에 대한 비판도 받아왔다(송다영·박은정, 2019). 핀란드는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자녀를 가정에서만 돌보아야 지급하는 방식의 가정양육

35) 2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 휴가로 보상받은 개월 수만큼 권리 기간 감축

36)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수당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양육수당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부모의 선택의 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이점은 최대한 활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핀란드는 양육수당이 일·가정 양립이나 부모가 함께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였다. 핀란드는 양육수당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사민주의에 속한 국가로 부모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본적인 정책 기조로 견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사민주의 가족정책의 성격이 양육수당이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만 머물지 않고 부모가 일과 자녀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발전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핀란드의 양육수당은 단순히 가정양육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부모의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86개월까지 계속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핀란드는 만 3세 미만 시기 이후에는 초등학교 입학 후 2년간 부분양육수당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게 부모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앞선 시기에 저출산 현상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제공하고, 동시에 인구규모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육아정책을 수립하여 가족지원 중심의 육아지원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사회정책을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접근하는 특성이 뚜렷한 국가이며, 따라서 자녀양육에 요구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여 가구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매우 다양한 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프랑스의 가족부문 공공지출은 2017년 기준 GDP의 3.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가족수당 등 현금성 지원이 가족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족수당 등 현금성 지원의 비중이 GDP의 1.42%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OECD, 2021b).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보육형태 및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가정 내 보육, 그리고 공공보육 순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또한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들에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많다.

다섯째, 프랑스는 특히 이용하는 보육방식에 상관없이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각 가족이 양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 외 보육비”를 계산하여 공공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홍승아 외, 2008: 164).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현금성 수당제도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자칫 정책의 인지, 만족, 효율 등을 저해할 수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정책수혜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IV

영유아 현금지원정책 빅데이터 분석

- 01 분석 개요
- 02 소셜 트렌드 분석
- 03 온라인 여론 분석
- 04 현금지원정책별 감성분석
- 05 시사점

IV. 영유아 현금지원정책 빅데이터 분석

제4장에서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의 포털과 국내 100여개 언론사 뉴스 기사에 나타난 중앙정부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1. 분석 개요

가. 데이터 수집

영유아기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지원정책 관련 온라인 관심도와 주요 담론 분석을 통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금지원정책별 사용 형태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다음 카페 등의 포털 사이트와 국내 100여개 언론사의 관련 뉴스 기사이다.

[그림 IV-1-1] 분석 개요

주요 현금지원정책 분석 개요			
분석 목적	- 현금지원정책 관련 온라인 관심도 및 주요 담론 분석 통한 현황 파악 - 현금지원정책별 사용 형태 및 트렌드 분석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방안 마련		
분석 채널	- 포털: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네이버 지식인 - 미디어: 뉴스 기사 (국내 100여개 언론사 포함)		
분석 주제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 아동수당	영아수당 - 영아수당, 부모급여, 부모보험
주제별 분석 기간	2010.01.01 ~ 2022.03.31 (12년 3개월)	2019.01.01 ~ 2022.03.31 (3년 3개월)	2022.01.01 ~ 2022.04.28 (4개월)
주제별 분석 문서 수	154,771건 (622,988건 중 28.1%)	146,413건 (622,988건 중 18.7%)	9,869건 (622,988건 중 0.8%)
육아정책/수당 관련 문서 수	622,988건 (특정 육아수당명 언급이 없는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언급 포함)		

분석 주제는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3가지 정책이며, 분석기간은 주제별로 정책 시행시기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분기 단위로 설정하였다. 단, 2021년 도입된 영아수당은 시행시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셜 트렌드 분석, 온라인 여론 분석, 긍·부정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분석방법은 <표 IV-1-1>에 정리하였다.

<표 IV-1-1> 분석 방법

방법	소셜 트렌드 분석	온라인 여론 분석	긍·부정 요인 분석
세부 내용	- 수당별 온라인 발현량 분석 - 온라인 문서 발생 채널 분석 - 온라인 관심도 변화 추이 파악	- 수당별 담론 특징 분석 - 수당별 인식 실태, 사용처 등 세부 담론 유형별 분석	육아수당에 대한 긍정/부정 요소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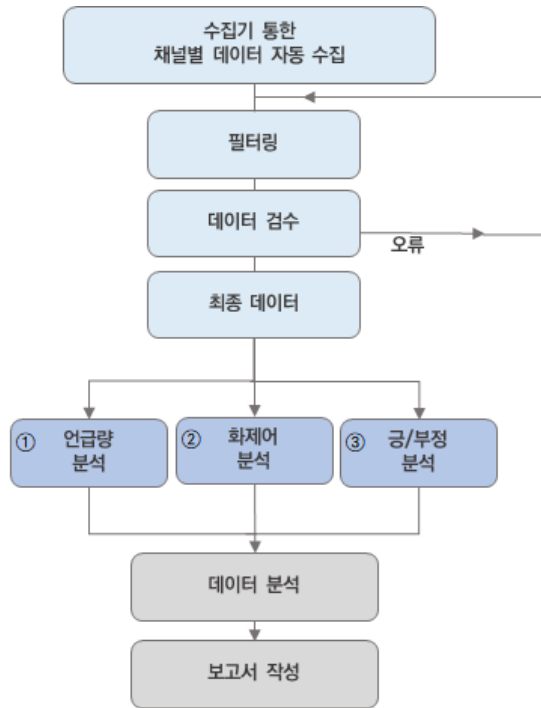
육아정책 전반에 대해 언급된 문서 622,988건 중 주제별 분석에 사용된 문서 수는 가정양육수당 154,771건(24.8%), 아동수당 146,413건(23.5%), 영아수당 9,869건(1.6%) 이었다.

나. 분석 프로세스

데이터 수집은 빅데이터 분석기관의 자체 수집기를 통해 각 채널별로 분석 키워드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수집 데이터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터 키워드를 포함하는 원문을 일괄 삭제하였다. 필터링된 데이터 검수 작업과 재필터링 작업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최종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 데이터는 언급량 분석, 화제어 분석, 긍·부정 분석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문서량을 통해 언급량 추이와 채널 별 버즈 비중을 파악하고, 수집된 문서를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추이 변화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문서 내 긍·부정 표현을 분석하여, 키워드에 대한 대중들의 감성을 파악하였다.

[그림 IV-1-2]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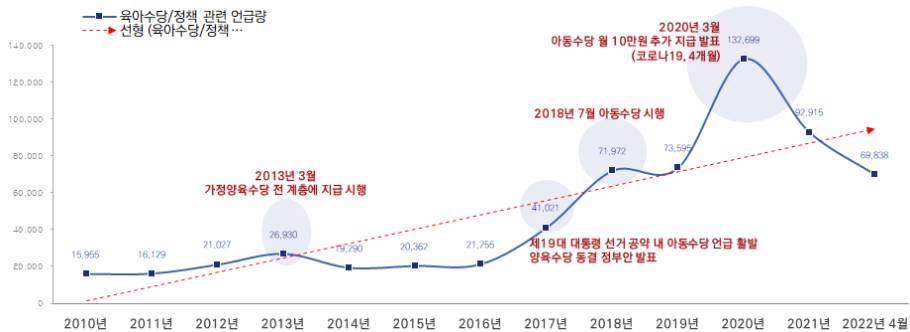
2. 소셜 트렌드 분석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별로 전반적인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약 12년 간 현금지원정책별로 연도별 문서 발생량을 확인하였다. 총 발생 문서량은 622,988건이며, 채널별 문서 발생 비중은 네이버, 다음 포털의 “맘카페”와 복지, 유아교육 관련 정보 교류 카페가 54.7%로 가장 높고, 블로그 31.3%, 뉴스 10.6%, 지식IN 3.3%의 순이었다.

문서 발생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다소 일정하게 나타나다가 2017년 19대 대선과 맞물려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관심도가 급상승하였다.

[그림 IV-2-1] 연도별 문서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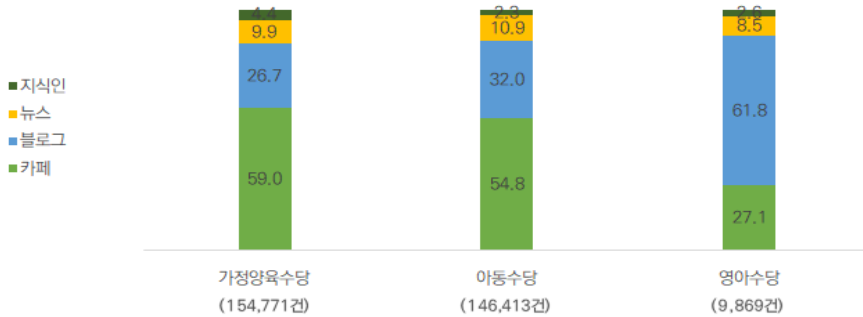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현금지원정책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현금지원정책별 온라인 언급량은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의 순이었다. 온라인 언급량은 ‘가정양육수당’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면 ‘아동수당’이 시행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금액이 그간 동결되었고, 아동수당은 보편 지급 특성과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금지원정책별로 문서 발생 채널 현황을 살펴보면, 카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블로그가 두 번째로 많다. 다만 영아수당의 경우 2022년부터 도입된 최신 시행 정책으로, 단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정보 공유형 게시글이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

각 채널별 정보 특징을 보면, 채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표 IV-2-1 참조). 카페는 회원 중심으로 같은 욕구를 가진 유사 그룹 간에 정보 교류를 하는 형태이며, 블로그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 게시글 형태 혹은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뉴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제공되며, 특정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룬다. 지식인 역시 채널 특성을 반영하여, 각 수요자가 해당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자격 여부와 중복 수령 여부 등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질의 사항을 문의하는 문서가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림 IV-2-2] 주제별 문서 발생 채널 현황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현금지원정책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표 IV-2-1〉 채널별 언급 내용 특징

구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카페	-보육료 전환 및 어린이집 퇴소, 졸업 후 가정양육수당 신청 관련 방법 공유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급 대상 관련 문의 및 -소급 지급에 관한 글 다수	-영아수당 신청 및 수령 일정 관련 정보 문의 및 공유
블로그	-가정양육수당 기준, 신청 및 이용방법 관련 설명 게시글 다수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반적인 육아수당 정보 공유 게시글 다수	-영아수당 관련 정보 공유형 게시글
뉴스	-정부 발표 공약 관련 이슈 -지자체별 가정양육수당 관련 지급 정보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 보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이슈 -제19대 대선 공약 내 아동수당에 관한 보도 다수	-영아수당 시행 이슈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보도 다수
지식인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정책 관련 질문 또는 중복 수령 가능 문의	-아동수당 소급적용 및 확대된 지급대상에 관한 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내 아동수당의 소득 산정 여부 문의	-영아수당의 정의 및 지급 관련 문의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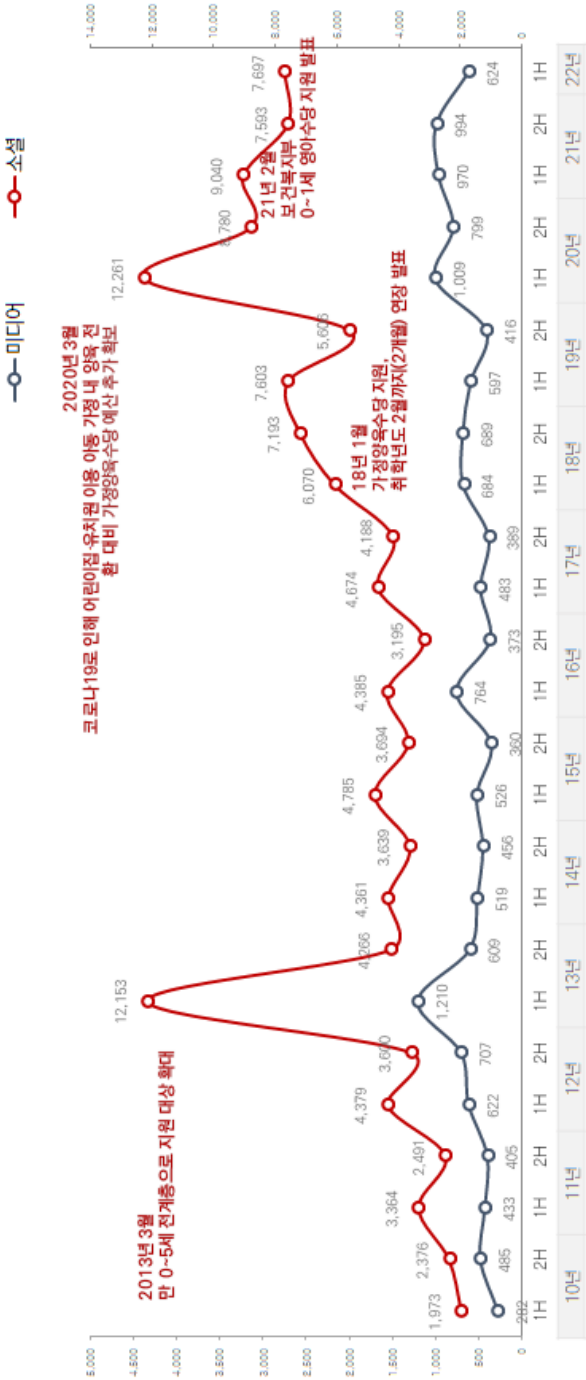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현금지원정책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3. 온라인 여론 분석

가.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관련 전반적인 관심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 기간을 2010.01.01 ~ 2022.03.31로 하여 반기별로 문서 발생량을 살펴보았다(그림 IV-3-1 참조).

[그림 IV-3-1] 가정양육수당 기간별 문서 발생 추이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정부의 현금지원정책 관련 문서 622,988건 중 ‘가정양육수당’ 문서 발생량은 24.8%를 차지하였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온라인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언급량은 2020년, 2021년, 2013년 순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양육 아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 추가 확보 보도 등을 중심으로 문서 발생량이 폭증하였고, 2013년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만0~5세 전계층으로 확대된 데 따른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표 IV-3-1〉은 가정양육수당 관련 화제어를 분석한 것이다.

〈표 IV-3-1〉 가정양육수당 관련 화제어 분석 TOP15

단위: 건

〈2011년〉				〈2013년〉				〈2022년〉			
No.	화제어	언급량	구분	No.	화제어	언급량	구분	No.	화제어	언급량	구분
1	신청	706	신청 방법	1	신청	4,663	신청 방법	1	신청	2,287	신청 방법
2	보육료	681	전환	2	보육료	3,136	전환	2	지급	1,946	수령 금액
3	지원	598	신청 방법	3	어린이집	2,468	전환	3	아동수당	1,876	양육 정책
4	보육시설	590	전환	4	무상보육	956	양육 정책	4	어린이집	1,613	전환
5	보험	581	수령 대상	5	카드	948	수령 방법	5	영아수당	1,212	양육 정책
6	보건복지부	493	-	6	아이사랑카드	827	양육 정책	6	보육료	727	전환
7	어린이집	406	전환	7	동사무소	826	신청 방법	7	확대	691	수령 대상
8	확대	367	수령 대상	8	출생신고	807	신청 방법	8	바우처	483	수령 형태
9	동사무소	243	신청 방법	9	보건복지부	793	-	9	출산	456	소급 지원
10	장애인	237	수령 대상	10	지급	706	수령 금액	10	육아휴직	400	출산 정책
11	카드	228	수령 형태	11	지원	634	수령 금액	11	유치원	390	전환
12	시험	216	-	12	유치원	619	전환	12	맞춤형급여안내	371	양육 정책
13	소득인정액	214	수령 대상	13	주민센터	612	신청 방법	13	국민행복카드	362	출산 정책
14	가구	214	수령 대상	14	입금	469	수령 형태	14	출생신고	323	소급 지원
15	지급	205	수령 금액	15	통장	424	수령 형태	15	사전신청	308	소급 지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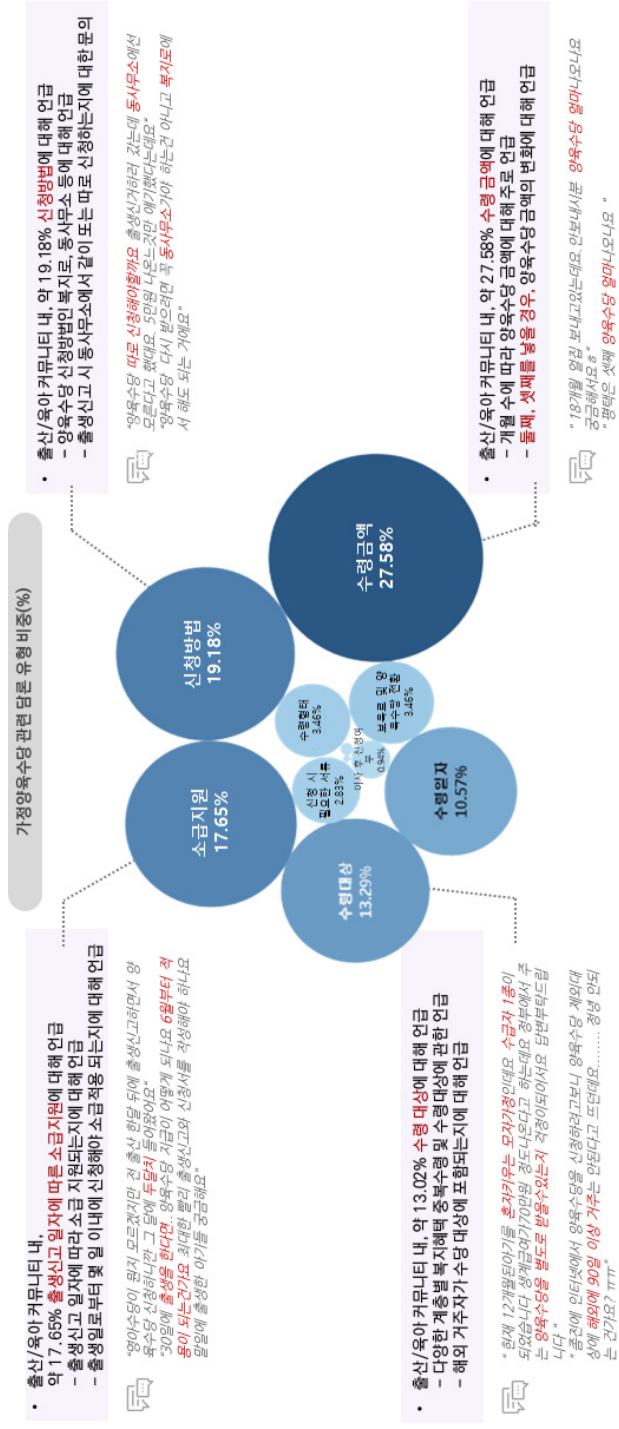
가정양육수당은 시행 초기 선별적 복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2013년 만 0~5세 전 계층, 즉 보편적 복지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 시점에 맞춰 시기별 화제어를 분석한 결과, 주요 키워드의 발현량과 순위 변동이 일부 나타났다. 2011년에는 지원대상이 0~1세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는데, 관련 키워드 중 확대, 소득인정액이 다른 시기에 비해 특징적이다. 2013년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된 시기로 전년 대비 양육수당 관련 키워드 언급량이 급증하였고, 신청방법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 나타났다. 또한 지원 대상 확대로 유치원 이용 가능한 연령이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키워드도 함께 등장하였다. 2022년에는 양육수당 외에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발생하였다(표 IV-3-1 참조).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관련 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수령금액, 신청방법, 출생신고 일자에 따른 소급지원 등의 언급이 발생하고 있었다. 가정양육수당은 다른 정책에 비해 시행 시기가 길어 인식 정도가 높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혜택과의 중복 수령 및 수령 대상 여부, 해외 거주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그림 IV-3-2 참조).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 관련 온라인 담론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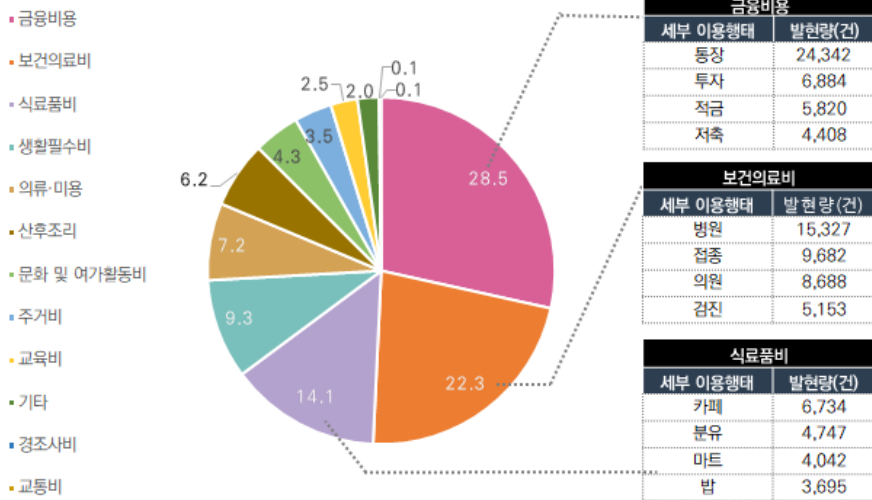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수당, 보육료, 신청 등의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보육료와 관련이 있었다(그림 IV-3-3 참조). 네트워크 분석 결과도 보육료, 확대, 신청과 같은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그림 IV-3-4 참조).

[그림 IV-3-2] 가정양육수당 관련 담론 유형 비중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그림 IV-3-6] 가정양육수당 주요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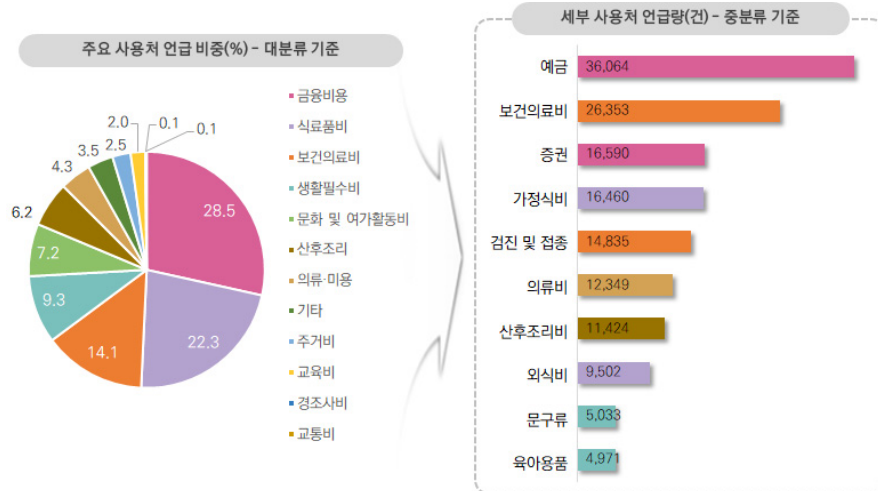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가정양육수당 세부 이용 행태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금, 보건의료비, 증권, 가정 식비 순으로 언급량이 많았다. 사용처 관련 세부 담론 분석 결과, 통장과 병원의 경우 사용처로만 언급된 것이 아닌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한 지참물이나 출생 증명서 발급 장소로도 파생 언급이 발생하였다. 사용처로 가장 많이 언급된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예/적금 위주의 언급이 다수 발생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한 사본, 입금 경로로 통장이 언급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가정양육수당으로 예/적금통장 만드는 내용의 언급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안갈 때 나오던 양육수당 20만원 매달 적금 넣어 만기돼서 예금으로 돌렸고요. 지금은 아동수당 1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청약, 보장성 적금 들었어요. 일반 예금통장도 만들어서 양육수당 들어오는 거 그대로 저금하구요.”

[그림 IV-3-7] 가정양육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세부 현황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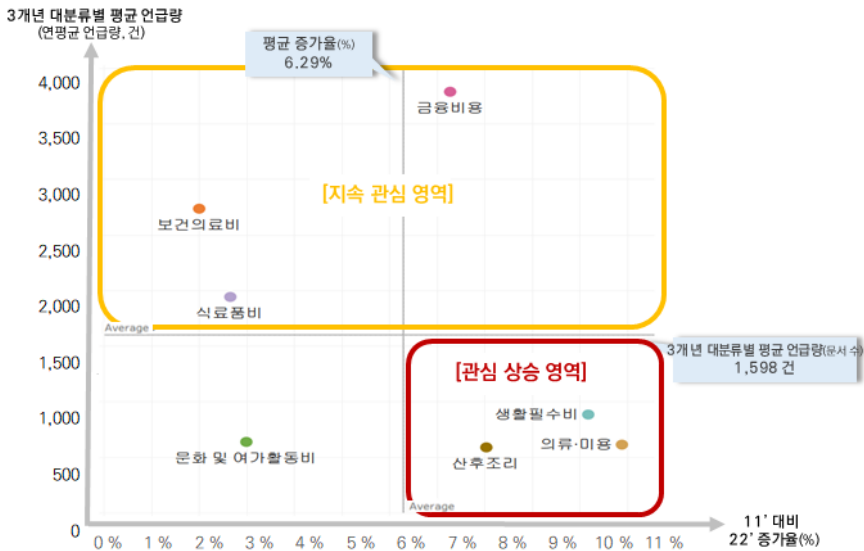
두 번째로 언급이 많이 된 보건의료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한 출생증명서 발급 장소로 언급되고 실손의료비, 선택접종, 병원비 등 가정양육수당 사용처로 언급되었다. 구체적인 언급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저 2주 전에 출생신고 하고 양육수당 신청했는데 제 통장으로 신청했구요. 양육수당은 통장과 신분증 있으면 되고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준 출생증명서 갖고 가면 돼요!”

“개인병원은 만원, 3차는 만 오천원 공제이고 재활 하루에 23개씩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양육수당, 아동수당받고 실비 청구하면 주4회 기준으로 전 딱 맞아요.”

가정양육수당 관련 전체 채널 사용처 언급 비중 변화를 비교한 결과, 보건의료비, 금융비용,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언급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부록 그림 IV-3-1 참조). 주요 사용처 언급 비중이 5% 이상인 대분류를 포지셔닝 맵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 관심 영역]에 속한 금융비용, 보건의료비, 식료품비는 온라인 상 꾸준하게 언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심 상승 영역]에 속한 생활필수비, 산후조리비, 의류·미용비의 경우 온라인 상 언급량은 다소 적은 편이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IV-3-8] 3개년 사용처 대분류별 평균 언급량에 따른 언급량 증감을 분포 비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2011년과 2022년 변화폭이 큰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순서는 금융비용(13.7%), 보건의료비(-12%), 생활필수비(5.7%) 순이며, 2011년과 2022년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변화를 통해 예/적금 중심의 저축에서 주식, 배당과 같은 재테크로 가정양육수당 사용처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간별 사용처 변화를 비교한 그림은 [부록 그림 IV-3-2]에 수록하였다.

[표 IV-3-2] 기간별 사용처 변화 비교

2011년(8,547건)		⇒	2013년(18,318건)		⇒	2022년(11,133건)	
사용처	단위: %		사용처	단위: %		사용처	단위: %
보건의료비	28.4	⇒	금융비용	28.7	⇒	금융비용	37.0
금융비용	23.3		보건의료비	21.5		보건의료비	16.4
식료품비	15.4		식료품비	18.0		식료품비	10.8
주거비	8.6		교육비	6.8		생활필수비	10.6
문화 및 여가활동비	6.2		생활필수비	5.7		산후조리	6.8
생활필수비	4.9		문화 및 여가활동비	4.6		의류·미용	6.8
산후조리	3.9		의류·미용	4.5		문화 및 여가활동비	4.7
의류·미용	3.0		주거비	3.7		주거비	3.1
교육비	2.4		산후조리	3.7		교육비	2.0
기타	3.8		기타	2.6		기타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나. 아동수당

아동수당 관련 전반적인 관심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여 분기별 문서 발생량을 분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지원정책 관련 문서는 약 369,047건이고, 이 중 ‘아동수당’ 문서 발생량은 39.7%를 차지하였다. 아동수당 언급량은 2020년 1분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20년 2분기, 2019년 1분기 순이었다.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에 대한 언급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개월간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동수당’ 관련 관심이 폭증하였다. 2021년 1분기에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를 내 놓으면서 언급량이 다시 증가하였다.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급 대상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되면서 증가하였다.

2020년 3월
4개월간 아동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발표 (중략)

2019년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인한 지급 연월 확대 발표

2021년 2월
신(新) 복지제도로 아동수당 연월 확대 제안

2022년 1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 만 8세 확대

2022년 1월
[속보] 이낙연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해야"

Legend:
—○— 소액 (Child Support)
—○— 커페+블로그+자식인 (Child Care Allowance)

Year	Quarter	Child Support (소액)	Child Care Allowance (커페+블로그+자식인)
2019년	1Q	12,321	1,399
	2Q	6,661	1,133
	3Q	6,862	965
	4Q	5,871	981
2020년	1Q	16,525	1,525
	2Q	19,406	1,329
	3Q	10,575	1,133
	4Q	8,296	797
2021년	1Q	10,658	1,518
	2Q	5,968	746
	3Q	7,317	1,209
	4Q	8,464	1,288
2022년	1Q	12,118	1,348
	2Q	-	-

87

아동수당 시행 일시 및 활성화 시점을 고려해 2019년과 2022년 2개 년도의 화제어를 분석하였다. 주요 키워드의 발현량과 순위 변동이 일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된 시점인 2019년에는 아동수당 관련 화제어 중 가정양육수당 키워드가 다수 출현하였고,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급 관련 다양한 수령 형태의 지원금 언급이 발생하였다.

〈표 IV-3-3〉 아동수당 관련 화제어 분석

단위: 건

2019년 화제어 분석 TOP15				2022년 화제어 분석 TOP15			
No.	화제어	언급량	구분	No.	화제어	언급량	구분
1	양육수당	6,624	양육정책	1	지급	6,265	수령금액
2	신청	1,898	신청방법	2	코로나	6,251	-
3	지급	2,430	수령금액	3	양육수당	4,927	양육정책
4	수당	1,834	수령금액	4	신청	4,702	신청방법
5	어린이집	1,631	수령대상	5	어린이집	2,390	수령대상
6	출생신고	1,426	소급지원	6	수당	2,354	수령금액
7	적금	1,127	-	7	지원금	1,726	수령금액
8	확대	1,036	소급지원	8	사용	1,531	-
9	소득	834	수령대상	9	출생신고	1,522	소급지원
10	주민센터	777	신청방법	10	재난지원금	1,420	-
11	출산	725	소급지원	11	가구	1,305	수령대상
12	급여	653	수령대상	12	카드	1,204	수령형태
13	출산장려금	641	출산정책	13	상품권	1,030	수령형태
14	통장	630	수령형태	14	주민센터	1,018	신청방법
15	보건복지부	627	-	15	대상자	969	수령대상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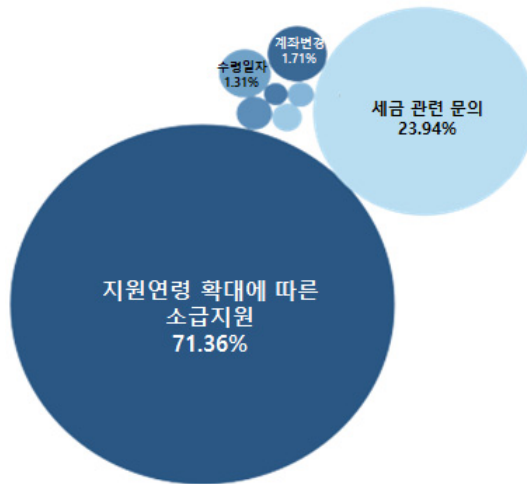
아동수당 관련 담론 분석 결과, 지원 연령 확대에 따른 소급 지원, 세금 관련 문의, 통장 변경 등의 언급이 발생하다가 이후에는 연령 확대에 따른 소급지원 관련 언급이 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연령 확대에 따른 소급 지원 관련 언급이 다수 발생하였다.

우선, 연령 확대에 따른 소급 지원과 관련된 비중은 출산/육아 커뮤니티 내 약 71.36%를 차지하였다. 2014년 2월생에게서 1월분 10만원, 3월생은 1~2월분 20만원 등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다수 차지하였다.

“만5세까지 아동수당 받는 거였는데 이번에 만7세까지 확대되면서 못받은 1월-4월까지 4개월분 준다고 했었거든요.”

“14년 2월부터 15년 3월생까지 확대돼서 4월부터 지급한다는 아동수당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막내는 들어왔고요.”

[그림 IV-3-10] 아동수당 관련 담론 유형 비중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세금 관련 문의 언급은 출산/육아 커뮤니티 내 약 23.94%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를 만 7세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받으면 세액공제 못 받는 거로 알아요.”

“인적공제랑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거예요. 인적공제는 받는 게 맞고요.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받으시면 안 되는게 맞고요.”

이 외에 계좌(통장) 변경에 대해 언급한 비중은 약 1.71%, 지역별 아동수당 수령 일자에 대한 문의는 1.31% 정도를 차지하였다.

“출금은 자유로우나 지킴이 계좌로 입금은 불가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 생계급여, 한부모수당, 아동수당 같은... 통장 개설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가서서 계좌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지킴이 통장 안에 있는 잔고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해요”

“신생아는 아니지만^^; 전 아이통장 실험 어부바 적금 해줬어요. 공과금까지 다 자동이체 걸면 5.7 이자지만 전, 귀찮아서 그건 뺐구요. 아동수당 계좌 변경하고 5.2로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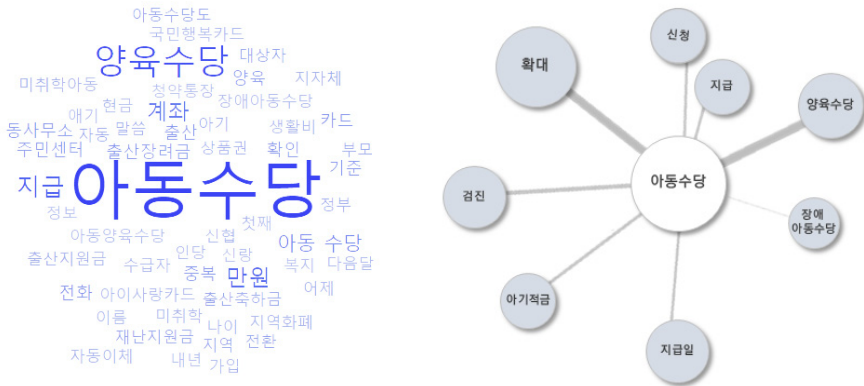
“아동수당 10만원 들어왔나요. 2월생인데 한번도 받아본 적 없어서요. 어디선가 4월부터 준다고 봐서 그냥 기다렸는데 전화문의 해봐야 할까요?”

“지역이 어디세요? 혹시 오늘 아동수당 들어왔나요?”

주요 화제어를 워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석으로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그림 IV-3-11, 그림 IV-3-12 참조).

먼저,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양육수당, 지급, 계좌, 만원 등의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발생하였다. 보편 복지제도인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가정양육수당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요 화제어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대, 양육수당, 지급일, 아기 적금과 같은 키워드가 출현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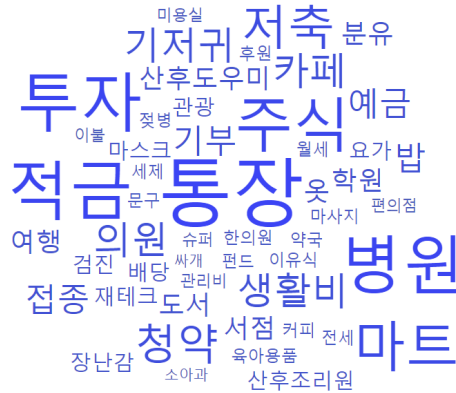
[그림 IV-3-11] 아동수당 주요 화제어 워드클라우드 [그림 IV-3-12] 아동수당 관련 네트워크 분석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아동수당 주요 사용처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IV-3-13]과 같이, 금융 비용(28.5%), 보건의료비(22.3%), 식료품비(14.1%) 순으로 주요 사용처 언급량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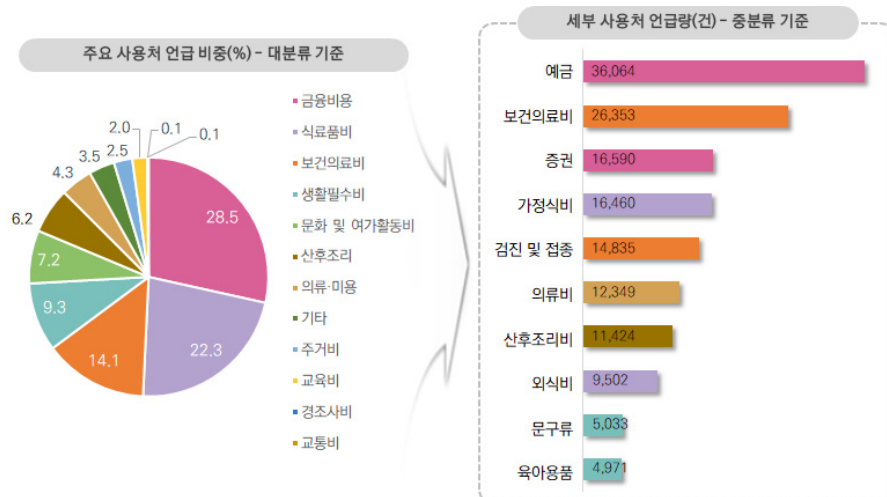
[그림 IV-3-13] 아동수당 사용처 관련 Word Cloud (Top50 키워드)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이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³⁷⁾ 소비 지출 항목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금융 비용(통장, 투자, 적금, 저축 등), 보건의료비(병원, 접종, 의원, 검진 등), 식료품비(카페, 분유, 마트, 밥 등) 순으로 언급량이 많고, 아동수당 세부 지출 행태를 중분류 기준으로 분석하면, 예금, 증권, 가정식비, 보건의료비 순이었다.

[그림 IV-3-14] 아동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세부 현황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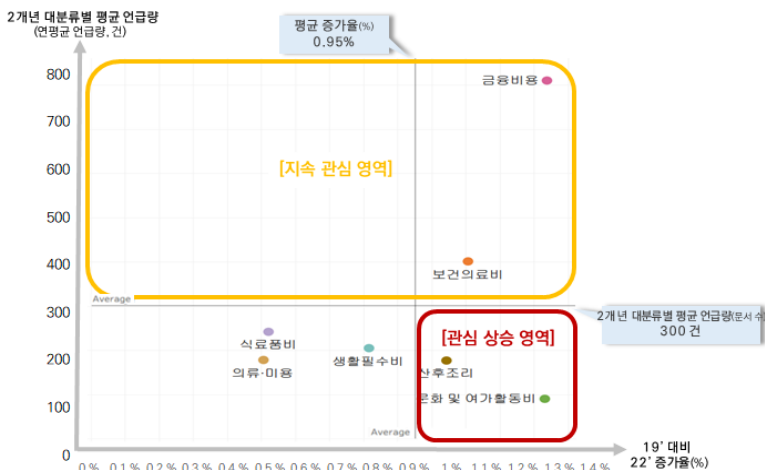
37)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 (2022. 5. 30 인출).

한편, 담론 분석 결과 사용처로만 언급된 것이 아닌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전용통장), 계좌변경 또는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곳에서 아동수당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파생 언급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언급된 금융비용의 경우, 통장, 적금 관련 언급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생활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적금, 투자, 주식 등 금융비용 언급이 증가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하는 만큼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두번째로 많이 언급된 식료품비의 경우, 마트, 카페, 밥 등의 언급이 많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함에 따라 사용처에 관련한 언급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동과 관련이 있는 식비 품목으로 분유, 이유식, 유기농 등의 언급이 확인되었다.

아동수당 관련 전체 채널 사용처 언급 비중 변화를 비교한 결과, 보건의료비가 가장 많고, 금융비용, 식료품비의 순이며, 이들 세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부록 그림 IV-3-3 참조). 주요 사용처 언급 비중이 5% 이상인 대분류 포지셔닝 맵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 관심 영역]에 속한 금융비용, 보건의료비는 온라인 상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경향을 보였고, [관심 상승 영역]에 속한 산후조리비, 문화 및 여가활동비는 온라인 상 언급량은 다소 적은 편이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IV-3-15] 2개년 사용처 대분류별 평균 언급량에 따른 언급량 증감을 분포 비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그동안 아동수당 들어오는 거 흐지부지 생활비로 쓰다가, 이렇겐 안 되겠다 싶어서 매월 배당주를 사주기로 마음먹고 정하 같은 생각으로 미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 검색하다가 올라올라님 블로그까지 왔네요!”

“투자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은 주식 많이 하시더라구요. 영아, 아동 수당 전부 다 투자하시나요.”

“공부하심이 우선 저는 딸들 아동수당 soxi만 매수합니다. 저는 매달 적금 tqqq만 매수합니다. 무지성 매수가 아닌 현금 모이면 하락 폭 클 때 모아갑니다 딸들까는 10-20년 봅니다 대학갈 때까지 단.. 어중간한 하락에는 절대 안팔고 미국이 금융 온다는 시그널 뉴스 뜨면 팔려고요. 위기는 한방에 안와요. 몇달 거치면서 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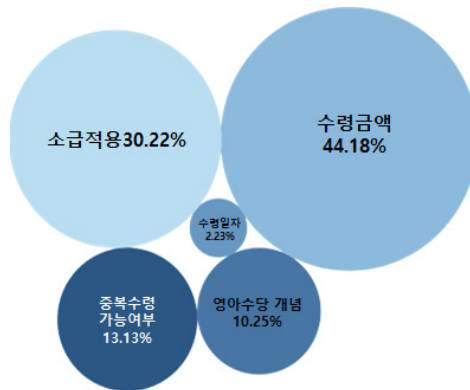
다. 영아수당

‘영아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문서 발생량을 분석하였다. 해당기간 내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문서는 총 69,559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영아수당’ 문서 발생량은 9,869건으로 14.2%를 차지하였다. 채널별로는 블로그가 6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카페 27.1%, 뉴스 8.5%, 지식인 2.6%의 순이었다. 앞서 살펴 본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비교하여 블로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영아수당’ 제도 도입 초기 정보 제공에 대한 게시글이 많은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수당’에 대한 관심도는 영아수당이 시행된 시점인 2022년 1월 초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영아수당 사전신청 기간동안 언급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V-3-16 참조).

영아수당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수령금액, 소급 적용,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등의 언급이 발생하고 있었다. 영아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해당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수령금액 관련 언급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 출산/육아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IV-3-18] 영아수당 관련 담론 유형 비중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령금액(44.18%)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수당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령금액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영아수당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맘님들 전라북도 전주 영아수당 아동수당 얼마씩 입금되나요.”

다음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언급이 30.22%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 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22d; 27) 이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매월 25일 지급된다는데 이달 30일 출산이라 고치면 담달에 소급 적용해서 같이 받는 건가요?”

“저도 유성구인데 새벽 1시쯤 영아수당만 들어왔어요! 3월 생인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된 건지?”

영아수당과 타 육아수당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이 13.13%를 차지하였다. 이 역시 제도 도입 초기 특징으로 변경 내용, 지급대상 등에 관한 문의가 대부분이며, 특히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이 되나 봐요.”

“양육수당이란 영아수당은 중복 지급이 안돼서 영아30 아동10 해서 40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급량 중 10.25%는 영아수당 개념에 대한 것이었다. 영아수당 제도 도입 목적³⁸⁾이 가정양육수당과 상이함에 따라 기존 가정양육수당과 혼동하거나 영아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개념부터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이루었다.

“출생신고하고 수당 신청할 때 한 번에 신청가능해요! 행복키움수당, 영아수당 다르고 이전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22년도부터 변경된 거니 참고하세요!”

“영아수당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22년 출생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육아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뀐 거예요.”

영아수당 사용처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병원, 투자, 통장, 산후도우미, 산후조리원, 기저귀 등이 주요 사용처로 추출된다.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됨에 따라 출산 이후 주요 소비지출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가정양육수당과 동일하게 출생 이후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영아수당은 “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에 목적을 둔다.”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보건복지부, 2022d; 3).

영아수당 세부 이용 행태를 중분류 기준으로 분석하면, 보건의료비, 산후조리비, 증권, 가정식비 순으로 언급량이 많았다. 영아수당과 함께 2022년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등의 정보 글이 많아 사용처 관련 파생 언급이 발생하였다. 언급량이 가장 많은 보건의료비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와 영아수당이 함께 언급되면서 바우처 사용 관련 파생 언급이 발생하였다. 2022년 출산혜택과 영아수당이 함께 언급되는 정보 글도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코로나 19 확산으로 검사 후 병원 입원에 관한 언급이 일부 발생하였다.

“#출산후혜택 #2022년출산혜택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혜택... 신생아 난청검사, 신청성대사이상검사 무료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분만 후, 퇴원 전, 고로 병원 입원기간동안 선별검사 시행 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0일 출산해서 서러운 엄마 입니다.. 응급으로 들어오느라 코로나 검사도 사비로 더 내고 병원 들어왔어요.”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산후조리의 경우, 영아수당과 함께 올해부터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관련한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결제에 따른 내용이 많았다.

“조리원에서 개별적으로 쓴 마사지 비용만 제가 냈어요. 근데 정부에서 출산지원금 영아수당등 주는 게 많아서 본전 같은데요.”

“22년 출산예정 맘입니다 참고로 전남맘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영아수당 산후조리서비스지원이량은 별개인가요.”

“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사용 중-출산후 2.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3. 출생축하비용 마포구 10만원 첫째기준 4. 산후도우미 지원 약 50-60만원이상 5. 영아수당지원 월마다 지급 30만원 이외에 정부에서 더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을까요?”

4. 현금지원정책별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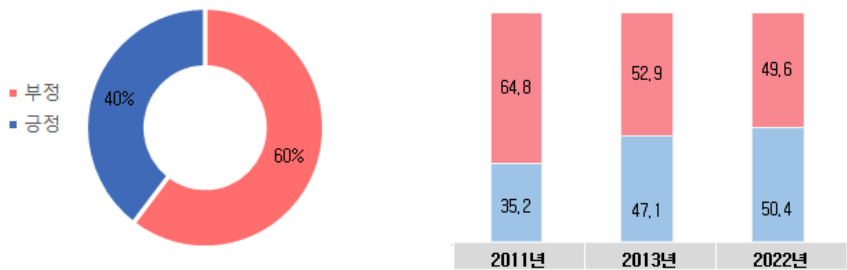
가.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만족도에 대한 긍·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 40%, 부정 60%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

로는 긍정 비율이 2011년 35.2%에서 2013년 47.1%, 2022년 50.4%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한 것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4-1] 가정양육수당 관련 긍·부정 분석

단위: %



[가정양육수당 긍부정 비율]

[가정양육수당 연도별 만족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표 IV-4-1] 가정양육수당 3개년 긍·부정 단어 변화 (TO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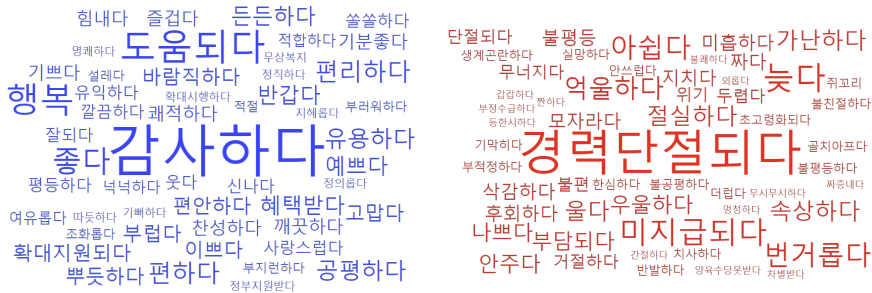
단위: 건

2011년 긍·부정 단어				2013년 긍·부정 단어				2022년 긍·부정 단어			
순번	화제어	빈도	구분	순번	화제어	빈도	구분	순번	화제어	빈도	구분
1	안되다	209	부정	1	좋다	646	긍정	1	좋다	417	긍정
2	좋다	151	긍정	2	힘들다	208	부정	2	안되다	172	부정
3	힘들다	76	부정	3	못받다	204	부정	3	(저출산)해결하다	115	긍정
4	못받다	68	부정	4	늦다	129	부정	4	못받다	94	부정
5	까다롭다	38	부정	5	불합리하다	57	부정	5	힘들다	81	부정
6	미흡하다	24	부정	6	걱정	55	부정	6	유용하다	61	긍정
7	늦다	23	부정	7	아쉽다	48	부정	7	축하하다	42	긍정
8	부적절하다	18	부정	8	적정하다	45	긍정	8	늦다	35	부정
9	스트레스	16	부정	9	편리하다	45	긍정	9	편리하다	28	긍정
10	절실하다	13	부정	10	기분 좋다	42	긍정	10	행복	27	긍정
11	유용하다	12	긍정	11	안주다	37	부정	11	아깝다	26	부정
12	바람직하다	11	긍정	12	예산 부족하다	36	부정	12	불필요하다	25	부정
13	든든하다	10	긍정	13	즐겁다	35	긍정	13	든든하다	17	긍정
14	번거롭다	10	부정	14	유용하다	34	긍정	14	위기	16	부정
15	아쉽다	10	부정	15	적합하다	32	긍정	15	바람직하다	13	긍정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언급되는 주요 내용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단가’ 중심의 언급이 주로 나타나며 기본적인 수급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내용으로는 보육료에 비해 지원 단가가 적음에 대한 불만 표출 관련 부정 인식이 존재하며 출산 후 경력단절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타났다.

[그림 IV-4-2] 가정양육수당 관련 긍·부정 Word Cloud (Top50)



[긍정 Word Cloud]

[부정 Word Cloud]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긍정 반응으로는 ‘만족’, ‘쏘쏙’, ‘충분’, ‘도움’ 등이 언급되고 있었다.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돼요. 나라에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다 나오잖아요.”

“있는 집은 큰 문제 안되겠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되는 정책이네요. 가정양육수당 정책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는 유치원 다니고둥이들은 아직 어려서 가정 양육 수당이 쏘쏙 합니다.”

부정 반응은 ‘취꼬리’, ‘적어요’, ‘빠듯’, ‘불만족’ 등을 볼 수 있다.

“돌전인데 가정양육수당 15분이 안돼요.”

“그러게요 가정양육수당 너무 적어요 열집안가면 손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안보내면 손해, 취꼬리 가정양육수당 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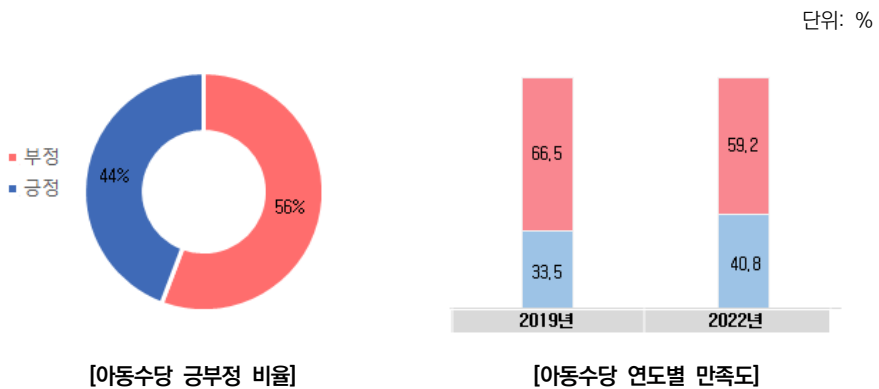
“집에서 애 키우면 받는 가정양육수당 대체로 불만족”

“진짜 가정양육수당 올려야 된다 생각하죠.”

나. 아동수당

아동수당 관련 긍·부정 분석을 살펴보면, 긍정 44.0%, 부정 56.0%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IV-4-3] 아동수당 관련 긍·부정 분석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표 IV-4-2〉 아동수당 2개년 긍·부정 단어 변화

단위: 건

2019년 긍·부정 단어 TOP15				2022년 긍·부정 단어 TOP15			
No.	화제어	빈도	구분	No.	화제어	빈도	구분
1	좋다	1,214	긍정	1	좋다	684	긍정
2	안되다	554	부정	2	안되다	219	부정
3	못받다	299	부정	3	못받다	103	부정
4	힘들다	190	부정	4	감사	100	긍정
5	늦다	185	부정	5	저출산이다	85	부정
6	행복	91	긍정	6	위기	76	부정
7	감사드리다	83	긍정	7	유용하다	67	긍정
8	경력단절되다	76	부정	8	힘들다	63	부정
9	유용하다	75	긍정	9	늦다	59	부정
10	가난하다	45	부정	10	추천하다	45	긍정
11	부럽다	41	긍정	11	행복	39	긍정
12	기분좋다	39	긍정	12	든든하다	28	긍정
13	번거롭다	38	부정	13	축하하다	28	긍정
14	유익하다	34	긍정	14	도움	26	긍정
15	든든하다	32	긍정	15	가난하다	23	부정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가정양육수당과 유사하게 시기별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지급연령이 2021년 기준 만7세 미만에서 2022년 1월부터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³⁹⁾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에 대한 긍정 반응은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형평성’ 중심의 언급이 주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지원단가에 대한 만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반해 부정 반응은 지원단가에 대한 불만족과 제도 도입 초기 차등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 해당된다.

[그림 IV-4-4] 아동수당 관련 긍·부정 Word Cloud (Top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2018년 긍·부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향성이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부록 그림 IV-3-4]에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에 대한 긍정 반응은 ‘좋아요’, ‘행복’, ‘부럽’, ‘꿈돈’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이라니 우리나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아수당도 있고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같아요”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등등 정부지원 받고 아이들 키우는 맘들이 부럽더라고요.”

“아동수당 학교 들어가서도 만7세라서 첫째가 12월생이라 11월까지는 받으니 너무 좋네요.”

39)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정책사용설명서 아동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원대상·혜택은? (정책공감 2022. 3. 29일자)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86109829> (2022. 10. 30. 인출).

한편, 부정 반응은 ‘불공평’, ‘박탈감’, ‘빠듯’, ‘적어요’ 등이며,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그래도 적어요 적어! 남편보험빼고 매달 230으로 생활합니다 20만원 아동수당 나오는것 까지 포함해서요.적금,보험,애들보험,열집비용,관리비,정수기,핸드폰요금 등등 다 내야되니 빠듯하게 사네요.”

“맞아요 지원도 없고 아동수당 양육수당도 솔직히 너무 적어요!!!그거 주고 애기는 더 낳으라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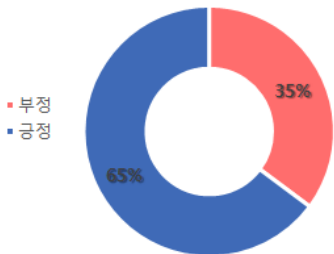
“세금은 세금대로 열심히 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아동수당도 아들이아슬하게 3월출생이라 못 받고 그냥 속상해서 몇 자 적어요 공평하게 주시지.”

다. 영아수당

영아수당 만족도 관련 긍·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 65.0%, 부정 35.0%로 앞서 살펴본 가정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원단가가 2022년 30만원에서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될 것이라는 기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V-4-5] 영아수당 관련 긍·부정 분석

단위: %



〈표 IV-4-3〉 긍·부정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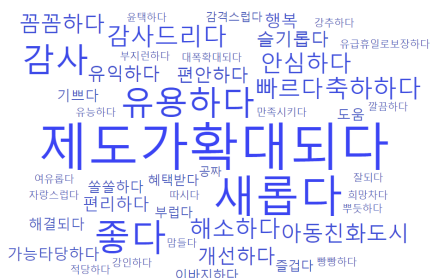
단위: 건

No.	화제어	빈도	구분
1	(제도가)확대되다	271	긍정
2	새롭다	165	긍정
3	좋다	158	긍정
4	어렵다	42	부정
5	안되다	40	부정
6	활용하다	37	긍정
7	불가능하다	32	부정
8	제외되다	29	부정
9	감사	18	긍정
10	유용하다	18	긍정
11	힘들다	15	부정
12	나라답다	14	긍정
13	헛갈리다	14	부정
14	못받다	12	부정
15	(제도를) 개선하다	8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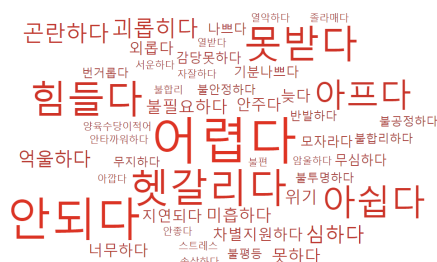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금·부정 관련 내용은 ‘수혜 대상에 관한 형평성’ 중심의 언급이 주로 나타났으며,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만족이 언급되었다. 부정적 인식은 지원대상이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림 IV-4-6] 영아수당 관련 긍·부정 Word Cloud (Top50)



[긍정 Word Cloud]



[부정 Word Cloud]

구체적 언급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 반응으로 ‘좋아요’, ‘도움’, ‘부
럽’, ‘오르다’ 등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수당에 아동수당에 영천시 지원금에 한달 60이니 당분간은 분유 값 기저귀 값은 되네요^^”

“또 낯을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전 저기서 받아본 게 아동수당 옛 영아수당인데ㅎ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한편, 부정적인 반응은 ‘문제’, ‘불합리’, ‘차이’, ‘차별’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등과 별도로 24개월까지 준다는데....이게 22년 출생자부터 해당이라서... 24개월 안 된 20년, 21년 출생자들에게는 안 주는 좀 문제 있는 듯”

“청원동의했어요. 영아수당은 좀...그럼 낳은 년도별로 이렇게 차등들 꺼면 22년부터 25년까지 영아수당 서서히 증액하는 중에도 21년 아가들은 예산이 어쩌네 저쩌네 포함 안 시켜 놓고 22년 아가들부터는 해마다 상승되면 상승분에 따라 지급하면 같은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왜 차별하나 싫어 좀 짜증났듯이. 영아수당은 태어난 년도가 아닌 해당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5. 시사점

중앙정부 현금지원정책에 대해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의 포털과 국내 100여개 언론사 뉴스 기사에 나타난 부모의 인식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하였다.

첫째,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보육료 전환 관련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경로 등에 대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양육수당이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으로 대체된 부분에 대한 홍보와 영아수당 지급 종료 후 가정양육수당 신청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가정양육수당 관련 담론 분석 결과, 수령금액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일자에 따른 소급지원 > 수령대상 순으로 다수의 언급이 발생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보육료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요 화제어로 발생하였다.

둘째, 아동수당 지원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 수당에 대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제공하고, 지원기준 및 대상, 지급 금액, 지급일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마련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담론 분석 결과, 확대연령에 따른 소급지원 > 세액공제 > 계좌 변경 > 수령일자 순으로 다수의 언급이 발생했으며 아동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가정양육수당 관련된 키워드가 주요 화제어로 발생하였다.

셋째, 영아수당이 가정양육수당과의 혼동을 발생하므로,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설명을 제공하며, 임신출산기에 자주 방문하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등을 정책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및 가구 현황

- 01 아동 및 가구 특성
- 02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 0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 04 사교육 기관 이용
- 05 자녀양육 서비스 이용
- 06 가정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 07 가정양육수당 지원가구 심층면담(FGI) 결과
- 08 시사점

V.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및 가구 현황

제5장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및 가구 특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교육 기관, 개인양육 등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1. 아동 및 가구 특성

1절은 조사에 참여한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및 가구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아동 특성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총 2,295명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현황 조사에 참여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나이는 평균 48.9개월이며, 구간별로는 60개월 이상이 29.9%로 가장 많고, 36~47개월 사이가 28.9%, 24~35개월 23.5% 순이며, 48~59개월 사이가 17.7%로 가장 적었다. 제 특성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나이가 많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가구소득이 501~600만원 사이인 가구의 아동 나이가 유의하게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4.4%, 여아가 45.6%로 남아가 여아보다 10%p 정도 많았다. 제 특성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남아가 많고, 읍면지역은 여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구소득 및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남아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1-1〉 아동 월령 및 성별

단위: %(명)

구분	월령					성별		계(수)
	24~ 35개월	36~ 47개월	48~ 59개월	60개월 이상	평균	여아	남아	
전체	23.5	28.9	17.7	29.9	48.9	45.6	54.4	100.0(2,295)
지역규모								
대도시	20.2	29.6	19.0	31.2	50.2	45.5	54.5	100.0(1,146)
중소도시	25.7	28.2	16.5	29.5	48.1	43.9	56.1	100.0(943)
읍면지역	31.6	28.5	15.7	24.2	45.9	53.8	46.2	100.0(207)
$X^2(df)$			18.1(6)**		8.0***	6.5(2)*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9.2	21.5	21.9	27.4	48.7	48.7	51.3	100.0(92)
251~350만원	21.6	27.0	21.9	29.5	49.5	41.3	58.7	100.0(367)
351~500만원	26.1	30.7	15.1	28.1	47.9	49.5	50.5	100.0(668)
501~600만원	21.8	23.2	19.4	35.6	51.2	44.8	55.2	100.0(374)
601만원 이상	22.4	31.9	16.6	29.1	48.5	44.3	55.7	100.0(794)
$X^2(df)$			27.1(12)**		2.7*	7.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6	28.6	17.8	29.9	48.9	46.3	53.7	100.0(1,341)
외벌이	23.3	29.3	17.5	29.8	49.0	44.5	55.5	100.0(954)
$X^2(df)$			0.2(3)		-0.1	0.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1$

〈표 V-1-2〉 출생 순위

단위: %(명)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계(수)
전체	90.4	9.2	0.4	100.0(2,295)
지역규모				
대도시	89.6	10.0	0.4	100.0(1,146)
중소도시	91.6	7.9	0.4	100.0(943)
읍면지역	88.9	10.9	0.2	100.0(20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88.4	11.6	-	100.0(92)
251~350만원	91.3	7.8	0.9	100.0(367)
351~500만원	89.9	9.5	0.6	100.0(668)
501~600만원	90.2	9.7	0.1	100.0(374)
601만원 이상	90.7	9.2	0.1	100.0(7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90.9	8.9	0.2	100.0(1,341)
외벌이	89.7	9.7	0.6	100.0(9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표 V-1-2〉는 조사에 참여한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출생순위를 살펴본 것이다. 첫째가 90.4%로 다수이고, 둘째 9.2%, 셋째 이상 0.4%이며, 제 특성별로도 첫째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건강상태를 보면, 아동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 중 2.3%는 질병, 0.9%는 장애가 있으며, 0.1%는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제 특성별로도 대다수가 건강한 상태이었다.

〈표 V-1-3〉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건강	질병	장애	장애와 질병	계(수)
전체	96.7	2.3	0.9	0.1	100.0(2,295)
지역규모					
대도시	96.8	2.1	1.0	0.1	100.0(1,146)
중소도시	96.2	2.7	0.9	0.1	100.0(943)
읍면지역	97.9	1.6	0.5	-	100.0(20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99.2	0.6	0.2	-	100.0(92)
251~350만원	95.8	2.0	2.0	0.2	100.0(367)
351~500만원	95.1	3.1	1.8	-	100.0(668)
501~600만원	99.3	0.2	0.3	0.2	100.0(374)
601만원 이상	96.8	3.0	0.2	-	100.0(7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97.5	1.9	0.5	0.1	100.0(1,341)
외벌이	95.4	2.9	1.6	0.1	100.0(9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나. 가구 특성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이 있는 가구 총 2,057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구원 수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가구의 가구원 수는 3명 69.4%, 4명 24.3%로 부부와 자녀 한명 또는 자녀 두 명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자녀가 1명인 가구는 가구원이 3명인 경우가 9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자녀가 2명인 가구는 가구원이 4명인 경우가 53.7%이며, 자녀가 3

명 이상인 경우는 가구원이 3명 42.5%, 4명 35.2%, 5명 12.8%로 자녀수가 1명 또는 2명인 가구와 다소 상이한 경향성을 보였다. 지역규모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V-1-4〉 가구원 수

단위: %(명)

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상	계(수)
전체	0.9	69.4	24.3	3.4	1.6	0.3	100.0(2,057)
자녀수							
1명	1.0	91.4	4.6	2.6	0.4	-	100.0(1,169)
2명	0.9	40.0	53.7	2.5	2.8	0.2	100.0(721)
3명 이상	0.9	42.5	35.2	12.8	5.4	3.3	100.0(168)
$\chi^2(df)$			-				
지역규모							
대도시	0.6	67.0	26.5	4.1	1.6	0.3	100.0(1,015)
중소도시	1.3	72.3	21.5	2.7	1.9	0.4	100.0(858)
읍면지역	1.2	69.6	25.3	3.0	0.6	0.5	100.0(184)
$\chi^2(df)$			-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10.0	59.0	27.1	2.5	-	1.4	100.0(81)
251~350만원	1.5	69.1	24.4	3.9	1.0	0.2	100.0(333)
351~500만원	0.7	70.2	25.0	2.4	1.3	0.4	100.0(597)
501~600만원	-	77.3	20.4	0.9	1.2	0.1	100.0(334)
601만원 이상	0.3	66.4	25.2	5.2	2.6	0.3	100.0(712)
$\chi^2(df)$			-				
맞벌이 여부							
맞벌이	0.2	70.2	23.4	3.4	2.4	0.4	100.0(1,210)
외벌이	1.9	68.3	25.6	3.4	0.5	0.2	100.0(847)
$\chi^2(df)$			27.7(5)***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0.6	67.1	27.0	4.0	1.0	0.3	100.0(549)
36~47개월	0.7	68.0	26.5	3.5	1.2	0.1	100.0(639)
48~59개월	0.6	66.1	27.5	3.6	2.0	0.3	100.0(343)
60개월 이상	1.8	75.7	16.8	2.5	2.5	0.7	100.0(526)
$\chi^2(df)$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01$

2) 가구 형태

한편 이들 가구의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90.2%로 다수를 차지하고,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는 7~8% 정도이

었다. 제 특성별로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는 자녀수에 비례하고, 읍면지역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맞벌이 가구일수록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1-5〉 가구 유형

단위: %(명)

구분	조부모 +부모 +자녀	조부모 +한부 모+자 녀	한 조부모 +부모 +자녀	한 조부모+ 한부모+ 자녀	부부+ 자녀	한부모 +자녀	(한)조 부모+ 자녀	기타	계(수)
전체	3.1	1.3	2.9	1.0	90.2	1.0	-	0.4	100.0(2,057)
자녀수									
1명	2.5	1.7	3.0	1.4	89.9	1.0	-	0.4	100.0(1,169)
2명	3.5	1.1	1.9	0.5	91.5	1.1	-	0.4	100.0(721)
3명 이상	5.2	-	6.9	-	87.0	0.9	-	-	100.0(168)
지역규모									
대도시	3.1	1.2	3.8	0.9	90.0	0.6	-	0.4	100.0(1,015)
중소도시	3.3	1.5	2.0	1.3	90.0	1.4	0.1	0.5	100.0(858)
읍면지역	2.3	1.2	2.4	0.2	92.8	1.3	-	-	100.0(184)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6	7.1	0.6	9.1	69.3	10.8	0.6	-	100.0(81)
251~350만원	1.8	2.0	3.1	1.4	90.0	1.5	-	0.2	100.0(333)
351~500만원	2.5	0.9	2.0	-	93.9	0.7	-	-	100.0(597)
501~600만원	1.7	-	3.0	-	95.3	-	-	-	100.0(334)
601만원 이상	4.8	1.3	3.9	1.3	87.3	0.4	-	1.0	100.0(7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	0.5	3.9	0.6	90.3	0.2	-	0.4	100.0(1,210)
외벌이	1.5	2.5	1.6	1.6	90.2	2.1	0.1	0.4	100.0(847)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2.9	0.6	1.9	0.1	93.4	0.7	0.1	0.3	100.0(549)
36~47개월	1.7	1.7	4.0	0.3	91.0	0.8	-	0.4	100.0(639)
48~59개월	3.1	2.3	3.6	2.0	88.3	0.6	-	0.2	100.0(343)
60개월 이상	4.9	0.9	2.3	2.2	87.2	1.8	-	0.6	100.0(5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3) 부모의 취업 상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부모의 취업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버지 중 97.0%는 취업 중이고, 1.7%는 휴직 중(육아휴직 포함)이며, 1.3%만

미취업 상태이었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버지가 취업 중인 경우가 많고, 반대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표 V-1-6〉 부의 취업 상태

단위: %(명)

구분	취업	휴직 중(육아휴직 포함)	미취업(구직 및 학업중 포함)	계(수)
전체	97.0	1.7	1.3	100.0(2,020)
자녀수				
1명	97.6	1.0	1.4	100.0(1,141)
2명	95.8	3.0	1.1	100.0(712)
3명 이상	97.8	1.2	1.0	100.0(167)
X ² (df)		-		
지역규모				
대도시	97.8	0.8	1.3	100.0(1,002)
중소도시	95.9	2.7	1.3	100.0(836)
읍면지역	97.2	2.0	0.8	100.0(182)
X ² (df)		-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70.7	10.6	18.8	100.0(61)
251~350만원	92.6	3.8	3.5	100.0(326)
351~500만원	97.6	1.9	0.4	100.0(595)
501~600만원	99.4	0.6	-	100.0(334)
601만원 이상	99.6	0.4	-	100.0(703)
X ² (df)		-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96.5	1.8	1.7	100.0(546)
36~47개월	96.0	2.1	1.9	100.0(630)
48~59개월	98.5	0.9	0.6	100.0(338)
60개월 이상	97.8	1.7	0.5	100.0(506)
X ² (df)		9.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01$

한편, 조사에 참여한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어머니 중 47.9%는 취업 중이고, 13.4%는 휴직 중이며, 38.7%가 미취업(구직 및 학업 중 포함) 상태이었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어머니가 취업 중인 비율이 높고, 반대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미취업(구직 및 학업 중 포함)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고, 반대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미취업(구직 및 학업 중 포함)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막내자녀 연령별로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미취업(구직 및 학업 중 포함)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표 V-1-7〉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모 취업 상태

단위: %(명)

구분	취업	휴직 중(육아휴직 포함)	미취업(구직 및 학업중 포함)	계(수)
전체	47.9	13.4	38.7	100.0(2,045)
자녀수				
1명	52.2	11.1	36.8	100.0(1,161)
2명	43.5	17.3	39.2	100.0(717)
3명 이상	37.1	12.8	50.1	100.0(167)
$X^2(df)$		31.5(4)***		
지역규모				
대도시	47.7	12.0	40.3	100.0(1,010)
중소도시	48.8	15.3	35.9	100.0(852)
읍면지역	44.9	12.2	42.9	100.0(182)
$X^2(df)$		7.6(4)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19.1	17.1	63.8	100.0(80)
251~350만원	15.7	20.1	64.2	100.0(326)
351~500만원	27.7	15.2	57.1	100.0(594)
501~600만원	51.5	14.9	33.6	100.0(334)
601만원 이상	81.2	7.6	11.2	100.0(711)
$X^2(df)$		592.7(8)***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43.5	16.4	40.1	100.0(548)
36~47개월	50.9	10.0	39.0	100.0(635)
48~59개월	45.4	15.3	39.3	100.0(340)
60개월 이상	50.5	13.0	36.5	100.0(522)
$X^2(df)$		15.7(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4) 근무시간

다음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취업 상태인 경우 1주일 평균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1주일 평균 45.8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근무시간 구간별로는 40~50시간 미만 사이가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50~60시간 미만 사이는 26.2%, 60시간 이상은 11.1%, 40시간 미만은 5.2%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1주일 평균 40~50시간 미만 동안 근무하는 아버지가 많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50~60시간 미만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버지가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250만원 이하 가구에서 아버지가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29.4%로 그 이상 가

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별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에 비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다. 수급 막내자녀 연령별로는 경향성이 없었다.

〈표 V-1-8〉 아버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5.2	57.5	26.2	11.1	100.0(1,959)	45.8
자녀수						
1명	5.5	59.7	25.3	9.5	100.0(1,114)	45.2
2명	5.2	55.2	27.4	12.2	100.0(682)	46.3
3명 이상	2.7	51.6	28.1	17.5	100.0(163)	47.4
$X^2(df)/F$			15.9(6)*			7.1**
지역규모						
대도시	3.6	59.6	26.2	10.6	100.0(980)	45.9
중소도시	7.3	54.6	26.1	12.1	100.0(802)	45.6
읍면지역	4.0	59.1	27.1	9.8	100.0(177)	45.8
$X^2(df)/F$			14.8(6)*			0.3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9.4	60.5	9.4	0.8	100.0(43)	37.8
251~350만원	6.2	55.3	26.8	11.7	100.0(302)	45.8
351~500만원	4.9	59.4	24.3	11.4	100.0(581)	46.0
501~600만원	3.4	56.0	27.2	13.5	100.0(332)	46.5
601만원 이상	4.3	57.3	28.3	10.1	100.0(701)	45.8
$X^2(df)/F$			71.4(12)***			1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2	57.9	27.7	8.2	100.0(1,177)	45.1
외별이	3.5	56.9	24.1	15.5	100.0(782)	46.9
$X^2(df)/t$			30.7(3)***			-4.7***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6.4	57.9	25.4	10.3	100.0(527)	45.3
36~47개월	5.5	53.3	30.6	10.7	100.0(605)	46.3
48~59개월	3.7	58.4	25.3	12.6	100.0(333)	46.3
60개월 이상	4.5	61.6	22.5	11.5	100.0(495)	45.3
$X^2(df)/F$			15.8(9)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한편, 일하는 어머니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37.8시간으로 아버지보다 8시간 정도 짧았다. 구간별로 보면, 40~50시간 미만 사이가 60.6%로 다수를 차지하고, 40시간 미만이 27.2%, 50시간 이상이 12.2% 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가구와 601만원 이상 가구 어머니가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22.4%, 16.9%로 높았다. 또한 맞벌이 가구 어머니는 40시간 미만과 40~50시간 미만 비율이 외벌이보다 높고, 외벌이 가구 어머니는 50시간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일하는 어머니 중 저임금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20% 정도 차지한다.

〈표 V-1-9〉 어머니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40시간 미만	40~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7.2	60.6	12.2	100.0(980)	37.8
자녀수					
1명	26.3	60.9	12.8	100.0(606)	38.1
2명	30.0	58.8	11.2	100.0(312)	37.2
3명 이상	21.4	67.3	11.3	100.0(62)	38.2
$X^2(df)/F$		3.2(4)			0.8
지역규모					
대도시	22.8	64.0	13.2	100.0(482)	38.2
중소도시	32.1	57.0	10.9	100.0(416)	37.2
읍면지역	27.6	59.7	12.7	100.0(82)	38.1
$X^2(df)/F$		9.9(4)*			1.0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5.4	42.1	22.4	100.0(15)	36.4
251~350만원	57.6	37.6	4.8	100.0(51)	29.0
351~500만원	55.4	41.1	3.5	100.0(164)	31.3
501~600만원	26.1	67.8	6.0	100.0(172)	38.2
601만원 이상	16.5	66.6	16.9	100.0(577)	40.3
$X^2(df)/F$		140.4(8)***			4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4	60.8	11.8	100.0(939)	37.7
외벌이	21.2	57.0	21.8	100.0(41)	40.9
$X^2(df)/t$		3.9(2)			-2.0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28.4	63.5	8.1	100.0(238)	37.1
36~47개월	26.4	59.3	14.3	100.0(323)	38.5
48~59개월	16.6	69.8	13.6	100.0(154)	39.5
60개월 이상	33.1	54.4	12.5	100.0(264)	36.5
$X^2(df)/F$		18.8(6)**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5) 가구소득

〈표 V-1-10〉은 조사에 참여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가

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조사한 것이다.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37.7만원이며, 소득유형별로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평균 500.9만원, 기타 소득 평균 12.2만원, 돌봄 관련 기타 소득 평균 16.4만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지원금 평균 1.6만원, 육아휴직급여 평균 6.5만원이었다.

〈표 V-1-10〉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 소득	돌봄 관련 기타소득	중앙정부, 지방정 부 등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총계	(수)
전체	500.9	12.2	16.4	1.6	6.5	537.7	(2,057)
자녀수							
1명	500.4	11.4	12.6	1.3	4.5	530.1	(1,169)
2명	502.3	14.4	21.3	2.2	10.4	550.5	(721)
3명 이상	498.4	9.1	21.9	1.8	4.2	535.3	(168)
F	0.0	1.4	42.9***	2.3	10.4***	1.8	
지역규모							
대도시	513.5	11.7	17.2	1.6	4.3	548.4	(1,015)
중소도시	497.6	12.9	15.1	1.7	9.2	536.5	(858)
읍면지역	446.8	11.9	18.2	1.6	5.9	484.3	(184)
F	6.8**	0.2	2.9	0.1	7.0**	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4.7	9.2	16.6	1.8	10.6	623.0	(1,210)
외벌이	381.2	16.6	16.1	1.4	0.7	416.0	(847)
t	23.6***	-3.2**	0.5	0.9	9.3***	23.6***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488.9	10.6	21.0	2.2	8.6	531.3	(549)
36~47개월	509.7	8.7	14.9	1.8	4.3	539.4	(639)
48~59개월	491.1	17.9	14.9	1.1	6.6	531.6	(343)
60개월 이상	509.1	14.5	14.5	1.2	7.0	546.3	(526)
F	1.2	3.5*	11.1***	1.7	2.3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이를 제 특성별로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역규모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일수록 또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유의하게 가구소득이 많았다. 근로소득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으나, 돌봄 관련 기타 소득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또는 수급 막내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많고, 육아휴직급여는 자녀가 2명이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거나 맞벌이 가구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돌봄 관련 기타 소득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출산가정 또는 다자녀 가구에 현금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에 막내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많았다.

한편,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가구의 월평균 가구지출액은 평균 357.0만원으로 구간별로는 300만원 미만인 31.9%로 많고, 300~400만원 미만 27.9%, 500만원 이상 23.5%, 400~500만원 16.7%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자녀수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녀가 많을수록 또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지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표 V-1-11〉 월평균 가구 지출액

단위: %(명), 만원

구분	300만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1.9	27.9	16.7	23.5	100.0(2,057)	357.0
자녀수						
1명	38.2	28.2	15.1	18.5	100.0(1,169)	331.4
2명	24.0	29.4	19.4	27.1	100.0(721)	377.8
3명 이상	21.6	18.9	16.2	43.2	100.0(168)	446.0
$\chi^2(df)/F$			88.0(6)***			48.0***
지역규모						
대도시	32.2	28.3	15.4	24.1	100.0(1,015)	352.4
중소도시	30.3	27.5	18.4	23.9	100.0(858)	365.9
읍면지역	37.2	27.3	16.5	19.0	100.0(184)	340.7
$\chi^2(df)/F$			6.7(6)			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8	23.9	19.3	31.0	100.0(1,210)	386.0
외벌이	40.6	33.5	13.1	12.9	100.0(847)	315.5
$\chi^2(df)/t$			131.8(3)***			10.4***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34.2	29.3	15.8	20.7	100.0(549)	347.4
36~47개월	31.6	27.1	17.7	23.6	100.0(639)	354.5
48~59개월	31.1	28.6	15.3	24.9	100.0(343)	355.7
60개월 이상	30.2	26.7	17.5	25.5	100.0(526)	370.7
$\chi^2(df)/F$			6.3(9)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01$

6) 육아휴직 이용 경험

〈표 V-1-12〉는 조사에 참여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가구의 어머니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

이 육아휴직 경험이 없고, 36.2%는 과거에 육아휴직 경험이 있으며, 4.5%만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2〉 자녀양육 위한 본인 육아휴직 경험 여부: 모

단위: %(명)

구분	현재 육아휴직 중	과거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전체	4.5	36.2	59.3	100.0(2,038)
자녀수				
1명	3.2	35.6	61.3	100.0(1,157)
2명	6.8	37.2	56.1	100.0(715)
3명 이상	3.5	36.8	59.8	100.0(167)
X ² (df)		14.9(4)**		
지역규모				
대도시	3.4	40.0	56.6	100.0(1,005)
중소도시	5.7	33.4	60.9	100.0(851)
읍면지역	4.3	28.7	66.9	100.0(182)
X ² (df)		18.0(4)**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7.1	19.2	73.7	100.0(79)
251~350만원	2.6	27.6	69.8	100.0(324)
351~500만원	6.8	27.7	65.5	100.0(593)
501~600만원	5.8	33.4	60.7	100.0(333)
601만원 이상	2.4	50.5	47.1	100.0(709)
X ² (df)		115.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3	45.3	47.4	100.0(1,206)
외벌이	0.3	23.1	76.6	100.0(833)
X ² (df)		191.4(2)***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6.4	34.6	59.0	100.0(546)
36~47개월	1.5	38.8	59.7	100.0(632)
48~59개월	5.4	37.3	57.3	100.0(338)
60개월 이상	5.3	34.2	60.5	100.0(522)
X ² (df)		20.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제 특성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일수록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과거에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직종에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일수록 현

제 육아휴직 중이거나 과거 경험에 있다, 외별이는 경험에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가구의 아버지 중에서는 다수인 81.5%가 육아휴직 경험에 없었다. 17.1%만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에 있고, 1.5%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현재 육아휴직 중인 비율이 높고, 맞벌이 가구가 외별이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에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V-1-13〉 자녀양육 위한 본인 육아휴직 경험 여부: 부

단위: %(명)

구분	현재 육아휴직 중	과거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전체	1.5	17.1	81.5	100.0(2,014)
자녀수				
1명	0.6	16.3	83.1	100.0(1,137)
2명	2.9	18.9	78.2	100.0(710)
3명 이상	1.2	14.8	84.0	100.0(166)
X ² (df)		18.4(4)**		
지역규모				
대도시	0.5	18.6	80.8	100.0(997)
중소도시	2.6	13.7	83.6	100.0(835)
읍면지역	1.2	23.9	74.9	100.0(182)
X ² (df)		27.4(4)***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8.8	18.6	72.6	100.0(61)
251~350만원	3.7	12.8	83.5	100.0(324)
351~500만원	1.4	13.0	85.5	100.0(594)
501~600만원	0.5	18.9	80.6	100.0(333)
601만원 이상	0.3	21.5	78.2	100.0(701)
X ² (df)		-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	21.6	76.1	100.0(1,206)
외별이	0.3	10.3	89.4	100.0(808)
X ² (df)		60.4(2)***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1.5	17.3	81.1	100.0(545)
36~47개월	2.0	15.0	83.0	100.0(627)
48~59개월	0.9	22.0	77.1	100.0(336)
60개월 이상	1.1	16.1	82.7	100.0(506)
X ² (df)		9.6(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7) 경력단절 경험 여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가구 어머니 대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중 42.9%는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없었다. 제 특성별로 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가구소득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외벌이인 경우, 가정양육수당 수급 막내자녀 연령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직장을 그만둔 경험 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1-14〉 자녀양육 어려움으로 인한 직장 그만둔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42.9	57.1	100.0(2,057)				
자녀수				맞벌이 여부			
1명	37.9	62.1	100.0(1,169)	맞벌이	36.9	63.1	100.0(1,210)
2명	47.2	52.8	100.0(721)	외벌이	51.5	48.5	100.0(847)
3명 이상	59.7	40.3	100.0(168)	$\chi^2(df)$	43.0(1)***		
$\chi^2(df)$	36.4(2)***			수급 막내자녀 연령			
지역규모				24~35개월	37.4	62.6	100.0(549)
대도시	43.8	56.2	100.0(1,015)	36~47개월	40.8	59.2	100.0(639)
중소도시	43.5	56.5	100.0(858)	48~59개월	39.5	60.5	100.0(343)
읍면지역	35.7	64.3	100.0(184)	60개월 이상	53.6	46.4	100.0(526)
$\chi^2(df)$	4.2(2)			$\chi^2(df)$	34.4(3)***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62.7	37.3	100.0(81)				
251~350만원	48.4	51.6	100.0(333)				
351~500만원	50.3	49.7	100.0(597)				
501~600만원	44.7	55.3	100.0(334)				
601만원 이상	31.2	68.8	100.0(712)				
$\chi^2(df)$	7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01$

2.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2절은 조사에 참여한 아동 2,295명의 가정양육수당 최초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1) 최초 수급시기

통상 출생신고 시 가정양육수당 수급 신청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출생 이후 바로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시작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등의 서비스 이용으로 그 이후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기도 한다. 다음은 조사 대상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처음 지원받기 시작한 시기를 조사한 것이다.

〈표 V-2-1〉 가정양육수당 최초 수급시기

단위: %(명)

구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개월 이상	계(수)
전체	67.8	9.8	9.8	12.6	100.0(2,295)
아동 월령					
24~35개월	79.0	15.9	5.0	-	100.0(539)
36~47개월	64.7	12.1	19.2	4.0	100.0(664)
48~59개월	61.2	8.0	12.3	18.5	100.0(406)
60개월 이상	65.8	3.9	2.9	27.4	100.0(686)
$X^2(df)$			410.1(9)***		
지역규모					
대도시	67.4	8.8	9.1	14.7	100.0(1,146)
중소도시	67.8	10.5	11.5	10.3	100.0(943)
읍면지역	69.8	12.8	5.9	11.4	100.0(207)
$X^2(df)$			18.3(6)**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66.0	10.9	10.5	12.7	100.0(92)
251~350만원	64.7	9.4	12.9	13.1	100.0(367)
351~500만원	69.3	10.3	8.9	11.5	100.0(668)
501~600만원	64.9	10.0	9.3	15.7	100.0(374)
601만원 이상	69.6	9.5	9.2	11.8	100.0(794)
$X^2(df)$			10.5(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66.6	9.5	9.3	14.6	100.0(1,341)
외벌이	69.5	10.3	10.4	9.8	100.0(954)
$X^2(df)$			12.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1$, *** $p < .001$

24개월 이상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최초 지원받기 시작한 시기는 0~11개월이 67.8%, 12~23개월 9.8%, 24~35개월 9.8%, 36개월 이상 12.6%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하게 0~11개월 사이가 다빈도를 나타냈지만, 읍면지역일수록 12~23개월 사이에 지원받았다는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24~25개월,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35개월 이하 기간에 가정양육수당을 최초 지원받기 시작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경험

1) 지원 중단 여부 및 횟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V-2-2〉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경험 여부 및 중단 횟수

단위: %(명)

구분	중단 경험 여부		중단 횟수			
	경험 있음	(수)	1회	2회 이상	계(수)	평균
전체	47.7	(2,295)	95.3	4.7	100.0(1,094)	1.1
아동 월령						
24~35개월	27.5	(539)	98.4	1.6	100.0(148)	1.0
36~47개월	41.6	(664)	97.4	2.6	100.0(277)	1.0
48~59개월	53.3	(406)	93.0	7.0	100.0(216)	1.1
60개월 이상	66.1	(686)	94.1	5.9	100.0(453)	1.1
X ² (df)	196.5(3)	***		10.7(3)*		3.3*
지역규모						
대도시	47.8	(1,146)	94.5	5.5	100.0(548)	1.1
중소도시	47.9	(943)	96.6	3.4	100.0(452)	1.0
읍면지역	45.9	(207)	94.3	5.7	100.0(95)	1.1
X ² (df)	0.3(2)			2.8(2)		2.0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8.8	(92)	95.7	4.3	100.0(36)	1.0
251~350만원	39.4	(367)	92.3	7.7	100.0(145)	1.1
351~500만원	44.9	(668)	95.2	4.8	100.0(300)	1.1
501~600만원	46.2	(374)	95.1	4.9	100.0(173)	1.1
601만원 이상	55.5	(794)	96.4	3.6	100.0(441)	1.0
X ² (df)	34.8(4)	***		3.9(4)		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2	(1,341)	96.6	3.4	100.0(673)	1.0
외벌이	44.1	(954)	93.2	6.8	100.0(421)	1.1
X ² (df)	8.2(1)**			6.9(1)**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1$, * $p < .05$, *** $p < .001$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의 월령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이용으로 중단한 경험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한 경험에 있는 경우 그 횟수를 알아보았다. 아동 1인당 평균 1.1회이며, 1회가 95.3%로 다수를 차지하고, 2회 이상은 4.7%로 소수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아동 월령이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평균 1회로 큰 차이는 아니다.

〈표 V-2-3〉은 가정양육수당을 처음으로 중단한 시기를 조사한 것이다. 가정양육수당 중단은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시기로 볼 수 있다.

〈표 V-2-3〉 가정양육수당 최초 중단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개월 이상	계(수)	평균	t/F
전체	0.8	5.8	15.8	77.6	100.0(1,094)	49.4	
아동 월령							
24~35개월	1.4	24.7	66.9	6.9	100.0(148)	27.0	681.0***
36~47개월	0.1	7.3	19.4	73.2	100.0(277)	38.2	
48~59개월	2.7	0.7	5.3	91.4	100.0(216)	48.9	
60개월 이상	-	1.2	2.0	96.8	100.0(453)	63.9	
지역규모							
대도시	0.8	5.4	14.0	79.8	100.0(1,146)	50.2	1.8
중소도시	0.7	6.1	17.0	76.2	100.0(943)	49.1	
읍면지역	0.7	6.9	21.0	71.4	100.0(207)	46.8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	2.6	25.3	72.1	100.0(92)	50.1	0.0
251~350만원	3.6	4.5	14.9	77.0	100.0(367)	49.7	
351~500만원	0.4	8.0	16.3	75.3	100.0(668)	49.4	
501~600만원	0.2	4.5	14.1	81.2	100.0(374)	49.4	
601만원 이상	0.3	5.6	15.8	78.3	100.0(794)	49.3	
맞벌이 여부							
맞벌이	0.7	5.4	15.6	78.4	100.0(1,341)	48.7	-1.8
외벌이	0.8	6.6	16.3	76.3	100.0(954)	5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01$

가정양육수당 지원 최초 중단시기는 평균 49.4개월이며, 구간별로는 36개월 이상이 77.6%로 다수를 차지하고, 24~35개월 15.8%, 12~23개월 5.8%, 0~11개월

은 0.8%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월령이 많을수록 최초 지원 중단시기가 늦었다. 즉, 24~35개월 사이는 평균 27.0개월, 36~47개월은 평균 38.2개월, 48~59개월은 평균 48.9개월, 60개월 이상은 평균 63.9개월 정도에 가정양육수당을 중단하기 시작하였다.

2) 수혜 기간

조사 대상 아동이 조사시점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간은 아동 1인당 평균 25.9개월이었다. 구간별로는 1년 미만 12.9%, 1~2년 미만 33.8%, 2~3년 미만, 31.4%로 3년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3년 이상은 21.9%로 적었다.

〈표 V-2-4〉 가정양육수당 총 지원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2.9	33.8	31.4	21.9	100.0(2,295)	25.9
아동 월령						
24~35개월	10.3	30.4	56.9	2.4	100.0(539)	23.0
36~47개월	16.4	36.4	19.8	27.5	100.0(664)	23.9
48~59개월	11.5	37.1	30.5	20.9	100.0(406)	25.8
60개월 이상	12.4	32.0	23.2	32.4	100.0(686)	30.1
X ² (df)/F			307.4(9)***			32.3***
지역규모						
대도시	13.0	34.5	30.7	21.8	100.0(1,146)	25.9
중소도시	13.1	33.2	31.5	22.2	100.0(943)	25.8
읍면지역	11.6	32.6	34.6	21.2	100.0(207)	26.1
X ² (df)/F			1.7(6)			0.0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13.7	28.1	37.2	21.0	100.0(92)	27.0
251~350만원	11.2	28.9	31.8	28.1	100.0(367)	28.5
351~500만원	10.4	32.3	33.6	23.7	100.0(668)	26.8
501~600만원	14.2	28.9	33.9	23.0	100.0(374)	26.3
601만원 이상	15.1	40.3	27.5	17.1	100.0(794)	23.6
X ² (df)/F			46.8(12)***			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1	37.7	27.5	18.7	100.0(1,341)	24.3
외벌이	8.4	28.4	36.9	26.3	100.0(954)	28.2
X ² (df)/F			70.2(3)***			-7.5***

주: 총 지원기간은 종료시점에서 시작시점을 뺀 기간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01$

제 특성별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월령이 많을수록 또는 가구소득이 350만원 미만이거나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조사시점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구간별로는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하게 1~2년과 2~3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의 적절성

1) 현재 지원받는 금액

정부는 아동 월령별로 1~11개월은 가정양육수당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35개월 10만원, 36개월 이상 1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현재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을 조사한 결과 월 10만원이 99.2%로 다수를 차지하고, 월 15만원이 0.7%, 월 20만원도 소수이지만 0.1% 정도 있었다. 24개월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월 10만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2-5〉 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단위: %(명)

구분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계(수)
전체	0.1	0.7	99.2	100.0(2,295)
아동 월령				
24~35개월	0.3	2.9	96.8	100.0(539)
36~47개월	-	-	100.0	100.0(664)
48~59개월	-	-	100.0	100.0(406)
60개월 이상	-	-	100.0	100.0(686)
지역규모				
대도시	-	0.4	99.6	100.0(1,146)
중소도시	0.2	0.7	99.1	100.0(943)
읍면지역	-	2.0	98.0	100.0(20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	0.7	99.3	100.0(92)
251~350만원	0.4	0.7	98.9	100.0(367)
351~500만원	-	1.0	99.0	100.0(668)
501~600만원	-	1.0	99.0	100.0(374)
601만원 이상	-	0.2	99.8	100.0(7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	0.9	99.1	100.0(1,341)
외벌이	0.2	0.4	99.5	100.0(954)

주: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월령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사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2) 적정성

〈표 V-2-6〉은 자녀가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부모 중 부적절 40.5%, 매우 부적절 35.3%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적절성 점수는 4점 평균 1.9점으로 낮았다. 제 특성별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자녀 월령이 60개월 이상이거나 가구소득이 351~600만원 사이에서 적절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V-2-6〉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계(수)	평균
전체	2.6	21.6	40.5	35.3	100.0(2,295)	1.9
아동 월령						
24~35개월	2.0	21.7	39.2	37.1	100.0(539)	1.9
36~47개월	2.1	19.5	41.3	37.2	100.0(664)	1.9
48~59개월	1.8	16.8	48.0	33.3	100.0(406)	1.9
60개월 이상	4.1	26.3	36.4	33.3	100.0(686)	2.0
$\chi^2(df)/F$			32.2(9)***			4.8**
지역규모						
대도시	2.5	19.8	41.8	35.9	100.0(1,146)	1.9
중소도시	2.7	22.4	39.8	35.2	100.0(943)	1.9
읍면지역	3.0	27.8	36.6	32.6	100.0(207)	2.0
$\chi^2(df)/F$			7.6(6)			2.2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2	17.4	41.4	38.9	100.0(92)	1.8
251~350만원	0.7	15.4	48.3	35.7	100.0(367)	1.8
351~500만원	1.8	27.0	36.8	34.4	100.0(668)	2.0
501~600만원	7.0	19.2	37.4	36.5	100.0(374)	2.0
601만원 이상	2.2	21.4	41.5	35.0	100.0(794)	1.9
$\chi^2(df)/F$			62.4(12)***			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	19.3	41.9	35.9	100.0(1,341)	1.9
외벌이	2.2	24.7	38.6	34.5	100.0(954)	1.9
$\chi^2(df)/F$			10.5(3)*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적정 지원금액

정부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추가적

으로 몰았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자녀를 둔 부모 중 46.0%는 30~50만원이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50~70만원 26.2%, 30만원 미만 21.4%, 70만원 이상 6.4% 순이었고 평균 39.5만원이었다. 선행연구(고제이 외, 2015; 김미곤 외, 2019; 양미선·이윤진 외, 2016)에서도 적정 금액으로 30~50만원 사이를 보고하고 있어 현 지원금액보다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특성별로도 30~50만원 미만 사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적정 지원 금액은 아동 월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24~35개월 사이가 평균 43.4만원으로 가장 많고, 36~47개월 사이가 36.8만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V-2-7〉 적정 지원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1.4	46.0	26.2	6.4	100.0(1,740)	39.5
아동 월령						
24~35개월	18.3	47.9	25.4	8.3	100.0(412)	43.4
36~47개월	21.2	47.6	27.1	4.1	100.0(521)	36.8
48~59개월	22.8	44.5	24.2	8.4	100.0(330)	41.5
60개월 이상	23.2	43.6	27.4	5.8	100.0(477)	37.7
X ² (df)/F			13.6(9)			4.4**
지역규모						
대도시	21.4	45.2	25.7	7.8	100.0(891)	40.8
중소도시	21.4	47.7	26.3	4.7	100.0(707)	37.8
읍면지역	21.4	42.7	29.4	6.5	100.0(143)	39.4
X ² (df)/F			7.5(6)			1.9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2.2	38.2	27.8	1.8	100.0(74)	34.7
251~350만원	27.1	38.8	27.2	6.8	100.0(308)	40.1
351~500만원	17.9	55.5	18.9	7.8	100.0(476)	41.1
501~600만원	26.4	45.3	21.8	6.4	100.0(276)	37.8
601만원 이상	17.6	43.5	33.3	5.6	100.0(607)	39.3
X ² (df)/F			62.8(12)***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4	46.1	29.0	6.5	100.0(1,043)	39.9
외벌이	25.9	45.8	22.0	6.2	100.0(697)	38.9
X ² (df)/F			1.9(3)***			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1$, *** $p < .001$

라.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자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가정양육수당의 주 사용처를 1,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식료품비가 37.2%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생활필수비 14.5%, 의료비 13.5%, 자녀 적금 및 주택 청약 11.7%, 자녀보험비 8.5%, 가족 전체 생활비에 포함하여 사용 6.8% 순이었다. 주식 또는 펀드, 아동 의류비, 문화 및 여가활동비 등은 3% 내외로 소수이었다. 2순위로는 생활필수비와 식료품비가 각각 25.1%, 24.4%로 다수를 차지하고, 의료비와 자녀보험비, 문화 및 여가활동비, 아동의류비가 각각 8~9% 사이로 비등하였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식료품비가 6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필수비 39.6%, 의료비 23.1%, 자녀보험비 18.0%, 자녀적금 및 주택청약 16.3% 순이었다.

〈표 V-2-8〉 가정양육수당 주 사용처: 1+2순위

단위: %(명)

구분	의료비 ¹⁾	자녀 적금 및 주택 청약	자녀 보험비	주식 또는 펀드	식료 품비 ²⁾	생활 필수비 ³⁾	아동 의류비	문화 및 여가활동비 ⁴⁾	가족 전체 생활비	기타	계(수)
1순위	13.5	11.7	8.5	0.4	37.2	14.5	1.8	3.1	6.8	2.5	100.0(2,295)
2순위	9.6	4.6	9.5	1.7	24.4	25.1	8.4	8.6	6.7	1.3	100.0(2,295)
1+2순위	23.1	16.3	18.0	2.1	61.6	39.6	10.2	11.7	13.5	3.8	(2,295)

주: 1) 병원비, 약값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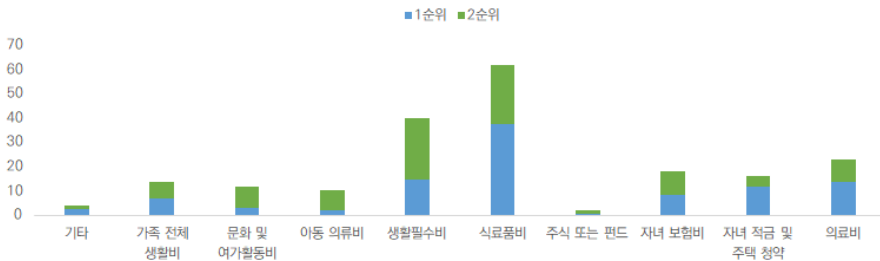
2) 분유, 이유식, 간식 등

3) 기저귀, 젖병 등이 포함됨

4) 도서, 공연비, 문구류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그림 V-2-1〕 가정양육수당 주 사용처: 1+2순위



자료: 〈표 V-2-8〉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표 V-2-9〉는 가정양육수당 주 사용처 1순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 V-2-9〉 가정양육수당 주된 사용처: 1순위

단위: %(명)

구분	의료비 ¹⁾	자녀 적금 및 주택 청약	자녀 보험비	주식 또는 펀드	식료품 비 ²⁾	생활 필수비 ³⁾	아동 의류비	문화 및 여가 활동비 ⁴⁾	가족 전체 생활비	기타	계(수)
전체	13.5	11.7	8.5	0.4	37.2	14.5	1.8	3.1	6.8	2.5	100.0(2,295)
아동 월령											
24~35개월	10.7	9.4	6.4	0.4	41.8	23.5	1.7	2.5	3.2	0.6	100.0(539)
36~47개월	13.4	12.0	8.2	0.4	37.6	16.1	2.0	1.4	7.0	1.9	100.0(664)
48~59개월	17.6	10.7	8.8	-	36.1	11.3	0.8	4.2	6.8	3.8	100.0(406)
60개월 이상	13.5	13.7	10.2	0.6	33.9	7.8	2.3	4.7	9.5	3.8	100.0(686)
$\chi^2(df)/F$					132.1(27)***						
지역규모											
대도시	14.1	11.0	7.8	0.6	36.1	15.4	1.7	3.2	7.3	2.8	100.0(1,146)
중소도시	12.6	12.9	8.6	0.2	38.4	12.9	1.8	3.5	6.4	2.6	100.0(943)
읍면지역	14.5	9.7	11.5	-	37.8	17.0	2.7	0.8	5.8	0.2	100.0(207)
$\chi^2(df)$					24.7(18)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17.0	6.5	6.0	-	48.1	7.3	-	0.9	7.6	6.7	100.0(92)
251~350만원	11.7	9.6	4.9	0.9	37.9	18.1	2.3	3.1	8.1	3.6	100.0(367)
351~500만원	13.8	11.1	10.4	0.1	38.6	14.2	1.6	3.2	4.9	1.9	100.0(668)
501~600만원	11.2	13.1	9.2	0.3	36.5	13.5	2.8	4.4	8.6	0.4	100.0(374)
601만원 이상	14.9	13.0	8.4	0.4	34.8	14.4	1.5	2.7	6.9	3.0	100.0(794)
$\chi^2(df)$					61.6(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7	12.5	8.9	0.5	36.7	14.4	1.6	3.0	5.6	2.1	100.0(1,341)
외벌이	11.9	10.5	7.8	0.2	38.0	14.7	2.1	3.3	8.4	3.1	100.0(954)
$\chi^2(df)$					17.7(9)*						

주: 1) 병원비, 약값 등

2) 분유, 이유식, 간식 등

3) 기저귀, 젖병 등이 포함됨

4) 도서, 공연비, 문구류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아동 월령이 적을수록 식료품비 및 생활필수비,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자녀보험비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읍면지역일수록 자녀보험비, 아동의류비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고, 도시지역일수록 가족 전체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도 차이를 보여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식료품비로 사용한다

는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적금 및 주택 청약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 도움 정도

가정양육수당이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 결과, 부모 중 48.8%는 어느 정도 도움, 18.3%는 매우 도움된다고 답하여서 절반 이상이 도움된다고 하였고, 도움정도는 평균 2.8점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2-10〉 가정양육수당의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에의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별로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계(수)	평균
전체	18.3	48.8	27.2	5.7	100.0(2,295)	2.8
아동 월령						
24~35개월	18.2	45.0	29.6	7.1	100.0(539)	2.7
36~47개월	15.8	51.6	27.6	5.0	100.0(664)	2.8
48~59개월	15.7	53.0	28.0	3.4	100.0(406)	2.8
60개월 이상	22.3	46.6	24.5	6.7	100.0(686)	2.8
$\chi^2(df)/F$			24.9(9)**			1.8
지역규모						
대도시	19.3	47.9	26.6	6.2	100.0(1,146)	2.8
중소도시	16.9	49.4	28.6	5.0	100.0(943)	2.8
읍면지역	18.6	50.9	24.4	6.0	100.0(207)	2.8
$\chi^2(df)/F$			4.6(6)			0.3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4.5	41.5	27.2	6.8	100.0(92)	2.8
251~350만원	19.5	45.6	28.6	6.3	100.0(367)	2.8
351~500만원	14.5	54.0	28.2	3.3	100.0(668)	2.8
501~600만원	15.4	48.8	27.8	8.0	100.0(374)	2.7
601만원 이상	21.5	46.7	25.5	6.2	100.0(794)	2.8
$\chi^2(df)/F$			33.0(12)**			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0	48.8	27.2	6.0	100.0(1,341)	2.8
외벌이	18.7	48.8	27.2	5.3	100.0(954)	2.8
$\chi^2(df)/F$			0.8(3)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1$

가정양육수당이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추가로 물었다. 조사에 응답한 부모 중 다수인 89.7%가 자녀한테 드는 비용이 지원금액에 비해 적다는 이유를 들었고, 5.6%는 가족 생활비 통장에 입금 되어 가족 전체 생활비로 사용해서, 나머지 4.7%는 자녀양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금, 주식, 펀드 등에 별도 적립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하였다. 제 특성 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48개월 이상이거나 대도시,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자녀한테 드는 비용에 비해 지원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V-2-11〉 가정양육수당이 자녀양육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 양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금, 주식 또는 펀드 등에 별도 적립	아이한테 드는 비용에 비해 지원 금액 적음	가족 생활비 통장에 입금되어 가족 전체 생활비로 사용	기타	계(수)
전체	4.7	89.7	5.6	0.1	100.0(756)
아동 월령					
24~35개월	4.0	85.9	9.9	0.2	100.0(198)
36~47개월	8.7	87.6	3.7	-	100.0(217)
48~59개월	2.2	93.9	3.4	0.5	100.0(127)
60개월 이상	2.6	92.7	4.8	-	100.0(213)
지역규모					
대도시	4.5	92.5	2.9	0.2	100.0(376)
중소도시	5.4	86.5	8.0	0.1	100.0(317)
읍면지역	2.0	88.7	9.3	-	100.0(63)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	98.6	1.4	-	100.0(31)
251~350만원	3.3	94.2	2.6	-	100.0(128)
351~500만원	7.0	83.2	9.5	0.3	100.0(211)
501~600만원	1.1	92.7	6.3	0.0	100.0(134)
601만원 이상	5.9	90.1	3.9	0.1	100.0(2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	90.1	6.0	0.1	100.0(446)
외벌이	5.8	89.1	5.0	0.1	100.0(3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3절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현황

1) 이용 경험 여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한 경험 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아동 중 76.9%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제 특성별로는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601만원 이상이거나 맞벌이 가구일수록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V-3-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76.9	23.1	100.0(2,295)				
아동 월령				가구소득			
24~35개월	52.0	48.0	100.0(539)	250만원 이하	72.8	27.2	100.0(92)
36~47개월	75.5	24.5	100.0(664)	251~350만원	74.1	25.9	100.0(367)
48~59개월	85.3	14.7	100.0(406)	351~500만원	71.0	29.0	100.0(668)
60개월 이상	92.8	7.2	100.0(686)	501~600만원	78.6	21.4	100.0(374)
$\chi^2(df)/F$		301.6(3)***		601만원 이상	82.8	17.2	100.0(794)
지역규모				$\chi^2(df)$		31.6(4)***	
대도시	78.2	21.8	100.0(1,146)	맞벌이 여부			
중소도시	75.7	24.3	100.0(943)	맞벌이	81.0	19.0	100.0(1,341)
읍면지역	75.0	25.0	100.0(207)	외벌이	71.1	28.9	100.0(954)
$\chi^2(df)$		2.2(2)		$\chi^2(df)$		30.8(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01$

2) 기관 이용 계획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계획 여부

자녀가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아동 중 31.4%는 유치원, 31.3%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둘다 보낸다는 아동은 13.3%로 과반수 이상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 둘다 안 보낸다는 아동이 23.9%로 전체 의 1/4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이를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낮을수록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고, 36~47개월은 유치원, 24~35개월 사이는 어린이

집·유치원 둘다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으며, 48개월 이상은 둘다 안 보내겠다는 비율이 40~50% 사이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어린이집, 도시지역일수록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둘다 보내거나 둘다 안 보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어린이집, 351~600만원 사이는 유치원,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유치원에 보낸다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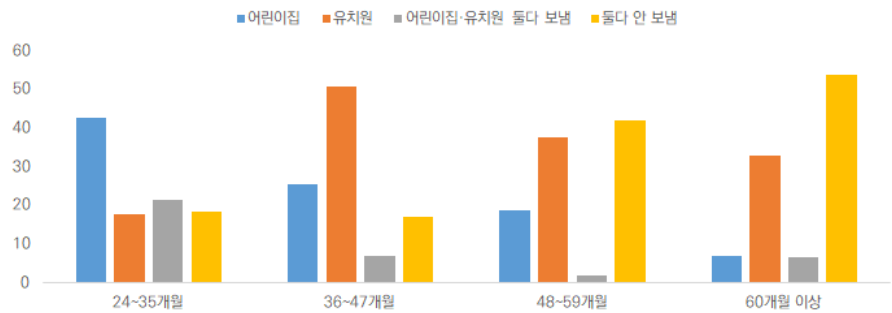
〈표 V-3-2〉 향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계획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둘다 보냄	둘다 안 보냄	계(수)	
전체	31.3	31.4	13.3	23.9	100.0(531)	
아동 월령						
24~35개월	42.7	17.6	21.3	18.4	100.0(259)	
36~47개월	25.3	50.7	6.9	17.1	100.0(162)	
48~59개월	18.8	37.5	1.8	41.9	100.0(60)	
60개월 이상	6.9	32.9	6.5	53.7	100.0(50)	
$X^2(df)/F$			120.4(9)***			
지역규모						
대도시	25.4	32.4	13.9	28.2	100.0(250)	
중소도시	33.7	32.6	13.4	20.4	100.0(229)	
읍면지역	49.6	21.0	10.2	19.1	100.0(52)	
$X^2(df)$			15.0(6)*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45.6	13.1	16.2	25.1	100.0(25)	
251~350만원	36.1	23.5	17.4	23.0	100.0(95)	
351~500만원	34.0	36.9	11.1	18.1	100.0(194)	
501~600만원	19.7	34.8	11.1	34.4	100.0(80)	
601만원 이상	28.5	30.5	14.4	26.6	100.0(137)	
$X^2(df)$			23.3(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2	25.4	14.2	33.2	100.0(255)	
외벌이	35.2	36.9	12.5	15.4	100.0(276)	
$X^2(df)$			25.9(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01$

[그림 V-3-1] 아동 월령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계획



자료: <표 V-3-2>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나) 향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둘다 보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언제쯤 이들 기관에 자녀를 보낼 계획인지 추가로 물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답한 경우, 자녀 월령이 36개월 미만인 4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6~48개월 미만 38.7%, 48개월 이상 20.1% 순이었다. 향후 이용시기는 평균 39.5개월이었다.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향후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유의하게 빨랐다.

<표 V-3-3> 향후 어린이집 이용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수)
	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평균	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평균	
전체	41.2	38.7	20.1	39.5	38.3	35.5	26.2	53.7	100.0(237)
아동 월령									
24~35개월	58.8	39.3	1.8	34.3	50.3	37.7	12.0	49.7	100.0(101)
36~47개월	-	50.9	49.1	47.7	43.0	41.4	15.6	51.2	100.0(94)
48~59개월	-	-	100.0	60.0	-	31.8	68.2	61.6	100.0(23)
60개월 이상	-	-	100.0	67.8	-	-	100.0	77.0	100.0(20)
X ² (df)/F		-		270.4***		98.3(6)***		62.3***	
지역규모									
대도시	38.5	40.5	21.0	39.1	34.0	34.0	31.9	55.6	100.0(98)
중소도시	40.9	36.8	22.3	40.5	42.7	38.0	19.3	51.5	100.0(108)
읍면지역	50.5	39.9	9.6	37.5	40.3	29.3	30.4	54.7	100.0(31)
X ² (df)/F		3.1(4)		1.2			5.3(4)	3.4*	

(표 V-3-3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수)
	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평균	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9.8	25.7	34.5	42.0	50.1	49.9	-	45.8	100.0(16)
251~350만원	43.7	34.9	21.5	41.3	36.1	48.6	15.3	51.8	100.0(51)
351~500만원	32.5	45.7	21.7	40.2	47.5	21.7	30.7	53.3	100.0(87)
501~600만원	65.1	32.0	3.0	34.1	33.0	30.2	36.8	57.9	100.0(25)
601만원 이상	42.2	38.0	19.8	38.5	27.5	49.4	23.1	54.0	100.0(59)
$X^2(df)/F$		11.9(8)		2.8*		-		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0	30.4	18.6	37.9	33.6	40.1	26.3	54.7	100.0(106)
외벌이	33.3	45.4	21.3	40.8	41.8	32.1	26.1	53.0	100.0(132)
$X^2(df)/F$		8.1(2)*		-2.2*		1.9(2)		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한편, 유치원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53.7개월로 어린이집 이용시기보다 늦었다. 48개월 미만인 38.3%, 48~60개월 35.5%, 60개월 이상 26.2%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어릴수록, 대도시이거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향후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시기가 늦었다.

다) 어린이집·유치원 보내는 이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추가로 물었다.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 보내겠다는 응답이 52.1%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16.8%는 부모 모두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져서, 13.6%는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 특성별로도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아동 월령이 적을수록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60개월 이상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19.6%로 높았다. 또한 읍면지역일수록,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부모 모두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져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외벌이 부모는 양육 부담 경감을 많이 꼽았다.

〈표 V-3-4〉 향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부모 모두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서	모 미취업 상태이나 다른 일로 바쁨	양육 부담 경감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의 성장 발달 위해	주위에 놀이 상대 없음	초등 학교 준비	기타	계(수)
전체	16.8	2.1	13.6	1.5	52.1	6.5	6.0	1.3	100.0(404)
아동 월령									
24~35개월	20.8	1.9	13.9	1.6	48.0	6.9	5.3	1.7	100.0(211)
36~47개월	10.6	2.4	16.2	1.5	55.9	7.3	6.1	-	100.0(135)
48~59개월	11.6	-	8.8	1.7	66.0	4.9	1.5	5.5	100.0(35)
60개월 이상	24.9	4.7	3.7	-	47.1	-	19.6	-	100.0(23)
지역규모									
대도시	15.1	2.4	11.1	1.7	52.5	8.2	6.4	2.6	100.0(180)
중소도시	18.0	1.0	16.9	0.7	53.7	3.8	5.9	-	100.0(182)
읍면지역	19.3	5.2	10.2	4.0	43.4	10.9	5.0	1.9	100.0(42)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7.5	5.1	8.7	2.0	66.3	1.5	3.1	5.9	100.0(19)
251~350만원	16.3	2.3	10.3	1.9	50.8	8.4	9.3	0.6	100.0(73)
351~500만원	15.1	3.0	18.0	0.7	51.4	6.3	4.1	1.4	100.0(159)
501~600만원	11.8	1.9	12.4	2.3	51.6	6.7	13.3	-	100.0(53)
601만원 이상	24.4	-	10.7	1.9	51.7	6.1	3.5	1.6	100.0(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1	1.5	9.6	0.7	44.7	4.0	6.9	1.5	100.0(170)
외벌이	6.4	2.5	16.6	2.1	57.6	8.3	5.4	1.2	100.0(2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라) 향후 사교육기관 이용 계획

〈표 V-3-5〉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 외에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사교육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조사대상 아동 중 16.6%가 이용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없었다. 아동 월령이 48개월 이상 구간이거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맞벌이인 가구인 경우 자녀를 유치원 형태의 사교육기관에 보낼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대부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유치원 형태의 사교육 기관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는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없어서 국가수준의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표 V-3-5〉 향후 사교육 기관(유치원 형태)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6.6	83.4	100.0(127)				
아동 월령				가구소득			
24~35개월	7.6	92.4	100.0(48)	250만원 이하	-	100.0	100.0(6)
36~47개월	7.3	92.7	100.0(28)	251~350만원	25.6	74.4	100.0(22)
48~59개월	31.1	68.9	100.0(25)	351~500만원	11.3	88.7	100.0(35)
60개월 이상	28.7	71.3	100.0(27)	501~600만원	11.5	88.5	100.0(28)
X ² (df)/F	-			601만원 이상	22.9	77.1	100.0(36)
지역규모				X2(df)	-		
대도시	22.3	77.7	100.0(71)	맞벌이 여부			
중소도시	7.9	92.1	100.0(47)	맞벌이	17.9	82.1	100.0(85)
읍면지역	16.6	83.4	100.0(10)	외벌이	14.0	86.0	100.0(43)
X ² (df)	4.0(2)			X2(df)	0.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나.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아동의 기관 이용 현황

1) 이용 기관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어린이집만 이용한 아동이 82.4%로 다수이고, 어린이집·유치원 둘다 이용은 13.5%, 유치원만 이용은 4.1% 정도이었다.

〈표 V-3-6〉 이용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만 이용	유치원만 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둘 다 이용	계(수)
전체	82.4	4.1	13.5	100.0(1,764)
아동 월령				
24~35개월	100.0	-	-	100.0(280)
36~47개월	98.8	0.3	0.9	100.0(502)
48~59개월	81.8	1.7	16.4	100.0(346)
60개월 이상	62.0	10.3	27.7	100.0(636)
X ² (df)/F		344.8(6)***		
지역규모				
대도시	82.4	4.2	13.4	100.0(895)
중소도시	82.3	4.1	13.5	100.0(714)
읍면지역	82.6	3.8	13.6	100.0(155)
X ² (df)		0.1(4)		

(표 V-3-6 계속)

구분	어린이집만 이용	유치원만 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둘 다 이용	계(수)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86.1	0.9	13.0	100.0(67)
251~350만원	88.1	3.8	8.1	100.0(272)
351~500만원	82.7	3.8	13.4	100.0(474)
501~600만원	80.0	6.0	13.9	100.0(294)
601만원 이상	80.4	4.0	15.6	100.0(657)
$\chi^2(df)$		13.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6	4.1	13.3	100.0(1,086)
외벌이	82.0	4.2	13.8	100.0(678)
$\chi^2(df)$		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01$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낮을수록 어린이집만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아동 월령이 높을수록 유치원만 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 다 이용 경험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집, 가구소득 251만원 이상 구간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 다 이용 경험이라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가)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동이 이용한 어린이집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 중 절반 가까이 되는 48.0%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녔고, 37.3%는 국공립어린이집, 28.3%는 가정어린이집, 5% 내외는 나머지 유형을 이용하였다. 제 특성별로 보면, 도시지역일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했다는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또는 맞벌이 가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외벌이 가구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3-7〉 이용 어린이집 유형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법인단체	직장	협동	(수)
전체	37.3	5.0	48.0	28.3	2.1	4.9	0.5	(1,691)
아동 월령								
24~35개월	31.5	5.2	40.9	32.0	0.9	4.6	-	(280)
36~47개월	35.3	3.6	44.4	32.3	1.6	4.2	-	(500)
48~59개월	37.2	5.5	52.3	26.2	2.6	5.5	-	(340)
60개월 이상	41.8	5.9	52.0	24.2	3.0	5.4	1.3	(571)
지역규모								
대도시	47.3	4.8	38.0	23.9	2.1	6.4	0.6	(858)
중소도시	27.2	3.7	59.2	33.4	1.9	2.6	0.4	(684)
읍면지역	25.9	11.9	53.7	29.9	3.5	6.9	-	(149)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44.1	8.1	40.7	18.5	2.0	4.4	-	(67)
251~350만원	33.6	6.2	52.9	24.9	2.3	2.3	-	(261)
351~500만원	35.1	6.4	53.2	24.3	2.1	2.6	0.6	(456)
501~600만원	36.7	5.7	49.6	29.8	0.8	4.4	-	(276)
601만원 이상	39.8	2.9	42.2	33.0	2.8	8.0	0.8	(6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0	4.3	44.9	30.3	2.5	6.3	0.5	(1,041)
외벌이	37.7	6.2	53.0	25.1	1.6	2.7	0.4	(650)

주: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표 V-3-8〉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이 이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본 것이다.

〈표 V-3-8〉 어린이집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생업(취업, 자영업) 등으로 직접 양육 어려움	모 미취업 상태이나 다른 일로 바쁨	양육 부담 경감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	아동 발달 위한 교육 위해	주위에 함께 놀 상대 없음	기타	계(수)
전체	47.4	2.5	16.0	3.4	26.9	2.1	1.6	100.0(1,691)
아동 월령								
24~35개월	45.4	3.6	18.1	2.2	23.2	3.9	3.5	100.0(280)
36~47개월	51.1	2.2	15.6	3.4	24.7	1.9	1.1	100.0(500)
48~59개월	44.1	4.1	16.0	3.8	28.7	2.5	0.7	100.0(340)
60개월 이상	47.2	1.3	15.2	3.7	29.7	1.2	1.7	100.0(571)
$\chi^2(df)$				32.6(18)*				

(표 V-3-8 계속)

구분	생업(취업, 자영업) 등으로 직접 양육 어려움	모 미취업 상태이나 다른 일로 바쁨	양육 부담 경감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	아동 발달 위한 교육 위해	주위에 함께 놀 상대 없음	기타	계(수)
전체	47.4	2.5	16.0	3.4	26.9	2.1	1.6	100.0(1,691)
아동 월령								
24~35개월	45.4	3.6	18.1	2.2	23.2	3.9	3.5	100.0(280)
36~47개월	51.1	2.2	15.6	3.4	24.7	1.9	1.1	100.0(500)
48~59개월	44.1	4.1	16.0	3.8	28.7	2.5	0.7	100.0(340)
60개월 이상	47.2	1.3	15.2	3.7	29.7	1.2	1.7	100.0(571)
$\chi^2(df)$			32.6(18)*					
지역규모								
대도시	47.4	2.7	18.6	3.8	24.1	1.6	1.9	100.0(858)
중소도시	47.0	2.7	13.8	2.1	30.6	2.6	1.3	100.0(684)
읍면지역	50.0	1.1	10.8	7.0	26.5	3.2	1.3	100.0(149)
$\chi^2(df)$			28.5(12)**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7.1	1.8	22.9	5.4	38.4	1.0	3.4	100.0(67)
251~350만원	30.3	1.0	20.0	6.5	35.7	3.9	2.6	100.0(261)
351~500만원	31.6	4.0	19.9	3.9	35.0	3.6	2.0	100.0(456)
501~600만원	49.4	1.9	16.4	3.9	26.7	1.1	0.6	100.0(276)
601만원 이상	67.3	2.5	10.5	1.3	16.4	0.8	1.2	100.0(631)
$\chi^2(df)$			211.7(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6	2.8	9.8	1.7	18.2	1.1	0.8	100.0(1,041)
외벌이	18.3	2.1	25.9	6.0	40.9	3.8	3.0	100.0(650)
$\chi^2(df)$			379.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응답자의 47.4%가 생업(취업, 자영업) 등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이용했다고 답하였고, 아동발달을 위한 교육 위해서가 26.9%, 양육부담 경감 16.0%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아동 월령이 24~35개월이거나 도시지역일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3-9〉는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기간을 알아본 것이다. 12~24개월 이용했다는 비율이 31.0%로 많고, 다음으로 24~36개월이 27.3%, 36개월 이상이 20.5%, 12개월 미만 21.2% 순이고, 이용기간은 평균 23.1개월로 2년 정도이었다.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한 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표 V-3-9〉 어린이집 이용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1.2	31.0	27.3	20.5	100.0(1,691)	23.1
아동 월령						
24~35개월	56.1	38.7	5.1	-	100.0(280)	10.9
36~47개월	23.2	41.0	32.2	3.7	100.0(500)	18.9
48~59개월	7.8	35.5	36.5	20.1	100.0(340)	25.4
60개월 이상	10.3	15.7	28.4	45.6	100.0(571)	31.5
$X^2(df)/F$		656.5(9)***				224.2***
지역규모						
대도시	18.1	27.2	31.6	23.1	100.0(858)	24.7
중소도시	24.1	34.7	22.5	18.7	100.0(684)	21.8
읍면지역	25.8	35.3	25.0	13.9	100.0(149)	20.5
$X^2(df)/F$		35.1(6)***				11.6***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8.5	22.0	26.6	22.9	100.0(67)	22.6
251~350만원	25.3	35.5	22.5	16.7	100.0(261)	21.2
351~500만원	22.7	33.6	21.7	22.1	100.0(456)	22.8
501~600만원	20.7	26.3	35.1	18.0	100.0(276)	23.6
601만원 이상	17.8	30.2	30.1	21.9	100.0(631)	24.1
$X^2(df)/F$		33.2(12)**				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9	30.7	28.6	22.8	100.0(1,041)	24.3
외벌이	26.5	31.4	25.3	16.9	100.0(650)	21.2
$X^2(df)/F$		22.1(3)***				4.5***

주: 어린이집 이용기간은 어린이집 이용 종료시점에서 시작시점을 제한 기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유치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이 유치원에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자녀가 이용한 유치원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립유치원이 68.0%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립유치원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아동 월령별로 또는 도시지역일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 부모 자녀일수록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을 이전에 다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3-10〉 이용 유치원 유형

단위: %(명)

구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수)	구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수)
전체	35.1	68.0	(311)	가구소득			
아동 월령				250만원 이하	50.8	54.4	(9)
24~35개월	-	-	-	251~350만원	62.4	44.8	(32)
36~47개월	37.1	62.9	(6)	351~500만원	48.2	53.7	(82)
48~59개월	31.6	70.3	(63)	501~600만원	39.3	66.1	(59)
60개월 이상	35.9	67.5	(242)	601만원 이상	16.8	84.8	(129)
지역규모				맞벌이 여부			
대도시	32.8	69.9	(158)	맞벌이	26.7	75.3	(189)
중소도시	32.2	70.6	(126)	외벌이	48.0	56.8	(122)
읍면지역	61.8	44.9	(27)				

주: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표 V-3-11〉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생업(취업, 자영업) 등으로 직접 양육 어려움	모 미취업 상태이나 다른 일로 바쁨	양육 부담 경감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	아동 발달 위한 교육 위해	주위에 함께 놀 상대 없음	기타	계(수)
전체	34.0	2.6	11.2	6.4	43.4	2.1	0.2	100.0(311)
아동 월령								
24~35개월	-	-	-	-	-	-	-	-
36~47개월	30.2	-	44.5	-	25.3	-	-	100.0(6)
48~59개월	26.3	6.1	7.6	3.3	48.9	6.9	0.9	100.0(63)
60개월 이상	36.1	1.8	11.3	7.4	42.5	0.9	-	100.0(242)
지역규모								
대도시	32.8	2.2	13.2	8.6	39.8	3.1	0.4	100.0(158)
중소도시	37.4	3.1	10.6	4.5	43.9	0.5	-	100.0(126)
읍면지역	26.0	2.7	1.9	2.9	62.5	4.1	-	100.0(2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0.7	-	15.5	-	53.7	-	-	100.0(9)
251~350만원	18.4	-	16.5	29.7	28.2	7.2	-	100.0(32)
351~500만원	18.4	1.9	13.3	7.7	52.8	5.1	0.7	100.0(82)
501~600만원	23.4	0.7	12.6	2.6	60.7	-	-	100.0(59)
601만원 이상	53.0	4.8	7.5	2.0	32.7	-	-	100.0(129)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7	3.6	9.1	2.6	30.9	0.8	0.3	100.0(189)
외벌이	5.3	1.0	14.4	12.4	62.8	4.0	-	100.0(1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표 V-3-11〉은 유치원에 다닌 이유를 추가로 조사한 것이다. 아동발달을 위한 교육이 43.4%로 다빈도이고, 다음으로 생업(취업, 자영업) 등으로 직접 양육 어려

움이 34.0%, 양육부담 경감 11.2%,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이 6.4% 정도를 차지하였다.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48개월 이상이거나 읍면지역일수록 아동발달을 위한 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다녔다는 비율이 높지만, 도시지역일수록 양육 부담 경감이나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으로 유치원을 다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은 이전에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12개월 미만인 50.8%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12~24개월 미만은 32.9%, 24개월 이상은 16.4%이었고, 이용시간은 평균 13.5개월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유치원 이용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표 V-3-12〉 유치원 이용 기간(종료시점 - 시작시점)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계(수)	평균
전체	50.8	32.9	16.4	100.0(311)	13.5
아동 월령					
24~35개월	-	-	-	-	-
36~47개월	100.0	-	-	100.0(6)	4.4
48~59개월	88.1	11.0	0.9	100.0(63)	6.7
60개월 이상	39.8	39.4	20.8	100.0(242)	15.5
$X^2(df)/F$		-			35.8***
지역규모					
대도시	50.7	30.7	18.6	100.0(158)	13.8
중소도시	50.8	35.5	13.7	100.0(126)	13.2
읍면지역	51.1	33.3	15.6	100.0(27)	13.7
$X^2(df)/F$		1.7(4)			0.1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42.7	24.0	33.3	100.0(9)	15.5
251~350만원	51.7	30.4	17.9	100.0(32)	13.7
351~500만원	57.2	29.5	13.3	100.0(82)	11.8
501~600만원	48.0	33.6	18.5	100.0(59)	14.4
601만원 이상	48.3	36.0	15.7	100.0(129)	14.1
$X^2(df)/F$		-			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3	30.1	15.7	100.0(189)	13.1
외벌이	45.3	37.2	17.4	100.0(122)	14.2
$X^2(df)/F$		2.5(2)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01$

4. 사교육 기관 이용

가. 이용 현황

1) 최초 이용 시기

학원, 방문과외, 학습지 등의 교육서비스를 최초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 월령이 평균 42.1개월부터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60개월 이상이 27.1%로 다수를 차지하고, 24개월 미만과 36~48개월 미만 사이가 각각 20.8%, 20.5%, 나머지는 15% 내외 수준이었다.

〈표 V-4-1〉 학원, 방문과외,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0.8	14.4	20.5	17.3	27.1	100.0(925)	42.1
아동 월령							
24~35개월	69.2	30.4	0.4	-	-	100.0(126)	18.8
36~47개월	25.4	27.0	46.8	0.8	-	100.0(170)	29.6
48~59개월	11.8	11.0	29.8	38.9	8.5	100.0(195)	42.1
60개월 이상	9.0	6.2	11.8	19.0	54.1	100.0(433)	53.8
$\chi^2(df)/F$			675.0(12)***				211.3***
지역규모							
대도시	21.3	14.0	22.9	16.0	25.9	100.0(499)	41.3
중소도시	20.2	15.0	17.9	18.5	28.4	100.0(362)	42.9
읍면지역	20.2	13.4	16.5	20.4	29.6	100.0(65)	43.9
$\chi^2(df)/F$			4.8(8)				1.0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7.5	13.3	14.8	1.8	32.6	100.0(24)	37.6
251~350만원	15.6	16.2	15.2	17.0	35.9	100.0(134)	45.9
351~500만원	27.2	14.3	16.9	15.3	26.3	100.0(230)	40.2
501~600만원	17.4	12.8	12.7	21.2	35.9	100.0(149)	46.4
601만원 이상	19.0	14.4	27.8	18.0	20.8	100.0(388)	40.6
$\chi^2(df)/F$			50.0(16)***				4.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7	15.3	23.0	17.7	25.3	100.0(582)	42.0
외벌이	24.4	12.8	16.1	16.6	30.1	100.0(343)	42.3
$\chi^2(df)/F$			11.5(4)*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제 특성별로는 아동 월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 월령이 어릴수록,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구간에서 사교육 시작 시기가 유의미하게 빨랐다.

2) 정보취득 경로

학원, 방문과의, 학습지 등 사교육 서비스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알아본 결과, 맘카페 및 블로그가 30.1%로 가장 많고, 친구 또는 지인 29.9%, 학원, 학습지 광고 20.8% 순이었다. 나머지는 5% 내외 수준이었다.

〈표 V-4-2〉 학원, 방문과의, 학습지 관련 정보 습득처

단위: %(명)

구분	학원, 학습지 광고	맘카페 및 블로그	SNS 이용 후기	친구 또는 지인	이웃 주민	형제 자매	기타	계(수)
전체	20.8	30.1	4.5	29.9	5.2	5.7	3.8	100.0(925)
아동 월령								
24~35개월	8.8	40.4	7.8	27.9	3.9	3.7	7.5	100.0(126)
36~47개월	20.1	38.1	2.9	25.8	3.3	5.3	4.5	100.0(170)
48~59개월	31.0	25.4	4.0	29.2	2.7	3.6	4.1	100.0(195)
60개월 이상	20.0	26.2	4.3	32.5	7.4	7.4	2.2	100.0(433)
X ² (df)			56.1(18)***					
지역규모								
대도시	21.1	30.1	3.9	29.7	5.3	5.4	4.5	100.0(499)
중소도시	20.0	30.1	5.4	28.8	5.7	6.8	3.2	100.0(362)
읍면지역	23.1	30.6	3.8	37.8	1.3	1.9	1.5	100.0(65)
X ² (df)			9.1(12)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7.3	14.4	12.6	22.7	1.5	1.9	9.5	100.0(24)
251~350만원	22.4	19.3	4.0	23.8	14.9	10.2	5.3	100.0(134)
351~500만원	19.6	30.2	4.7	31.1	3.4	6.1	4.9	100.0(230)
501~600만원	13.6	26.7	4.9	39.4	4.4	7.1	4.0	100.0(149)
601만원 이상	22.7	36.2	3.8	28.1	3.4	3.6	2.1	100.0(388)
X ² (df)			76.5(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9	33.4	4.1	28.0	4.7	4.9	3.0	100.0(582)
외벌이	18.9	24.6	5.1	33.2	5.9	7.1	5.1	100.0(343)
X ² (df)			14.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01$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어릴수록 맘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사교육기관 관련 정보를 얻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사교육 서비스 관련 정보 습

득처가 다소 상이하였다. 250만원 이하는 학원, 학습지 광고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비율이 37.3%로 가장 많고, 가구소득 251만원~600만원 이하 구간은 친구 또는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601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맘 카페 및 블로그가 36.2%로 가장 많았다.

3) 이용 서비스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육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 중 52.8%는 학습지(방문형, 비방문형), 37%는 문화센터, 27.6%는 시간제 학원, 25%는 교육용 온라인콘텐츠, 17%는 교재 활용 교육 순이었다.

〈표 V-4-3〉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교육서비스

단위: %(명)

구분	문화센터	반일제 학원	시간제 학원	학습지(방문형,비방문형)	개인 및 그룹 과외	교재 활용 교육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기타	(수)
전체	37.0	8.5	27.6	52.8	9.5	17.0	25.0	4.1	(925)
아동 월령									
24~35개월	67.4	1.9	4.4	27.1	9.5	24.3	18.5	6.1	(126)
36~47개월	46.2	-	9.9	59.3	10.0	18.1	25.7	4.1	(170)
48~59개월	31.1	10.6	23.6	60.2	8.9	19.9	34.7	-	(195)
60개월 이상	27.2	12.9	43.1	54.4	9.7	13.2	22.2	5.3	(433)
지역규모									
대도시	38.1	10.0	28.2	51.6	9.5	18.5	27.2	4.0	(499)
중소도시	36.5	8.0	26.6	55.5	9.9	14.7	21.4	4.6	(362)
읍면지역	31.0	0.6	28.2	47.0	8.1	19.2	28.1	1.4	(65)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0.8	1.5	15.6	62.0	12.5	13.3	36.7	8.7	(24)
251~350만원	37.1	8.0	33.1	52.7	10.4	11.7	23.5	6.3	(134)
351~500만원	47.1	2.7	22.6	47.0	8.0	15.4	24.4	4.3	(230)
501~600만원	32.1	10.1	31.4	55.1	5.9	15.2	24.9	0.8	(149)
601만원 이상	33.2	12.1	27.9	54.9	11.4	20.7	25.1	4.1	(3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9	9.6	27.8	52.5	11.2	19.2	24.6	3.8	(582)
외벌이	42.3	6.7	27.3	53.5	6.8	13.4	25.6	4.4	(343)

주: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어릴수록 문화센터나 교재활용 교육이 많고, 아동 월령이 높을수록 반일제 학원이나 시간제 학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

한 도시지역일수록 문화센터나 반일제 학원 이용률이 높으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 자녀보다 개인 및 그룹 과외나 교재 활용 교육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이용 빈도

사교육 교육기관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1~2회가 50.8%로 가장 많고,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도 2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 3~4회도 21.5%로 높았다.

〈표 V-4-4〉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 3~4회	주 1~2회	격 주	월 1회	계(수)	X ² (df)
전체	23.8	21.5	50.8	1.5	2.4	100.0(569)	
아동 월령							
24~35개월	3.5	13.9	75.5	4.9	2.2	100.0(88)	
36~47개월	0.7	13.9	77.7	3.9	3.9	100.0(88)	-
48~59개월	25.2	15.9	57.0	0.3	1.5	100.0(108)	
60개월 이상	36.7	28.4	32.4	0.2	2.4	100.0(284)	
지역규모							
대도시	23.9	22.5	48.2	1.7	3.8	100.0(312)	
중소도시	25.0	20.0	53.0	1.2	0.8	100.0(220)	-
읍면지역	15.8	22.7	59.4	1.6	0.6	100.0(3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4.8	56.8	24.8	3.2	10.5	100.0(11)	
251~350만원	21.8	17.8	59.3	1.1	-	100.0(84)	
351~500만원	16.6	20.2	60.8	0.3	2.2	100.0(145)	-
501~600만원	26.7	22.3	46.6	2.3	2.1	100.0(92)	
601만원 이상	28.7	21.7	44.5	2.0	3.1	100.0(23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6	20.0	48.6	1.9	2.9	100.0(345)	6.6(4)
외벌이	19.4	23.9	54.1	0.9	1.7	100.0(2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 월령이 48개월 이상은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이 20~30% 대로 높고, 주 3~4회도 28.4%로 높았다. 반대로 아동 월령이 어릴수록 주 1~2회가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250만원 이하 구간에서 주 3~4회가 56.8%로 가장 많았으며, 매일 이용은 4.8%에 그쳤다. 한편, 다른 가구소득 구간들에서는 주 1~2회가 가장 많으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도 26.7%로 나타나서 사교육 서비

스 이용 빈도에서 개별 가구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이용 이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V-4-5〉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주된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의 재능과 소질 개발	초등 학교 선행 학습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남들이 다 해서	주변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부모 퇴근시간까지 자녀 돌봐 줄 사람 없음	기타	계(수)
전체	19.5	43.0	9.1	13.3	2.3	1.5	5.4	5.9	100.0(925)
아동 월령									
24~35개월	8.6	56.5	0.5	20.1	1.6	1.1	0.7	11.0	100.0(126)
36~47개월	17.3	47.1	-	17.8	1.7	3.7	2.3	10.1	100.0(170)
48~59개월	19.7	43.1	7.8	13.8	3.1	2.0	3.9	6.7	100.0(195)
60개월 이상	23.5	37.4	15.7	9.4	2.5	0.5	8.6	2.5	100.0(433)
X ² (df)				123.8(21)***					
지역규모									
대도시	18.6	44.6	8.8	13.5	3.4	1.0	5.3	5.0	100.0(499)
중소도시	22.4	40.4	9.3	11.6	1.1	2.4	5.2	7.7	100.0(362)
읍면지역	10.6	45.1	10.3	21.8	1.5	0.7	7.0	3.2	100.0(65)
X ² (df)				22.3(14)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5.4	47.2	4.8	9.4	2.2	1.8	3.5	5.8	100.0(24)
251~350만원	26.5	28.9	20.1	11.6	0.7	2.5	2.4	7.3	100.0(134)
351~500만원	23.5	37.6	9.6	14.3	2.6	0.5	1.9	10.1	100.0(230)
501~600만원	18.8	53.6	7.4	10.4	5.3	0.5	1.5	2.4	100.0(149)
601만원 이상	14.6	46.7	5.9	14.7	1.6	2.1	10.1	4.3	100.0(388)
X ² (df)				-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8	44.4	8.7	13.6	2.8	1.3	7.8	4.6	100.0(582)
외벌이	24.1	40.6	9.7	12.8	1.6	1.9	1.2	8.1	100.0(343)
X ² (df)				31.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01$

자녀의 재능과 소질 개발을 위해서가 43.0%로 가장 많고, 자녀가 원해서 19.5%,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3.3%, 초등학교 선행학습 9.1%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자녀가 원해서나 초등학교 선행학습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은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아동 월령이 어릴수록 자녀의 재능과 소질 개발 또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이유로 드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초등학교 선행 학습, 도시지역일수록 남들이 다해서라는 이유가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자녀의 재능과 소질 개발이나 부모 퇴근시간까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맞벌이 가구는 돌봄 목적으로 자녀를 사교육 기관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비용

사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월 32.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로는 11~20만원 이하가 32.7%로 가장 많았고, 31만원 이상이 26.5%, 10만원 이하는 24.5% 순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가구소득이 601만원 이상이 250만원 이하보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 자녀보다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이용 비용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V-4-6〉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이용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10만원 이하	11~20만원 이하	21~30만원 이하	31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4.5	32.7	16.3	26.5	100.0(925)	32.7
아동 월령						
24~35개월	43.8	35.1	9.2	11.9	100.0(126)	17.9
36~47개월	36.6	36.2	15.4	11.9	100.0(170)	19.7
48~59개월	25.7	31.6	20.1	22.6	100.0(195)	30.8
60개월 이상	13.5	31.1	17.1	38.3	100.0(433)	42.9
$\chi^2(df)/F$			104.7(9)***			24.1***
지역규모						
대도시	25.1	30.3	16.3	28.3	100.0(499)	35.3
중소도시	22.5	32.9	17.2	27.5	100.0(362)	31.8
읍면지역	30.0	50.3	12.2	7.5	100.0(65)	17.7
$\chi^2(df)/F$			18.8(6)**			6.0**

(표 V-4-6 계속)

구분	10만원 이하	11~20만원 이하	21~30만원 이하	31만원 이상	계(수)	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42.8	46.1	5.5	5.5	100.0(24)	15.9
251~350만원	27.7	31.3	21.7	19.3	100.0(134)	27.0
351~500만원	29.1	38.2	16.8	15.9	100.0(230)	23.8
501~600만원	26.6	27.2	19.0	27.2	100.0(149)	31.4
601만원 이상	18.6	31.2	13.8	36.3	100.0(388)	41.5
$\chi^2(df)/F$			53.9(12)***			1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6	33.0	14.6	28.8	100.0(582)	34.6
외벌이	25.8	32.2	19.3	22.7	100.0(343)	29.5
$\chi^2(df)/F$			6.2(3)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5. 자녀양육 서비스 이용

가. 정부지원 양육서비스

1)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22b: 307).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자녀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이용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84.2%로 다수이고, 현재는 이용하지 않으나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2%, 현재 이용 중인 경우는 5.6%로 소수이었다.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과거에 이용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대도시는 현재 이용 중이거나 과거 이용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높았다. 맞벌이 가구는 과거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비율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5-1〉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현재 이용 중	과거 이용, 현재 미이용	이용 경험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5.6	10.2	84.2	100.0(2,295)	
아동 월령					
24~35개월	6.1	6.8	87.1	100.0(539)	47.9(6)***
36~47개월	3.3	8.1	88.6	100.0(664)	
48~59개월	8.7	8.9	82.4	100.0(406)	
60개월 이상	5.5	15.8	78.7	100.0(686)	
지역규모					
대도시	5.5	13.1	81.4	100.0(1,146)	23.9(4)***
중소도시	5.2	7.2	87.7	100.0(943)	
읍면지역	7.6	8.2	84.2	100.0(20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8.9	7.7	83.4	100.0(92)	7.9(8)
251~350만원	4.4	11.7	83.9	100.0(367)	
351~500만원	5.3	10.4	84.3	100.0(668)	
501~600만원	4.7	8.0	87.3	100.0(374)	
601만원 이상	6.3	10.8	82.9	100.0(7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9	11.4	81.7	100.0(1,341)	17.0(2)***
외벌이	3.7	8.6	87.7	100.0(9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01$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빈도를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매일 이용이 49.1%로 가장 많고, 주3~4회 25.6%, 주 1~2회 10.9%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시간제보육을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V-5-2〉 시간제보육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 3~4회	주 1~2회	격 주	월 1회	계(수)
전체	49.1	25.6	10.9	3.9	10.4	100.0(128)
아동 월령						
24~35개월	30.2	43.8	17.7	4.8	3.6	100.0(33)
36~47개월	64.5	8.8	11.4	9.0	6.3	100.0(22)
48~59개월	51.8	14.5	3.2	3.3	27.2	100.0(35)
60개월 이상	53.8	30.1	12.1	0.9	3.1	100.0(38)

(표 V-5-2 계속)

구분	매일	주 3~4회	주 1~2회	격 주	월 1회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43.6	26.9	9.7	5.7	14.1	100.0(63)
중소도시	52.5	25.0	14.3	1.5	6.7	100.0(49)
읍면지역	60.4	22.6	5.3	4.5	7.2	100.0(16)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65.7	34.3	-	-	-	100.0(8)
251~350만원	30.1	19.9	26.1	5.0	19.0	100.0(16)
351~500만원	50.1	38.8	4.4	3.4	3.2	100.0(35)
501~600만원	46.7	13.9	12.3	8.7	18.4	100.0(18)
601만원 이상	52.5	21.0	12.0	3.0	11.6	100.0(5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5	19.0	10.9	4.9	10.7	100.0(92)
외벌이	34.9	43.1	11.1	1.3	9.6	100.0(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표 V-5-3〉 시간제보육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10천원 미만	10~100천원 미만	100~300천원 미만	300~400천원 미만	400천원 이상	계(수)	평균	t/F
전체	24.7	16.2	25.3	11.8	22.1	100.0(128)	246.7	
아동 월령								
24~35개월	14.3	29.7	21.1	6.8	28.2	100.0(33)	253.8	0.6
36~47개월	17.8	29.5	21.5	24.7	6.5	100.0(22)	165.8	
48~59개월	26.8	1.5	32.6	12.3	26.8	100.0(35)	237.3	
60개월 이상	35.7	10.5	24.4	8.0	21.4	100.0(38)	296.2	
지역규모								
대도시	24.8	13.0	39.9	5.6	16.7	100.0(63)	232.7	0.3
중소도시	20.7	20.6	12.4	15.8	30.5	100.0(49)	277.2	
읍면지역	36.6	15.5	7.1	23.7	17.2	100.0(16)	207.5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2.3	-	44.2	4.9	18.6	100.0(8)	161.0	1.9
251~350만원	29.0	26.1	30.4	3.1	11.5	100.0(16)	133.8	
351~500만원	22.6	11.0	12.9	18.9	34.7	100.0(35)	369.9	
501~600만원	36.2	25.6	9.2	20.2	8.8	100.0(18)	158.0	
601만원 이상	19.5	16.0	34.9	7.7	21.9	100.0(50)	24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4	14.7	27.1	12.8	24.0	100.0(92)	275.0	1.5
외벌이	33.4	20.1	20.5	9.0	17.0	100.0(35)	17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현재 시간제보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매달 내는 시간제보육 보육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간제보육 이용 비용은 월평균 24만 6,700원으로, 구간별로는

100~300천원 미만인 2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천원 이하가 24.7%도 있었다. 제 특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맞벌이 가구가 월 27만 5천원, 외벌이 가구가 월 17만 2,600원으로 매월 내는 비율이 많았다.

시간제보육 이용으로 매월 내는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32.6%가 부담, 13.2%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하여서 45.8%가 부담된다고 답하였고, 부담 정도는 4점 만점에 2.3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시간제보육 보육료 부담 정도가 지역규모와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이거나 가구소득이 601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서 시간제보육 보육료에 대한 부담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 V-5-4〉 시간제보육 보육료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부담	매우 부담	계(수)	평균
전체	26.0	28.3	32.6	13.2	100.0(128)	2.3
아동 월령						
24~35개월	20.3	35.5	41.1	3.2	100.0(33)	2.3
36~47개월	43.3	22.7	23.6	10.5	100.0(22)	2.0
48~59개월	15.9	27.9	29.4	26.8	100.0(35)	2.7
60개월 이상	30.2	25.7	33.5	10.6	100.0(38)	2.2
$X^2(df)/F$			-			2.3
지역규모						
대도시	31.3	21.5	33.2	14.0	100.0(63)	2.3
중소도시	15.2	32.7	35.8	16.3	100.0(49)	2.5
읍면지역	38.1	41.6	20.3	-	100.0(16)	1.8
$X^2(df)/F$			-			3.1*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1.3	26.5	47.3	4.9	100.0(8)	2.4
251~350만원	41.5	43.2	15.3	-	100.0(16)	1.7
351~500만원	30.9	35.4	30.0	3.6	100.0(35)	2.1
501~600만원	24.5	28.6	35.1	11.9	100.0(18)	2.3
601만원 이상	18.8	18.7	36.7	25.9	100.0(50)	2.7
$X^2(df)/F$			-			4.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8	26.4	33.0	17.7	100.0(92)	2.5
외벌이	34.3	33.1	31.4	1.1	100.0(35)	2.0
$X^2(df)/F$			8.0(3)*			2.6*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1$

2)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보호자 대상으로 양육정보 제공, 교육, 상담 등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499).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2.7%로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 서비스를 살펴보면, 장난감 대여 서비스가 41.2%로 많고, 다음으로 도서 대여 23.9%, 부모교육 14.8%, 부모자녀 프로그램 14.5%, 양육상담 4.4% 순이었다.

〈표 V-5-5〉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양육상담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교육	기타	이용경험 없음	(수)
전체	41.2	23.9	4.4	14.5	14.8	1.8	42.7	(2,295)
아동 월령								
24~35개월	33.8	19.0	3.6	11.7	11.1	3.0	52.2	(539)
36~47개월	39.7	21.0	4.1	11.3	16.9	1.9	43.7	(664)
48~59개월	41.3	21.5	3.3	16.8	13.0	1.9	42.5	(406)
60개월 이상	48.5	32.1	6.0	18.5	16.9	0.8	34.4	(686)
지역규모								
대도시	40.6	23.9	5.1	14.5	16.6	2.5	41.1	(1,146)
중소도시	41.9	24.0	3.4	14.4	12.9	1.0	44.5	(943)
읍면지역	41.4	23.8	5.2	15.4	14.1	1.6	42.9	(20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46.1	19.6	8.2	19.0	18.0	1.5	38.4	(92)
251~350만원	43.5	21.1	2.6	19.8	14.2	1.9	43.4	(367)
351~500만원	39.9	23.0	6.2	15.3	13.3	2.2	43.6	(668)
501~600만원	44.4	23.1	2.0	11.7	13.5	0.7	40.9	(374)
601만원 이상	39.2	27.0	4.4	12.2	16.7	2.0	42.9	(7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8	24.0	4.2	13.4	14.9	1.7	42.4	(1,341)
외벌이	40.4	23.9	4.7	16.0	14.8	2.0	43.1	(954)

주: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제 특성별로는 아동 월령이 높을수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용 서비스로는 장난감 대여나 도서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을 이용

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서대여,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자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부모자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부모자녀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나. 개인양육서비스

1) 주 양육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을 낮 시간대에 주로 돌보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모가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82.7%로 높고, 다음으로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인이 돌보는 경우가 23.5%, 비혈연인은 3.0%로 소수이었다.

〈표 V-5-6〉 낮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양육자

단위: %(명)

구분	부모	혈연인 (친외조부모, 친인척 등)	비혈연인(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파출부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모 등)	(수)
전체	82.7	23.5	3.0	(2,295)
아동 월령				
24~35개월	83.5	22.8	2.3	(539)
36~47개월	82.7	24.5	2.2	(664)
48~59개월	81.4	23.4	5.1	(406)
60개월 이상	82.7	23.1	2.9	(686)
지역규모				
대도시	80.9	25.0	2.5	(1,146)
중소도시	84.1	22.2	3.6	(943)
읍면지역	85.6	21.2	3.0	(20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91.9	16.2	1.4	(92)
251~350만원	93.0	10.1	2.0	(367)
351~500만원	94.6	11.9	1.4	(668)
501~600만원	80.4	24.4	1.6	(374)
601만원 이상	67.8	39.9	5.6	(7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3.0	35.1	4.4	(1,341)
외벌이	96.3	7.1	1.0	(95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제 특성별로 보면, 아동 월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읍면지역일 수록 부모, 도시지역일수록 혈연인이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250만원 이하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많을 수록 혈연인이 돌본다는 비율이 높았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는 부모, 맞벌이는 혈연인이나 비혈연이 돌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의 주 양육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비동거 외조부모가 44.4%로 가장 많고, 비동거 친조부모가 27.0%, 동거 외조부모가 16.2%, 동거 친조부모가 8.7% 순으로 주로 조부모가 돌보았다. 제 특성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읍면지역일 수록 비동거 친조부모, 도시지역일수록 비동거 외조부모인 경우가 많았다.

〈표 V-5-7〉 주 양육자: 가족 및 친인척

단위: %(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X ² (df)
전체	8.7	16.2	27.0	44.4	1.0	2.6	100.0(539)	
아동 월령								
24~35개월	8.5	16.2	26.5	46.3	1.5	1.0	100.0(123)	
36~47개월	7.3	15.9	29.2	43.6	-	4.1	100.0(163)	-
48~59개월	11.9	8.7	27.6	51.3	0.4	-	100.0(95)	
60개월 이상	8.4	21.1	24.8	39.6	2.1	3.9	100.0(159)	
지역규모								
대도시	10.5	14.5	20.0	51.1	0.1	3.9	100.0(286)	
중소도시	5.9	20.0	34.0	37.0	2.3	0.8	100.0(210)	-
읍면지역	10.6	9.5	39.3	36.5	0.9	3.3	100.0(44)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7	40.5	10.1	20.9	22.6	3.2	100.0(15)	
251~350만원	6.8	18.6	39.3	33.9	-	1.4	100.0(37)	
351~500만원	17.2	16.1	36.0	30.2	0.5	-	100.0(79)	-
501~600만원	6.0	9.2	32.6	45.5	-	6.7	100.0(91)	
601만원 이상	7.9	16.9	22.5	50.0	0.6	2.2	100.0(3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	15.4	26.1	46.9	0.6	2.9	100.0(471)	16.6(5)**
외벌이	12.5	22.2	33.3	27.3	3.9	0.8	100.0(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1$

주 양육자가 비혈연인인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가 58.9%로 가장 많고, 베이비시터가 27.5%. 동거 비혈연인이나 파출부 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보

등은 각각 3% 대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아이돌보미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높았다. 대도시는 베이비시터가 39.3%로 민간 돌봄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벌이 가구에서 아이돌보미 이용이 73.5%로 맞벌이 가구 56.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에서는 32.0%가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표 V-5-8〉 주 양육자: 비혈연인

단위: %(명)

구분	동거 비혈연인 (주5일 이상)	아이 돌보미	베이비시터	파출부· 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모	기타	계(수)
전체	3.1	58.9	27.5	3.7	3.2	3.6	100.0(68)
아동 월령							
24~35개월	3.8	50.5	38.6	-	7.1	-	100.0(13)
36~47개월	-	47.8	40.8	-	7.4	4.0	100.0(15)
48~59개월	2.9	46.8	38.2	12.1	-	-	100.0(21)
60개월 이상	5.0	84.6	-	-	1.1	9.4	100.0(20)
지역규모							
대도시	3.8	40.7	39.3	8.9	5.2	2.1	100.0(28)
중소도시	2.1	69.7	22.6	-	-	5.6	100.0(34)
읍면지역	5.1	83.3	-	-	11.5	-	100.0(6)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	100.0	-	-	-	-	100.0(1)
251~350만원	-	61.2	4.6	34.2	-	-	100.0(7)
351~500만원	5.0	89.0	-	-	6.0	-	100.0(10)
501~600만원	10.3	62.3	-	-	3.7	23.8	100.0(6)
601만원 이상	2.3	50.4	41.7	-	3.2	2.4	100.0(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	56.5	32.0	-	3.7	4.2	100.0(59)
외벌이	-	73.5	-	26.5	-	-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2) 이용 이유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관 적응에 대한 우려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비용 부담 12.5%, 기타 12.2%, 이용 희망 기관 대기자가 많다 11.4%,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불안 10.7%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도시지역일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V-5-9〉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기관 적응에 대한 우려	비용 부담	원하 는 시간 이용 어려 움	매일 데리 고 다니 기 번거 로움	한 사 람이 여러 아이 돌봄 불안	시설 환경 열악	이용 희망 기관 대기 자 많음	주변 에 마땅 한 기관 없음	기관 프로 그램 마음 에 안 들	기타	계(수)
전체	27.1	12.5	9.8	2.4	10.7	1.5	11.4	7.7	4.6	12.2	100.0(599)
아동 월령											
24~35개월	41.2	8.8	9.8	3.4	14.0	2.5	9.7	2.0	-	8.7	100.0(133)
36~47개월	28.5	13.9	7.8	1.9	8.3	1.5	13.7	9.3	-	15.0	100.0(176)
48~59개월	22.5	12.4	6.9	0.8	8.0	-	13.4	12.9	6.7	16.5	100.0(115)
60개월 이상	18.0	14.1	13.9	3.3	12.6	1.8	8.9	6.9	11.2	9.2	100.0(175)
$\chi^2(df)$						-					
지역규모											
대도시	22.0	9.5	11.4	2.4	13.2	1.1	14.9	7.2	4.9	13.5	100.0(313)
중소도시	31.4	16.9	7.7	2.2	7.8	2.3	8.0	8.7	5.0	9.9	100.0(238)
읍면지역	39.1	11.1	10.1	4.0	9.1	0.9	4.5	5.9	-	15.3	100.0(48)
$\chi^2(df)$						-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47.1	5.8	3.3	-	12.1	-	21.5	3.1	-	7.1	100.0(15)
251~350만원	22.7	18.7	8.2	2.8	8.1	-	14.6	6.4	5.7	12.6	100.0(44)
351~500만원	30.9	16.5	5.8	2.1	9.2	-	13.1	1.3	7.5	13.5	100.0(85)
501~600만원	24.0	13.6	5.8	2.2	11.3	1.6	12.8	13.2	1.4	14.1	100.0(97)
601만원 이상	26.7	10.9	12.4	2.6	11.2	2.1	9.7	8.0	4.8	11.5	100.0(358)
$\chi^2(df)$						-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5	11.1	10.0	2.4	11.3	1.7	10.9	7.7	5.0	12.4	100.0(525)
외벌이	24.1	23.1	8.7	2.4	7.1	-	14.4	7.8	1.6	10.8	100.0(74)
$\chi^2(df)$						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3) 이용 주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가 주당 몇 회 돌보는지 알아본 결과, 혈연인이 돌보는 경우는 주당 평균 4.8일로 주5일, 주6일 돌본다는 비율을 합산하면 71.6%로 높았다. 부모의 근로일 중에는 거의 매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제 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가 주당 평균 4.9일, 외벌이 가구 평균 4.3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비혈연인은 주당 평균 3.8일이고, 주5일 이상 돌본다는 비율이 55.1%로

높고, 2일 이하가 33.4%, 3~4일 11.5%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지역일수록 비혈연인이 돌보는 횟수가 많았다.

〈표 V-5-10〉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주당 돌봄 횟수

단위: %(명), 일

구분	혈연						비혈연				
	2일 이하	3-4 일	5일	6일 이상	계(수)	평균	2일 이하	3-4 일	5일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6.9	11.4	41.4	30.2	100.0(539)	4.8	33.4	11.5	55.1	100.0(68)	3.8
아동 월령											
24~35개월	9.9	15.9	43.6	30.5	100.0(123)	5.0	31.3	14.1	54.5	100.0(13)	3.8
36~47개월	17.8	12.7	42.2	27.3	100.0(163)	4.7	42.7	22.5	34.8	100.0(15)	3.2
48~59개월	22.3	7.8	36.3	33.6	100.0(95)	4.7	31.9	0.0	68.1	100.0(21)	4.1
60개월 이상	18.2	8.9	42.1	30.9	100.0(159)	4.8	29.6	13.8	56.7	100.0(20)	3.8
X ² (df)/F			12.5(9)			0.4		-			0.9
지역규모											
대도시	14.0	14.2	45.8	26.0	100.0(286)	4.8	25.9	7.6	66.5	100.0(28)	4.1
중소도시	19.2	8.7	35.6	36.6	100.0(210)	4.9	36.4	14.2	49.4	100.0(34)	3.6
읍면지역	25.4	6.6	40.8	27.1	100.0(44)	4.5	51.5	14.8	33.7	100.0(6)	3.0
X ² (df)/F			15.9(6)*			0.6		-			1.8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1.2	4.7	33.5	30.6	100.0(15)	4.6	-	71.9	28.1	100.0(1)	4.3
251~350만원	36.6	12.3	19.4	31.8	100.0(37)	4.1	15.2	14.1	70.7	100.0(7)	4.2
351~500만원	12.0	12.3	36.7	39.0	100.0(79)	5.1	57.4	22.2	20.4	100.0(10)	2.9
501~600만원	19.7	10.2	36.0	34.1	100.0(91)	4.8	35.6	-	64.4	100.0(6)	4.0
601만원 이상	14.4	11.8	47.2	26.7	100.0(317)	4.8	31.9	8.6	59.5	100.0(44)	3.8
X ² (df)/F			-			2.1		-			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8	12.2	42.5	30.6	100.0(471)	4.9	29.8	11.5	58.7	100.0(59)	3.9
외벌이	31.8	6.5	34.4	27.2	100.0(68)	4.3	55.9	11.5	32.6	100.0(9)	3.0
X ² (df)/F			13.9(3)**			2.1*		-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1$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인의 돌봄 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가 출근한 이후 이용기관 등원 전까지와 하원한 이후 부모 퇴근 전까지 돌보는 방식이 26.9%로 가장 많고, 정기적으로 하루 종일 돌본다 20.9%,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돌본다 20.0%, 하루 몇 시간씩 정기적으로 돌본다 16.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250만원 이하와 650만원 이상 가구에서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등하원에 맞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26.9%, 35.4%로 높았다. 이는 맞벌이 가

구에서도 높게 나타나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혈연인으로부터 양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돌봄을 지원받는다든 비율은 가구소득 500만원 이하 집단들과 외벌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V-5-11〉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시간

단위: %(명)

구분	하루 종일(정기 적으로)	하루 몇 시간씩(정 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불 규칙적으 로)	부모 출근 후~기관 등원 전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 전	부모 출근 후~이용 등원 전, 하원 후~부모 퇴근 전	계(수)
전체	20.9	16.3	20.0	4.8	11.2	26.9	100.0(539)
아동 월령							
24~35개월	33.5	14.5	17.4	5.1	9.6	19.9	100.0(123)
36~47개월	19.4	17.6	16.7	4.4	11.5	30.3	100.0(163)
48~59개월	23.5	16.1	19.7	1.8	14.4	24.5	100.0(95)
60개월 이상	10.9	16.5	25.7	6.6	10.2	30.1	100.0(159)
$\chi^2(df)$			30.0(15)*				
지역규모							
대도시	21.3	16.9	16.5	6.5	9.4	29.4	100.0(286)
중소도시	21.1	14.4	23.1	3.0	13.4	25.1	100.0(210)
읍면지역	17.0	21.3	28.6	2.0	12.2	18.9	100.0(44)
$\chi^2(df)$			14.3(10)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8.3	10.8	25.1	7.8	1.3	26.9	100.0(15)
251~350만원	20.6	8.4	41.2	3.1	13.2	13.5	100.0(37)
351~500만원	8.9	35.9	29.3	3.5	12.3	10.1	100.0(79)
501~600만원	23.5	20.7	16.6	7.7	14.4	17.1	100.0(91)
601만원 이상	22.8	11.3	16.0	4.3	10.2	35.4	100.0(317)
$\chi^2(df)$			-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7	17.0	16.9	5.0	12.1	28.2	100.0(471)
외벌이	21.9	11.1	41.8	3.4	4.5	17.2	100.0(68)
$\chi^2(df)$			24.5(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5$, *** $p < .001$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의 돌봄 시간은 혈연인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정기적으로 하루 몇 시간씩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이용 22.9%, 기관 하원 후부터 부모의 퇴근 전까지 19.9%, 부모가 출근한 이후 이용부터 기관 등원 전까지 13.2%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는 부모의 출퇴근과 자녀의 기관 등하원 관련 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하루 몇 시간씩 정기적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읍면지역은 해당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표 V-5-12〉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시간

단위: %(명)

구분	하루 종일(정기 적으로)	하루 몇 시간씩(정 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불규 칙적으로)	부모 출근 후~기관 등원 전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 전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하원 후~부모 퇴근 전	계(수)
전체	11.4	24.9	22.9	7.7	19.9	13.2	100.0(68)
아동 월령							
24~35개월	27.4	24.4	16.0	11.2	18.5	2.5	100.0(13)
36~47개월	24.8	31.1	36.0	-	4.0	4.0	100.0(15)
48~59개월	1.7	15.9	8.2	12.9	37.1	24.2	100.0(21)
60개월 이상	1.8	30.0	32.8	5.7	14.6	15.2	100.0(20)
지역규모							
대도시	7.7	16.9	12.8	9.1	23.9	29.7	100.0(28)
중소도시	16.7	27.5	29.2	7.9	18.7	-	100.0(34)
읍면지역	-	47.8	35.1	-	7.8	9.3	100.0(6)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8.1	-	34.0	-	37.9	-	100.0(1)
251~350만원	4.6	-	24.7	-	36.5	34.2	100.0(7)
351~500만원	5.0	27.4	45.4	-	16.1	6.1	100.0(10)
501~600만원	-	8.1	30.8	19.7	31.6	9.7	100.0(6)
601만원 이상	15.0	31.4	16.3	9.3	15.9	12.1	100.0(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7	27.6	19.3	9.0	20.5	11.0	100.0(59)
외벌이	3.7	8.1	45.4	-	16.3	26.5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4) 비용

혈연인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 매월 지불하는 비용은 월 평균 56만 9,400원으로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비용 월평균 50만 9,100원과 비교하여 월 60,300원 정도 비용 부담이 많았다(표 V-5-13, 표 V-5-14 참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혈연인이 비혈연인보다 돌봄 횟수가 더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혈연인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출 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38.3%이고, 나머지

중 29.3%는 501~1,000천원, 23.2%는 500천원 이하, 9.3%는 1,000천원 이상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는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가구소득 501만원 이상이 그 이하보다 유의하게 많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두배 가까이 내는 비용이 많았다.

〈표 V-5-13〉 개인양육서비스 비용: 혈연

단위: %(명), 천원

구분	없음	500천원 이하	501~1,000천원 이하	1,001천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8.3	23.2	29.2	9.3	100.0(539)	569.4
아동 월령						
24~35개월	32.4	25.6	30.9	11.1	100.0(123)	633.3
36~47개월	36.3	22.7	32.3	8.8	100.0(163)	564.0
48~59개월	46.4	20.5	25.5	7.6	100.0(95)	538.9
60개월 이상	40.2	23.4	27.0	9.4	100.0(159)	543.7
X ² (df)/F			6.4(9)			0.5
지역규모						
대도시	36.0	25.2	30.4	8.4	100.0(286)	558.3
중소도시	40.8	19.3	29.5	10.3	100.0(210)	601.9
읍면지역	41.4	28.8	20.2	9.6	100.0(44)	487.0
X ² (df)/F			5.5(6)			0.6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82.4	5.7	11.9	-	100.0(15)	127.8
251~350만원	70.4	13.9	7.6	8.0	100.0(37)	252.8
351~500만원	57.8	17.5	19.2	5.5	100.0(79)	362.5
501~600만원	37.9	28.0	18.6	15.6	100.0(91)	704.3
601만원 이상	27.7	25.1	38.2	9.0	100.0(317)	640.3
X ² (df)/F			-			7.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9	25.2	31.1	9.8	100.0(471)	606.4
외벌이	69.2	8.9	16.4	5.5	100.0(68)	313.5
X ² (df)/F			31.6(3)***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 $p < .01$, *** $p < .001$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2.1%이고, 42.9%는 500천원 이상, 500천원 미만은 24.9%이다. 아동 월령 및 가구소득에 따라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아동 월령이 48~59개월 사이이거나 가구소득이 251~350만원 사이와 601만원 이상 가구에서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는 비용이 유의하게 많았다.

〈표 V-5-14〉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없음	500천원 미만	500천원 이상	계(수)	평균	t/F
전체	32.1	24.9	42.9	100.0(68)	509.1	
아동 월령						
24~35개월	30.0	16.5	53.5	100.0(13)	480.9	3.3*
36~47개월	39.5	26.1	34.4	100.0(15)	387.2	
48~59개월	10.7	28.1	61.2	100.0(21)	797.9	
60개월 이상	50.2	26.1	23.7	100.0(20)	318.4	
지역규모						
대도시	23.3	23.2	53.5	100.0(28)	649.1	1.6
중소도시	34.6	29.0	36.4	100.0(34)	405.9	
읍면지역	59.3	10.5	30.2	100.0(6)	430.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71.9	28.1	-	100.0(1)	78.8	2.8*
251~350만원	29.3	-	70.7	100.0(7)	524.2	
351~500만원	50.4	39.7	10.0	100.0(10)	123.2	
501~600만원	42.6	45.5	11.9	100.0(6)	202.0	
601만원 이상	26.1	23.0	50.8	100.0(44)	64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0	24.4	45.6	100.0(59)	538.1	1.1
외벌이	45.4	28.1	26.5	100.0(9)	329.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아동 기준」 결과임.

6. 가정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6절은 자녀양육지원 인프라의 충분성, 보육·교육기관 적정 이용시기,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인식 등 가정양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가. 자녀양육지원 인프라 충분성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양육지원 인프라(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 대여점 등)의 충분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부모 중 21.8%는 충분, 1.8%는 매우 충분하다고 답하여 23.6%만 충분하다고 답하였다. 즉,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충분성 정도는 4점 평균 2.0점으로 중간 정도이었다. 제 특성별로 보면, 지역

규모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중소도시이거나 가구소득 351~500만원 가구에서 자녀양육지원 인프라의 충분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 V-6-1〉 집 주변 자녀양육지원 인프라의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전체	23.3	53.0	21.8	1.8	100.0(2,057)	2.0
자녀수						
1명	23.6	52.9	21.7	1.8	100.0(1,169)	2.0
2명	22.9	52.9	22.3	1.9	100.0(721)	2.0
3명 이상	23.7	54.3	20.6	1.4	100.0(168)	2.0
X ² (df)/F			0.9(6)			0.2
지역규모						
대도시	24.0	55.3	18.4	2.3	100.0(1,015)	2.0
중소도시	21.4	51.7	25.6	1.3	100.0(858)	2.1
읍면지역	28.7	46.9	23.4	1.0	100.0(184)	2.0
X ² (df)/F			21.6(6)**			3.4*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25.0	57.9	14.9	2.2	100.0(81)	1.9
251~350만원	26.5	49.3	22.3	1.9	100.0(333)	2.0
351~500만원	18.1	54.1	26.5	1.3	100.0(597)	2.1
501~600만원	27.3	51.5	18.3	2.9	100.0(334)	2.0
601만원 이상	24.3	54.1	20.1	1.6	100.0(712)	2.0
X ² (df)/F			27.1(12)**			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6	53.3	21.4	1.7	100.0(1,210)	2.0
외벌이	22.9	52.7	22.5	1.9	100.0(847)	2.0
X ² (df)/t			0.7(3)			-0.7
수급 막내자녀 연령						
24~35개월 이하	22.7	52.8	23.0	1.4	100.0(549)	2.0
36~47개월	24.7	50.7	22.8	1.8	100.0(639)	2.0
48~59개월	25.7	54.7	19.3	0.2	100.0(343)	1.9
60개월 이상	20.8	55.1	21.1	3.1	100.0(526)	2.1
X ² (df)/F			15.2(9)			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나. 어린이집·유치원 적정 이용시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자녀를 둔 부모가 인식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적정 이용 시작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만3~4세가 32.7%, 만2~3세 미만 25.9%, 만4~5세 15.4%, 만5세 이상 13.8% 순이며 평균 2.9세이었다.

〈표 V-6-2〉 어린이집·유치원 적정 이용 시작시기

단위: %(명), 세

구분	만1세 미만	만1~2세 미만	만2~3세 미만	만3~4세 미만	만4~5세 미만	만5세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6	10.6	25.9	32.7	15.4	13.8	100.0(2,057)	2.9
자녀수								
1명	0.8	10.5	25.6	34.0	13.8	15.3	100.0(1,169)	3.0
2명	2.9	10.0	28.3	31.0	16.7	11.1	100.0(721)	2.9
3명 이상	1.5	14.2	17.3	31.3	20.7	14.9	100.0(168)	3.0
X ² (df)/F			34.9(10)***					3.0*
지역규모								
대도시	1.6	11.2	26.8	34.3	14.4	11.7	100.0(1,015)	2.9
중소도시	1.8	10.1	24.1	30.2	16.9	16.8	100.0(858)	3.0
읍면지역	0.3	9.7	28.8	35.9	13.7	11.6	100.0(184)	2.9
X ² (df)/F			18.8(10)*					3.9*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0.4	11.3	32.0	22.7	21.7	11.9	100.0(81)	2.9
251~350만원	0.8	12.6	22.0	35.6	15.2	13.7	100.0(333)	2.9
351~500만원	1.4	7.5	26.2	30.4	17.2	17.3	100.0(597)	3.1
501~600만원	1.4	11.3	23.5	32.1	16.3	15.4	100.0(334)	3.0
601만원 이상	2.3	11.9	27.8	34.8	12.8	10.4	100.0(712)	2.8
X ² (df)/F			41.8(20)**					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	11.8	27.3	32.8	14.0	12.1	100.0(1,210)	2.8
외벌이	0.8	9.0	23.9	32.7	17.3	16.4	100.0(847)	3.1
X ² (df)/t			21.6(5)**					-4.4***
수급 막내자녀 연령								
35개월 이하	1.7	10.8	26.4	35.3	14.6	11.1	100.0(549)	2.9
36~47개월	1.5	13.2	27.8	29.2	14.6	13.6	100.0(639)	2.9
48~59개월	1.9	8.8	32.4	26.2	16.6	14.1	100.0(343)	2.9
60개월 이상	1.2	8.5	18.7	38.6	16.3	16.8	100.0(526)	3.2
X ² (df)/F			46.9(15)***					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제 특성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자녀수가 1명 또는 3명 이상이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 351~500만원 가구, 외벌이 가구, 가정양육수당 수급 막내자녀 연령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 이용시기가 유의하게 높았다.

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누리과정 정책 목표인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만3세 이상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하여 보육

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표 V-6-3〉 만3세 이상 아동 가정양육수당 미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찬성	반대	절대 반대	계(수)
전체	8.3	43.3	29.9	18.4	100.0(2,057)
자녀수					
1명	7.9	46.8	28.4	17.0	100.0(1,169)
2명	7.3	37.7	34.7	20.3	100.0(721)
3명 이상	15.0	43.5	20.6	20.9	100.0(168)
$X^2(df)/F$			33.3(6)***		
지역규모					
대도시	8.1	42.9	31.0	18.0	100.0(1,015)
중소도시	7.3	43.4	29.2	20.1	100.0(858)
읍면지역	13.8	45.3	27.8	13.2	100.0(184)
$X^2(df)/F$			12.8(6)*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4.2	40.5	32.0	23.3	100.0(81)
251~350만원	5.7	41.7	32.0	20.6	100.0(333)
351~500만원	6.6	41.6	30.9	20.9	100.0(597)
501~600만원	9.3	46.9	27.6	16.1	100.0(334)
601만원 이상	10.9	44.2	29.0	15.9	100.0(712)
$X^2(df)/F$			23.8(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9.6	46.1	29.4	14.9	100.0(1,210)
외벌이	6.5	39.3	30.7	23.5	100.0(847)
$X^2(df)/t$			31.4(3)***		
수급 막내자녀 연령					
35개월 이하	7.5	42.4	27.2	22.9	100.0(549)
36~47개월	7.7	50.6	27.1	14.6	100.0(639)
48~59개월	8.0	41.8	31.7	18.5	100.0(343)
60개월 이상	10.1	36.4	35.1	18.4	100.0(526)
$X^2(df)/F$			36.5(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가구 중 43.3%가 찬성, 8.3%가 매우 찬성한다고 답하여 절반이 조금 넘는 51.6%가 찬성하였고, 나머지는 반대하였다. 제 특성별로 보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읍면지역,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 만3세 이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재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부가 만3세 이상 아동에게 가정양육

수당 지원을 중단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V-6-4〉 만3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계(수)	$\chi^2(df)$
전체	56.7	12.4	31.0	100.0(2,057)	
자녀수					
1명	55.1	10.9	34.0	100.0(1,169)	
2명	56.7	14.6	28.7	100.0(721)	21.2(4)***
3명 이상	67.5	13.2	19.3	100.0(168)	
지역규모					
대도시	57.0	12.2	30.8	100.0(1,015)	
중소도시	54.9	13.3	31.9	100.0(858)	4.6(4)
읍면지역	63.1	9.6	27.3	100.0(184)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61.2	9.3	29.5	100.0(81)	
251~350만원	51.1	14.8	34.1	100.0(333)	
351~500만원	56.1	12.7	31.1	100.0(597)	11.8(8)
501~600만원	62.0	8.7	29.2	100.0(334)	
601만원 이상	56.7	13.1	30.3	100.0(7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3	12.5	29.2	100.0(1,210)	4.5(2)
외벌이	54.3	12.2	33.5	100.0(847)	
수급 막내자녀 연령					
35개월 이하	52.1	11.9	36.0	100.0(549)	
36~47개월	61.4	8.6	30.0	100.0(639)	29.7(6)***
48~59개월	56.0	12.8	31.2	100.0(343)	
60개월 이상	56.2	17.2	26.7	100.0(5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01$

조사대상 가구 중 56.7%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12.4%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낼 의향이 없으며, 31.0%는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제 특성별로 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맞벌이 가구인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V-6-5〉는 만3세 이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데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추가로 알아본 것이다.

〈표 V-6-5〉 어린이집·유치원 보낼 의향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유치원 추가 비용 부담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마음에 안듦	초등학교 선행 학습에 학원 적합	자녀가 영어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함	기타	계(수)
전체	18.2	39.9	8.3	10.3	23.3	100.0(255)
자녀수						
1명	20.3	43.7	6.6	7.4	22.1	100.0(127)
2명	13.7	32.7	12.1	14.9	26.7	100.0(105)
3명 이상	27.4	52.7	-	5.5	14.5	100.0(22)
$X^2(df)$			-			
지역규모						
대도시	13.9	44.6	10.4	10.5	20.6	100.0(123)
중소도시	20.1	37.7	6.1	10.6	25.6	100.0(114)
읍면지역	35.3	21.5	8.5	7.2	27.6	100.0(18)
$X^2(df)$			-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47.8	38.4	-	-	13.8	100.0(7)
251~350만원	37.3	33.3	-	7.8	21.6	100.0(49)
351~500만원	14.0	39.8	9.9	2.0	34.4	100.0(76)
501~600만원	9.3	60.7	-	9.5	20.6	100.0(29)
601만원 이상	11.8	37.2	14.8	19.6	16.7	100.0(93)
$X^2(df)$			-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4	39.5	10.1	13.2	23.8	100.0(151)
외벌이	25.1	40.5	5.8	6.0	22.6	100.0(104)
$X^2(df)$			9.5(4)			
수급 막내자녀 연령						
35개월 이하	23.9	28.4	3.7	4.9	39.2	100.0(65)
36~47개월	25.3	37.4	6.3	6.7	24.3	100.0(55)
48~59개월	20.5	51.2	5.7	3.1	19.4	100.0(44)
60개월 이상	8.5	44.2	14.2	19.9	13.2	100.0(90)
$X^2(df)$			43.3(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조사」 결과임.

*** $p < .001$

응답자 중 39.9%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들었고, 18.2%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월 내는 추가 비용이 부담되며, 10.3%는 자녀가 영어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해서, 8.3%는 초등학교 선행 학습에 학원이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제 특성별로 보면,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불만족이나 비용 부담 등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읍면지역일수록 어린이집·유치원에 내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

담, 도시지역일수록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지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7. 가정양육수당 지원가구 심층면담(FGI) 결과

7절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자녀를 둔 부모 3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및 이용 중단 이유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이력과 현재 이들 기관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녀가 만3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며 시간제 보육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체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이지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냈으나 적응하지 못해서 못 보내고 있거나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관 이용한 적은 없고요. 계속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어요.(하O신, 32개월)

시간제 보육 지금 다닌 지는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만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시간제 보육 이용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가정 보육하면서 좀 체험 활동 위주로 제가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크다 보니까 조금 친구들이나 좀 선생님과 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시간제 보육 이용하면서 아기 양육하고 있어요. (노O정, 26개월)

그리고 13개월에 한 번 어린이집 갔다가 적응을 잘 못해서 계속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고 지금은 시간제 보육 다니고 있어요. (임O주, 28개월)

원래는 제가 어린이집을 보냈다가 네 아이가 좀 언어 지연으로 보육하기가 힘들다 낮잠을 안 잔다 하셔서 계속 나쁜 피드백을 많이 받아왔어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그러니까 제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정 보육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가정 보육을 하게 된 거예요. (정O요, 33개월)

제가 어린이집에 조금 불신이 있어서...저도 지금 아기를 보지만 선생님이 3명 보는 것도 힘든데 그냥 내가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어린이집에 딱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엄마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김O진, 42개월)

저희 아이는 이쪽 동네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을 대기를 걸어놨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 OO에는 신도시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자리가 없어서 3세 때부터 놀이 학교로 보냈거든요. (신O영, 6세)

이에 비해 자녀 연령이 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보다는 영어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부모 중 일부는 어린이집 대기 문제 등으로 어린이집 대신 다른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둘다 이용하다가 자녀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교육기관으로 기관을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8세 남자아이가 저도 앞에 얘기해 주신 어머님처럼 어린이집이 대기가 안 나서 그래서 3세 때부터 놀이학교를 보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큰 아이 7살 때 작은 아이도 그냥 같이 보내려고 5세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있고요. 4세 때는 그니까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 경험이 있고요. (박O애, 6세)

네 저는 6세 여아이고요. 지금은 영유 다니고 있고 그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 다녀봤습니다. 3세 때 어린이집 다니고요. 4세 때도 또 다른 어린이집 다니고요. 5세 때 유치원 다니고 6세 때 지금 영유 다니고 있습니다.(강O영, 6세)

2) 사교육(학원, 문화센터, 영어유치원 등) 이용 경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나 문화센터, 방문학습지, 영어유치원 등의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령이 어린 영아는 문화센터와 같은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지는 않았고,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체험 위주의 일회성 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일단은 이용 경험은 하나도 없고요. 사실 저는 아이한테 그 어린아이부터 학습지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와서 교육하고 이러는 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는 사실 너무 이용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제 뭐 그런 교구들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서 저장 하는 편이고 아이가 그날 그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역할 놀

이도 하고 책도 읽고 모래 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하고 이제 날씨가 지금은 더워서 밖에 못 나가는데 보통 이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자연 관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이가 좀 활동적이라서 바깥 놀이를 좀 많이 하는(하O신, 32개월)

네, 저희 우선은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학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 우선 없어서 학습지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OO 아쿠아OOO 자주 가는 편이고(정O진, 25개월)

저는 조금 아기를 그런 거에 빨리 노출시킨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돌 전부터 미술 수업을 했었고요. (노O정, 26개월)

문화센터 다니다 말다 하긴 하는데 다닐 때는 그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가 12개월부터 제가 프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기 너무 어렸을 때는 그때 문화센터 계속 중지되어서 못 다녔었고 돌부터 문화센터 다녔었거든요. (이O혜, 27개월)

따로 없고 OOO은 저희가 책을 얻은 게 있어서 선생님만 부르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코로나에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거기 부모님 참고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같이 놀아주고 있고요. 전 애 교육보다는 지금은 체험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주에는 애가 많이 없는 대신에 아기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참 많거든요. 공원도 잘 돼 있고 수목원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예약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김O한, 28개월)

돌 전까지는 없었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없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올해부터 이제 제가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문화센터도 주에 한 3일 정도 가고 주말에는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박O아, 27개월)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체험 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함에 따라 이용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6, 7세 아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첫째 때부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난감도 저희가 이제 저희 아가씨가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거기서 장난감이나 책이나 옷이나 많이 물려받았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조금 아끼기 위해서 그런 데서 대여해서 이렇게 장난감을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만져보고 타보고 할 수 있는 걸 집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했고 또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박O숙, 24개월)

인천에 어린이 공동육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문화센터랑 그냥 사교육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정O혜, 27개월)

3) 양육수당 지출 내역(사용처 등)

양육수당 사용처에 대해 물었다. 아이 이름으로 적금이나 통장에 예치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고, 일부에서는 자녀가 이용하는 서비스나 정기적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아기 낳고서부터 들어오는 돈을 그냥 계속 쪽 저금했어요. (노O정, 26개월)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통장을 따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일반 통장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그 통장에서 자동 이체로 적금 통장으로 들어가게끔 개설했어요. (박O숙, 24개월)

저도 아기 적금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기저귀나 분유 값으로 쓰다가 이제 아기 뒤편으로 조금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이제 그 돈을 빼서 이제 아기 걸로 따로 들기 시작했어요. 청약이랑 자유적금으로 (김O영, 27개월)

(강O영, 6세): 저는 먼저 사용 방법은 그냥 아이 통장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적금도 따로 안 들고 그냥 일반 통장으로 아이 통장으로 항상 그냥 그대로 있고요. (강O영, 6세)

대부분 가정양육수당을 생필품 구입비, 도서구입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함께 지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별도 분리하여 지출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아서 아이에게 지출되는 목록은 저는 통장을 되게 한 10개 이렇게 20개씩 관리를 하면서 그걸 지출을 맞춰서 하는데 아이 거는 아이 걸로 받아요. 그리고 아이의 적금으로 나가는 돈으로 나가고 또 아예 교육비 같은 것도 나가고 명절에 받는 돈도 그 통장으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생각마다 다 개인적인 거라 생각돼서 (이O현, 30개월)

네, 그거 아기 책 비용이랑 센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센터 (이O혜, 27개월)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저희 교육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O사, 26개월)

저는 그냥 그걸로 아이랑 저 보험료에 내고 있어요. (정O요, 33개월)

유아 가정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유치원이나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기관의 이용하기 위한 교육비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녀 연령이 증가하면서 교육비 지출이 커지다보니 적금 형태로 모아놓았던 가정양육수당을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우선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을 가입을 해서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가입을 해서 이제 매달 그렇게 해결을 하다가 둘째 때부터는 씬씀이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매달 너희가 원하는 책 며칠 드리는 걸로 책으로 그거를 다 이제 분산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책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무슨 책을 샀으면 다음 달에 이제 군산에서 원하는 책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셋째가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요. 생활비로 그냥 다 신랑 통장으로 다 몰아서 이제 그냥 생활비로 쓰는 걸로 돼버렸고 어차피 이제 첫째는 안 나오고 막내도 안 나오고 둘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돼버렸어요. (신O영, 7세)

별도의 지출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생활비로 함께 지출하기도 하지만 금액 자체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총 지출액에 비해 적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냥 생활비 통장에 같이 받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기저귀 이런 거 옷 사는 거 쓰는 거죠. (신O혜, 4세)

저도 이제 학원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냥 생활비 통장으로 받아서 그냥 학원비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이O아, 32개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 중에서 생활비로 보태서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교육비로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O운, 6, 7세)

사실 따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저축해 주는 비용은 따로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받는 걸로 거기 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사실 선교원인데 저희가 월 교육비는 사실 한 달에 50만원이 나가요. 첫째만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주말에 키즈카페 가고 몬테소리 수업 같은 것도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들고 그런 거 하고 이러면 사실 식비 이런 거 빼도 100만원 가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도 안 계시긴 하겠지만 요즘에 영어 유치원 되게 많이들 보내시긴 하거든요. (석O진, 5세)

제가 특별히 그거를 가지고 적금을 들어주거나 계획성 있게 쓰지는 않고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생활비에 조금 보탬이 된다 이 정도지 애를 데리고 어디 외출하거나 뭐 먹고 이러면은 5~6만원 물가도 요새 그런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놀면 10만원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지 거기에다가 큰 의미를 사실은 두고 있지는 않아요.

(윤O연, 29개월)

네, 저희는 조금 다른 분들처럼 적금은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큰아이랑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이제 문화센터나 아기 학교 이런 걸 이제 활용 해서 이용을 했었고 막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집에서 대신 엄마표 미술 놀이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그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막내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다보니까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집에서 조금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해주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간식이라든지 아이 필요한 거 먹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정O진, 25개월)

일부에서는 가족 생활비와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대체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크지 않아 별다른 구분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저도 생활비 통장으로 같이 해서 통합해서 쓰고 있어요. 딱히 목적은 없고 아이한테도 쓰고 제가 쓰기도 하고요. (이O주, 5세)

저도 따로 적금 든 건 없고요. 그냥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와서 필요할 때 그냥 쓰고 있어요. (권O해, 27개월)

생활비로 합쳐져요. (임O주, 28개월)

저도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고 카드값 나가는 그 통장이라서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생활비 (정O진, 25개월)

뭐 그걸 따로 특별하게 아이 보험료나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놓지는 않았고요. 그냥 생활비 그냥 주로 쓰고 있는 계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포함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O영, 7세)

저도 가족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계속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10만원이어서 다른 교육비 생각하면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신O영, 6세)

4) 자녀양육 관련 정보 취득

자녀양육 관련 정보 취득 방법은 정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정보는 이웃 입소문 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육아커뮤니티 등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고,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은 인터넷 육아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구하고 있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정보, 정부 정책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채널을 통하거나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영유아 부모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주로 이제 동네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알아보기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 주변에 여기 살고 있는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살아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제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이제 어디에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 아이가 있으면 어디 다니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 근처 어린이집이 있던데 거기는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편이죠. (정O진, 25개월)

여기 지역에서는 사실 좋다 이렇게 어디가 좋다. 이런 평은 주변 어머님들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알게 되기는 하죠. (하O영, 7세)

일단 제일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얻고요. 교육 카페나 맘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로부터 듣기도 합니다. (장O운, 6, 7세)

저도 지역 맘 카페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 카페 같은 것들도 요새는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얻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즘 영어 유치원에 방문을 하면 입시 상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잘 되어 있어서 상담을 직접 가서 보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현주, 5세)

거의 인터넷이죠. 아무래도 검색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주거나 아니면 육아 카페 이런 것도 저희 지역은 좀 잘 돼 있는 편이어서 (정O요, 33개월)

저는 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에 가서 좀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거기서 영양 플러스 사업도 있어서 그것도 신청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산모 임신했을 때부터 저도 받고 아이도 받고 이렇게 그런 걸 쪽 이제 알아서 (박O숙, 24개월)

저도 맘카페에 보거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같은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얻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공기관 채널에서 보고 (박O아, 25개월)

저도 맘 카페 이용하는데 저도 00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되게 자주 들어가요. 그리고 애들이랑 주말에 어디 가지 이런 거는 000그램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맘O맵인가 그러니까 000 지도라는 그런 어플 같은 것도 있어서 (석O진, 5세)

요즘에는 사실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sns에서 많이 그 정보들을 얻고 거기서 이제 보고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거기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O신, 32개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다각화하고 있지만 개인 성향에 따라 활용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그건 제가 다 검색을 해서 아 애가 갔을 때 이렇게 보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데를 가죠. 어린이 박물관 위주로 갈 때도 있고 미술관도 미술관 같은 것도 요즘에는 막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 애들이 할 수 있는 있게 체험 활동을 부스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 데를 가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막 엄청 큰 청주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 모든 걸 체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도시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그런 데 청주에 안에 있고 주말에는 이제 다른 데로 나가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해서 체험하는 편이에요. (노O정, 26개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왜 그런 거 바빠한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어머님의 sns를 팔로우를 해서 보고 따라서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행히 이제 그런 엄마가 주변에 있어서 주워서 듣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조금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일이 제가 하기에 (박O애, 6세)

주변 친구나 아니면 지금은 유치원 엄마들 예전 일반 유치원 다녔을 때 유치원 엄마들 그다음에 네 주변 지인들이 다인 것 같아요. (강O영, 6세)

5) 가정양육수당 관련 정책 의견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수준에 대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더해 아동 연령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교육비 지출액이 늘어나므로 가정양육수당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가 애 낳고 첫째 때 이제 주민센터에서 무슨 기저귀를 한 상자 주셨어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좋은데 금액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 좀 적은 것 같아요. 그것도 처음에 줄 때 20만원 주다가 나중에 1년씩 5만 원씩 자주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좀 안 내려가고 꼭 그냥 더 주면 좋겠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박O숙, 24개월)

그러니까 체감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야 책을 사든 아이들이 뭘 원하는 걸 하든 아니면 지금은 생활비를 쓰든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보탬이 된다고는 생각은 안 하죠. 그냥 받으면 좋고 그러는 거지. (신O영, 7세)

도움이 되긴 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아니다. 더 금액이 이제 좀 더 많이 책정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O혜, 27개월)

주니까 도움이 아예 안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줄이니까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임O주, 28개월)

근데 만약에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 처음에 아까 어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20만원을 받는데 점점 5만원씩 줄잖아요. 기관을 안 보내고 집에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딱 애가 이제 크면서 기저귀랑 분유는 안 들어간다 하지만 더 나머지 뭔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정O진, 25개월)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제가 많이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이가 커갈수록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가가 되게 비싸지더라고요. (조O은, 26개월)

국고가 없으니까 그만큼 주겠지만 적절하지 않고 사실은 클수록 저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많고 기저귀 값, 분유값은 진짜 키우면서 돈도 아니고 11살짜리 애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크면은 진짜 학원비 100만원 200만원은 돈도 아니게 나가는데 클수록 돈이 더 드는데 어떻게 진짜 너무 신생아에 맞춘 육아 정책 말이 안 되어서 (윤O영, 29개월)

이제 더 커서는 아기가 또 계속하던 거는 지루해하고 이러니까 또 새로운 걸 또 찾게 되고 그런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게 사실 그렇게 막 크게 원래도 크게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부족하다 생각은 안 했는데 좀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권O해, 27개월)

특히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지원받는 보육료와 비교할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이 적다는 데 대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부모가 가정 내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정 내 양육의 가치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주위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유치원이 부족하여 대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서비스를 가정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안 보내서 어린이집 커리큘럼을 집에서 한번 해보자고 하고 그럼 다른 외부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용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오전 시간에 두 타임 정도 그렇게 문화센터라든지 외부 교육을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 자체가 한 클래스당 기본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식비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삼시 세끼를 다 만들어서 먹이니까 이 부분도 식비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또 그 부분이 줄어들고 그래서 비용 자체는 정부에서 지

원하는 비용하고 어린이집 보냈을 때 비용을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가정 양육수당이 (박O아, 25개월)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확 늘어난 거긴 한데 사실 나라에서 키우지 않고 엄마가 키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처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게 그런데 엄마가 키우는 게 더 좋고 그 나라의 지원을 덜 받으니까 저희 더 우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는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너네는 필요 없으니까 10만원 지원해 주고 저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그쪽에다가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35만원 지원해 주면 가정에서 보는 애들도 3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O영, 27개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모한테 직접 보육료가 많이 지급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국공립도 보내보고 어린이집을 그리고 직장도 보내보고 사실상 한국에 오자마자 한 반 년 정도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정부에서 원으로 바로 지급되다 보니까 좀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하루에 500원도 안 되는 밥으로 돈으로 밥을 주고 유통기한 지난 걸 주고 해가지고 좀 제가 시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사실 저한테는 사실을 보내게 된 계기이긴 한데 좀 수당 자체를 부모한테 직접 주고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O운, 6, 7세)

이제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건 사실은 선택을 제가 한 거니까요. 그 사교육을 선택하기로 했으니 거기에 따른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지만 이게 큰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어린이집이 자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놀이학교를 보낸 거여서 그것 때문에 오는 차이는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퀄리티의 그 교육을 저도 아이한테 받게 하고 싶은데 자리가 나지는 않고 근데 그 정도의 퀄리티의 교육을 제가 일일이 따로따로 부르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액수를 제가 지출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꼈고 놀이학교나 놀이학교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그게 이제 하원하는 시간이라든지 이제 돌봄 같은 게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또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 저는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 통장에 그냥 10만원씩 넣어주고 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무언가 그거 말고 다른 일을 하려면 (박O애, 6세)

6) 부모급여에 대한 의견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정책에 대해서는 금액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다만 출산 시기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네 실비로 계산하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저귀나 분유 같은 걸로만 계산하면 근데 요즘은 0세 아이들도 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금액을 따지면 조금 딱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받았던 금액을 생각하면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O주, 5세)

사실 그 정도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보다 오히려 커가면서 드는 돈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정말 가장 어릴 때 만 1세 전에는 그때 휴직 중임에도 이제 키울 수 있었던 거는 집에서 이제 아이랑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저귀, 분유, 아니면 모유 수유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막 애로 사항이다라는 건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좀 돌 지나고 이제 문화센터라든지 다니고 교육도 뭔가 시작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비용은 더 많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느껴져요. (장O운, 6, 7세)

그게 아기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원이 만약에 20살 때까지 그게 보장이 된다 아니면 중·고등학교까지 보장이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영유아 때 잠깐 그 시기에 그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애를 낳아서 그거를 하라는 건 그건 너무 여자한테 돈 줄 테니까 네 애 낳아 이거 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0만원 줄 테니까 애 낳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김O영, 27개월)

저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가져서 넣고 싶은 거는 있는데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진짜 평생 진짜 대학 갈 때까지 아니면 스무 살 될 때까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 때 100만원 1년 때문에 아이를 그거랑 별개라도 저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O아, 31개월)

네, 금액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받고있는 금액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체감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 때문에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원금 때문에 (박O아, 25개월)

(조O은, 26개월)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죠.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까 질문하셨듯이 그렇다고 애들 애를 더 낳고 그렇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낳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주면은 더 좋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돈을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보다 진짜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사실 어릴 때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옷 같은 거는 다 많이 물려받고 하는데 클수록 그런 교육하는 데 그런 돈이 많이 드니까 약간 클수록 돈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근데 많이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둘째 계획이 있는데 그래도 또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이제 저희는 어릴 때 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돈을 좀 많이 주면은 좀 키우는 데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은 해요. 나중에 커서는 저희가 맞벌이로 일을 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버는 걸로 애를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권O해, 27개월)

저는 둘째 계획이 있어서 지금 내년에 내년에 낳을까 후년에 낳을까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김O영, 27개월)

부모급여가 만 0,1세에 국한되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녀 연령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양육비 부담이 더 증가하므로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지원기간을 늘리고 분할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0세 확대에도 좋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데 (석O진, 5세)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100만원 그렇게 주는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좀 계속 주는 게 낫지 왜냐하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또 쓰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크면 더 필요하잖아요. 저축이야 하겠지만 더 하겠지만 아무튼 점진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초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0세, 1세 때 100만원을 한꺼번에 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적당하게 규율적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 그 돈으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O주, 28개월)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 이상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은 방안에 대해 물었다. 우선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단 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이 개인의 기관 이용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0만원 안 받는 거랑 상관없고요. 그냥 저는 유치원부터 보내고 싶어요. 아기랑 있는 시간이 평생에 4년 나랑 붙어 있을 시간 이렇게 계속 놀 시간이 4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데리고 있는 게 안심도 되고 그냥 10만원 덜 받고 더 받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자랑 있고 싶어서 (정O진, 25개월)

저도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보낼 생각이 제가 갖고 있어서요.(임O주, 28개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을 36개월 되면 보낼 거여서 크게 이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문제라 될 것 같아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그 10만원이 네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엄마 개인의 자유를 조금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정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모니터링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게 선순환되도록 해야지 그걸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막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그리고 사교육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홈스쿨링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학부모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은 바우처 형태라든지 사교육 바우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박O아, 25개월)

제가 만약에 둘째 셋째가 없었으면 첫째는 그래도 다섯 살까지는 엄마가 보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엄마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거는 교육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을 텐데 다섯 살부터 무조건 기관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주지 않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지 못한 거라. 그래서 막상 들었을 때는 그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신O영, 7세)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 지 않은 채 일정 연령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도 지적하였다. 특히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어 보내지 못하거나 가족 또는 아동 등의 특성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혜택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사실은 이제 똑같이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교육의 질을 되게 더 충분히 높이는 게 같이 되고 폭을 넓히고 질이 가치 향상이 되면서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아이 키우는데 혜택은 없어라고 하면 섭섭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나라의 정책 자체가 어쨌든 되게 지금 완전 어린 아이들이 정말 너무 적잖아요. 아이 낳아라 잘 이제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지만 새로 나는 아이들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되게 중요하게 잘 나라의 인재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아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줄인다 이거는 더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하O영, 7세)

말도 안 되죠. 집에서 기르는 게 더 힘든데 그거 저도 왜 어린이집에서는 100만원씩 주면서 왜 집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안 주냐 그것도 사실 불만인데요. 사실 애를 엄마가 기르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저도 직장에 다니지만 직장을 포기하고서는 제가 하는 거지 직장에 다니기 싫어가지고 애를 기르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포기한 거고 제 그걸 포기하고 애가 애를 엄마 손에 기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첫째 할 때 그때 이제 직장을 관두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그걸 아니까 애를 엄마 손에 기르는 건데 왜 어린이집에 보내야지만 그 돈을 더 주고 그리고 엄마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던 놀이학교 보내던 그건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기 선택이죠. 두 살에 보내던 세 살 보내던 똑같은 돈을 다 똑같이 지원하고 그거는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무슨 의무로다가 가둬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O영, 29개월)

저는 3세, 4세 때는 사실 놀이학교를 보는 게 너무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낸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 양육수당마저도 없앤다면 3세, 4세 때 저처럼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되게 불공평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O영, 6세)

저는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그냥 돈을 다 지급해 주고 그 교육기관도 직접적으로 부모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집에 데리고 있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그냥 좀 지원율도 조금 높였으면 좋겠고 정보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또 타지역으로 나가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해서 교육기관이랑 이렇게 가정 양육수당이랑은 금액 차이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O주, 5세)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가정 양육수당 10만원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액수가 만약에 커지면 또 생각이 달라질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10만원의 가족 양육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낼 것 같아요. 그대로 주지 않더라도 10만원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이 그래서 그냥 그걸 안 준다고 해도 그렇게 변경이 된다. 그래도 저는 영어 유치원을 만약에 보낼 상황이라면 영어 유치원을 보낼 것 같고요. (강O영, 6세)

8. 시사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교육 기관 이용 현황과 이용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출생 시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이용으로 그 이후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이 최초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12.2개월이며, 아동 월령별로는 67.8%가 0~11개월, 9.8%는 12~23개월, 9.8%는 24~35개월, 12.6%는 36개월 이상이었다.

둘째, 만3세 이상 정도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함을 알 수 있었다. 가정양육수당 최초 중단시기는 평균 49.4개월이며, 36개월 이상이 77.6%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24~35개월이 15.8개월, 12~23개월이 5.8개월, 0~11개월은 0.8%로 소수이었다.

셋째,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중 부적절 40.5%, 매우 부적절 35.3%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적절성 점수는 4점 평균 1.9

점으로 낮았다. 특히 아동 월령이 어릴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걱정성 정도가 낮았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도움정도도 48.8%는 어느 정도 도움, 18.3%는 매우 도움된다고 답하였고, 도움정도는 평균 2.8 점이었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는 인상되지 않은 반면 보육료는 크게 인상되어 지원단가에 대한 불만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보육료 수준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가정양육수당 적정 금액으로 39.5만원을 응답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자녀를 둔 부모 중 46.0%는 30~50만원이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50~70만원, 30만원 미만 21.4%, 70만원 이상 6.4% 순이었다.

다섯째, 부모의 기관 이용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보다는 생활비로 전체 가족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 주 사용처를 1.2순위로 조사하여 합산한 결과, 식료품비가 6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필수비 39.6%, 의료비 23.1%, 자녀보험비 19.0%, 자녀적금 및 주택청약 16.3% 순이었다. 특히 아동 월령이 적을수록 식료품비 및 생활필수비,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자녀보험비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섯째,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중 76.1%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계획이 있지만, 23.9%는 이용 계획이 없어 가정 내 양육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조사대상 아동 중 31.4%는 유치원, 31.3%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둘다 보낸다는 아동은 13.3%로 과반수 이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둘다 안 보낸다는 아동이 23.9%로 거의 1/4 가까이 되었다. 아동 월령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향후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사교육 기관에 보낼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도 사교육 기관 이용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16.6%로 저조하였다.

일곱째,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대부분 가정 내에서 양육되기 보다는 어린이집·유치원, 사교육기관 등의 이용 경험이 있어 가정 내에서만 양육되는 아동은 극소수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만 이용한

아동은 82.4%이고, 어린이집·유치원 둘다 이용한 아동은 13.5%이며, 유치원만 이용은 4.1%이었다. 또한 24개월 미만부터 학원, 방문과외, 학습지 등을 이용한 아동이 30% 이상이였다.

여덟째,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가정내 양육서비스를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조사대상 아동 중 시간제보육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5.8%이고, 혈연인 및 비혈연인으로부터 양육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26.5%이었다. 자녀양육지원 인프라 충분성에 대해 조사 참여 부모 중 21.8%가 충분, 1.8%가 매우 충분하다고 답하여 23.6%만 충분하다고 하였고 과반수 이상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홉째, 부모들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적정 시기로 2~3세 사이를 응답하였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 차원에서 기관 이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 적정 이용 시작시기를 조사한 결과, 만 3~4세가 32.7%, 만 2~3세 미만 25.9%, 만 4~5세 15.4%, 만 5세 13.8% 순이며 평균 2.9세이었다.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 24개월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중 43.3%가 찬성, 8.3%가 매우 찬성으로 답하여 절반이 조금 넘는 51.6%가 찬성하였고, 나머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열 번째, 만3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시 아동 및 부모, 가구의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만 3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 중 56.7%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12.4%는 의향이 없으며, 31.0%는 잘 모른다고 하였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외벌이 가구에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이유로 응답자 중 39.9%는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들었고, 18.2%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월 내는 추가 비용이 부담되며, 10.3%는 자녀가 영어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해서, 8.3%는 초등학교 선행학습에 학원이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열 한번째,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육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 만 3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 중 39.9%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지적하였다.

VI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관계

- 01 개요
- 02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 가구의 특성
- 03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VI.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관계

제6장에서는 정부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2차-22차 (2009년-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개요

가. 분석 자료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⁴⁰⁾ 12차-22차(2009년-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⁴¹⁾.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2009년 도입되고(보건복지부, 2009)⁴²⁾, 2013년에는 지원대상이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보건복지부, 2013b; 301)⁴³⁾됨에 따라 2009년 이후 조사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고, COVID-19 영향이 일부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2020년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노동패널은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⁴⁴⁾. 가구용 자료는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40)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는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3차 조사(2020년)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배포됨(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 노동패널은 1998년 5,000가구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12차년도(2009년)와 21차년도(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가구 표본을 추가함(12차년도 1,415가구, 21차년도 5,044가구).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한국노동패널 1-22차년도 유저가이드,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2&key=151> (2022. 9. 10. 인출)).

41)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s://www.kli.re.kr/kli/login.do?key=116&TARGET=%2Fklips%2FselectBbsNttList.do%3FbbsNo%3D98%26key%3D526> (2022. 9. 10. 인출).

42) 2009년 23개월이 도래하는 날까지 월 10만원 지원하다가(보건복지부, 2009: 245), 2011년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을 지원함(보건복지부, 2011b:271).

43) 2013년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 36개월 이상~취학전 월10만원 지원함(보건복지부, 2013b: 301).

44)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한국노동패널 1-22차년도 유저가이드,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2&key=151> (2022. 9. 10. 인출).

사항, 가족관계, 주거, 자녀 교육 및 보육, 가구소득과 지출 등을 조사하고,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 고용 특성, 노동시장 이동 등 다양한 노동시장 관련 요인을 조사한다.

나. 분석 표본 구성

먼저, 가구용 조사 자료에 자녀 보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용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 대상 가구를 추출하였다.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내용은 개인용 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므로 위에서 추출된 가구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용 조사 자료 추출하고, 이를 다시 가구용 조사 자료와 매칭하였다.

다. 가정양육수당 변수 생성

가정양육수당 수급 관련 문항이 노동패널 16차(2013년)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 연도 정보가 없고, 16차 이후 조사에서도 응답자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 이 변수를 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⁴⁵⁾. 따라서 자녀가 만 6세 이하 미취학이고, 사교육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등), 사설놀이방, 유치원(정규 유치원, 시간연장제 유치원, 종일제 유치원 등),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자녀를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으로 간주하여 자료를 추출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보육 종류 관련 문항은 자녀의 부모,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동거하고 있는 타인, 비동거하고 있는 타인(영어유치원 포함)과 기타 학원, 학습지, 과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⁴⁶⁾.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자녀의 수가 4명 이상

45) 노동패널 16차(2013년) 자료부터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0세-미취학 자녀와 취학-재수생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음. 노동패널 16차부터는 미취학 자녀에 대해 보육 관련 조사 문항 확대됨(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 아이사랑카드 사용 여부, 가정양육 수당 수급 여부, 월평균 지급액, 방과후 교육 및 보육서비스 비용 정부지원 여부 등이 미취학 자녀 대상 보육 관련 등). 16차 이전에는 미취학 자녀 보육에 관한 질문 사항이 별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 사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1&key=149> (2022. 9. 10. 인출)).

46)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한국노동패널 1~23차년도 통합설문지,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1&key=149> (2022. 9. 10. 인출).

인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셋째 자녀 정보까지 취합하였다.

2.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 가구의 특성

먼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와 만 0세부터 미취학까지의 자녀가 있지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 가구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 가구 수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 수는 대상 아동이 없는 가구 수보다 적다. 가정양육수당이 처음 도입된 2009년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는 317가구이나 대상 아동이 없는 가구는 412가구로 100가구 정도 차이가 난다. 2013년에는 267가구 정도 차이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567가구 정도까지 벌어진다.

〈표 VI-2-1〉 가구 수 비교

단위: 가구

구분 연도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없는 가구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있는 가구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2009	3.99	0.83	412	3.84	0.75	317
2010	3.92	0.80	476	3.85	0.64	247
2011	3.94	0.80	494	3.9	0.69	251
2012	3.90	0.83	556	4.01	0.73	238
2013	3.87	0.84	653	3.73	0.85	386
2014	3.89	0.85	661	3.68	0.81	323
2015	3.88	0.84	660	3.64	0.77	335
2016	3.89	0.83	644	3.64	0.76	300
2017	3.87	0.83	623	3.65	0.74	281
2018	3.84	0.78	1,005	3.7	0.80	415
2019	3.79	0.75	909	3.75	0.84	342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2차년도 low dat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나. 작년 한 해 총 근로소득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와 지급대상 아동이 없는 가구의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았다. 총 가구의 근로소득은 명목소득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V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까지는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가 지급대상 아동이 없는 가구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았다. 그러나 2013년 기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이 지급대상 아동이 없는 가구보다 더 적어진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문항 구성이 조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2013년 이전 조사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2013년 이후와 비교해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작년 한 해 근로소득이 그렇지 않는 가구와 비교하여 143만원(2014년)에서 726만원(2017년)까지 차이가 난다.

〈표 VI-2-2〉 작년 한 해 총 근로소득 비교: 2009~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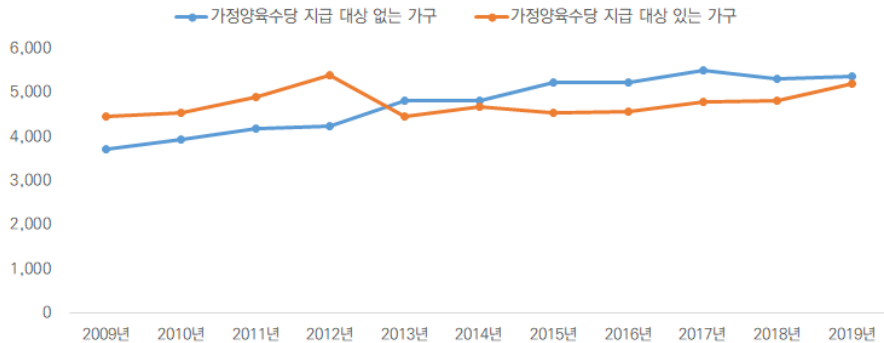
단위: 천원, 가구

구분 연도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없는 가구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있는 가구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2009	3724.21	2382.60	400	4446.44	2566.66	313
2010	3936.27	2987.24	466	4530.8	2618.01	245
2011	4187.93	2722.93	488	4903.78	2668.12	249
2012	4240.28	2007.33	546	5386.78	2835.51	238
2013	4808.69	2553.85	643	4457.04	2313.82	380
2014	4829.22	2542.45	654	4686.66	2670.45	318
2015	5229.93	3009.26	653	4531.17	2294.39	321
2016	5241.11	2661.15	640	4574.03	2209.11	295
2017	5515.84	2748.23	617	4789.45	2521.45	279
2018	5314.45	2759.07	987	4822.49	2771.77	402
2019	5364.49	2518.41	901	5210.34	2387.75	333

주: 총 근로소득은 명목소득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2차년도 low dat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VI-2-1] 작년 한 해 총 근로소득 비교: 2009~2019년



자료: <표 VI-2-2>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다. 미취학 자녀 보육·교육 비용

만0세부터 취학 전까지 자녀에게 소요되는 평균 보육·교육 비용을 산출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교육 비용은 2013년을 기점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VI-2-3〉 보육·교육 소요 비용 비교: 2009~2019년

단위: 만원, 가구

구분 연도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없는 가구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있는 가구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2009	22.91	12.3	412	13.83	15.56	317
2010	24.19	15.22	476	13.94	15.71	247
2011	25.17	15.88	492	14.21	15.49	251
2012	18.77	13.98	556	17.58	22.67	238
2013	29.22	12.31	653	9.93	17.13	386
2014	29.78	9.38	659	9.99	17.42	323
2015	30.38	11.28	660	10.72	19.67	335
2016	32.36	12.61	644	10.91	17.71	300
2017	31.39	11.23	623	12.16	20.99	281
2018	31.81	11.15	1005	10.75	18.19	415
2019	30.74	10.8	909	11.36	19.57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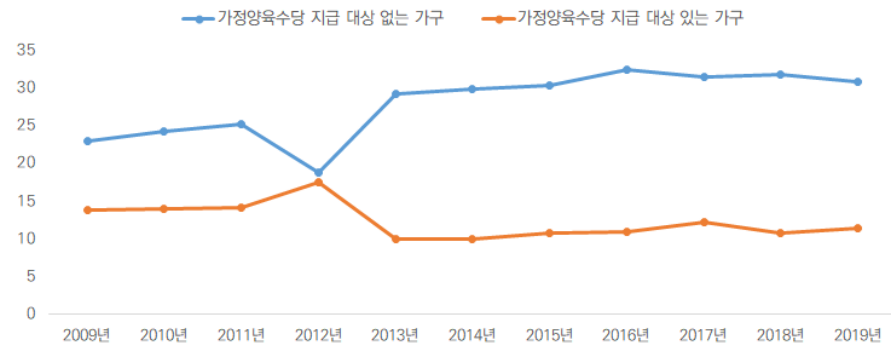
주: 미취학 자녀 보육·교육 비용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2차년도 low dat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2012년까지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교육 비용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1~11만원 정도 많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아동이 없는 가구의 보육·교육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고 있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보육·교육 비용 차이가 19만원(2013년, 2017년, 2019년)에서 21만원(2016년)까지 차이가 난다.

[그림 VI-2-2] 보육·교육 소요 비용 비교: 2009~2019년



자료: <표 VI-2-3>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라.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만0세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가 매우 또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표 VI-2-4>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 비교

단위: 가구

구분 연도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없는 가구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있는 가구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2013	0.44	0.50	651	0.18	0.38	386
2014	0.37	0.48	657	0.19	0.39	323
2015	0.37	0.48	657	0.12	0.33	334
2016	0.41	0.49	644	0.16	0.37	300
2017	0.39	0.49	623	0.16	0.37	281
2018	0.37	0.48	1,005	0.16	0.37	414
2019	0.34	0.47	909	0.17	0.37	342

주: 2013년부터 만0세부터 미취학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관련 질문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한국노동패널 16~22차년도 low dat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없는 가구가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없는 가구가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보다 보육·교육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마.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의 사교육비 경감 도움 정도

〈표 VI-2-5〉는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이 사교육비 경감에 매우 또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모두 도움된다고 응답한 가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만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없는 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는 그 격차가 10%p 이상 나타나고, 2019년에는 18%p까지 벌어졌다.

〈표 VI-2-5〉 정부 지원의 도움 정도 비교: 2013~2019년

단위: 가구

구분 연도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없는 가구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있는 가구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수
2013	0.78	0.41	651	0.74	0.44	386
2014	0.83	0.38	656	0.80	0.4	323
2015	0.84	0.36	657	0.79	0.41	334
2016	0.86	0.34	644	0.75	0.44	300
2017	0.87	0.34	623	0.77	0.42	281
2018	0.81	0.39	1005	0.68	0.47	414
2019	0.81	0.39	909	0.63	0.48	342

주: 2013년부터 사교육비 부담 경감 도움 정도 질문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한국노동패널 16~22차년도 low dat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3.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중 만 0세부터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둔 여성 중 만 20세~49세 사이에 있는 여성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단, 자녀가 있

라도 미혼인 여성은 제외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미혼 여성의 사례도 소수이고, 이들의 경제활동은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 요약 통계

만0세부터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만 20~49세 기혼 여성의 사례는 조사 연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677건에서 2019년 1,163건까지 늘어난다.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는 2009년을 제외하고 20~30% 정도의 표본에서 확인되었다. 취업 여부는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를 모두 포함하며 40% 정도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취업 상태에 있다. 임금 근로자로 한정하였을 때에 이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2년부터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다⁴⁷⁾.

월평균 소득은 조사연도의 명목소득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3년 이전에는 200만원 미만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200만원을 상회한다⁴⁸⁾.

〈표 VI-3-1〉 요약 통계

단위: 점, 시간, 만원, 건

조사연도	취업여부	임근근로 여부	주당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처치집단	표본 수
2009	0.36	0.29	41.44	189.19	0.44	677
2010	0.40	0.31	40.70	179.31	0.35	668
2011	0.39	0.33	40.54	191.40	0.35	687
2012	0.42	0.33	39.58	191.83	0.31	732
2013	0.39	0.32	38.99	201.04	0.37	930
2014	0.39	0.33	38.49	200.26	0.32	866
2015	0.40	0.33	38.40	210.34	0.33	888
2016	0.43	0.35	38.02	215.03	0.31	842
2017	0.42	0.36	38.12	222.53	0.30	815
2018	0.41	0.34	37.74	220.63	0.29	1,299
2019	0.40	0.34	37.01	225.17	0.27	1,163

주: 취업 여부, 임금근로 여부는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임금근로 상태임.

처치집단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해당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2차년도 low dat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47) 근로시간은 취업자에 한해서만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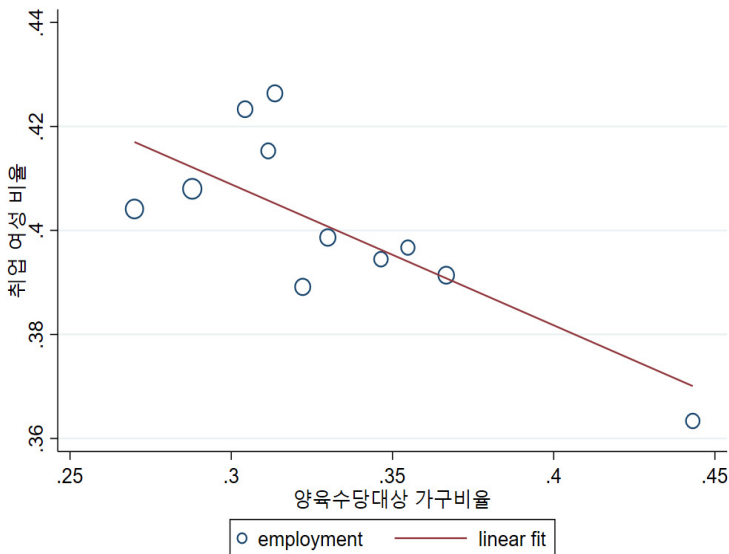
48)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취업자에 한하여 산출함.

나.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 가구 비율과 취업률 간의 관계

본 분석에 앞서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과 취업 여성의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각 조사연도별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 가구가 속한 여성 비율과 취업여성의 비율은 동그라미로 표현했으며, 직선은 이 점들의 linear fit을 나타낸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VI-3-1]을 보면, 가정양육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조사차수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낮아지는 관계를 보인다. 즉, 가정양육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 여성이 많을수록 여성의 취업률은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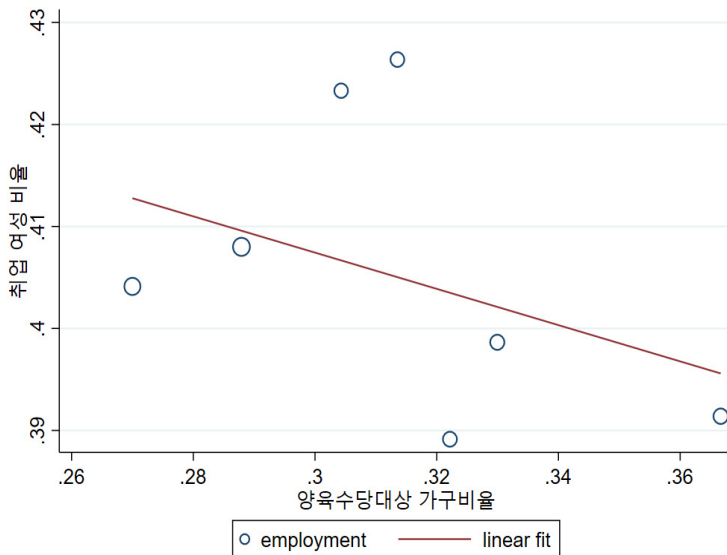
[그림 VI-3-1]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 가구 비율과 취업 여성 비율: 2009~2019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2차년도 low dat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이 그래프를 2013년 이후 자료만으로 표현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그림 VI-3-2 참조).

[그림 VI-3-2]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 가구 비율과 취업 여성 비율: 2013-2019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2차년도 low dat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모형1: Pooled OLS, FE model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회귀식을 고려하였다. 식 (1)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추정을 표현하였다.

$$y_{i,t} = \alpha + \beta_1 D_{i,t} + \beta_2 X_{i,t} + \tau_t + \mu_i + e_{i,t} \quad (1)$$

하첨자 i 는 개인을 나타내고, t 는 조사 연도를 나타낸다. 조사연도는 먼저 2013년-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좌변은 여성의 취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취업상태에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가정양육수당이 만 0세부터 만 6세 미취학 자녀까지의 보편 지급으로 확대된 것이 2013년이므로 이 추정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확대”가 여성의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는 없다. 이 추정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취업 여부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추정한 것이다.

$D_{i,t}$ 는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자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X_{i,t}$ 는 그밖에 여성의 취업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명변수로 나이, 나이제곱, 대학졸업 여부, 남편과 함께 사는지 여부, 미취학 자녀 수, 막내 자녀의 나이를 포함하였다.

τ_t 는 연도 고정효과로 모든 모형에 포함되고, μ_i 는 개인 고정효과로 고정효과모형에서만 포함된다. 표준오차는 개인 단위에서 클러스터링한 군집표준오차 이다.

라.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모형2: 이중차분모형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기 전인 2009년-2012년까지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확대가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설문 구조가 바뀌어 이것이 추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설문 구조의 변화가 추정에 error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은 위의 가구 데이터 비교에서 보인 바 있다.

추정 모형은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였다.

$$y_{i,t} = \alpha + \beta_1 I(t \geq 2013) D_{i,t} + \beta_2 D_{i,t} + \beta_3 I(t \geq 2013) + \beta_4 X_{i,t} + \tau_t + \mu_i + e_{i,t} \quad (2)$$

$I(t \geq 2013)$ 은 2013년 이후를 나타내는 지시함수로 시점이 가정양육수당이 보편화된 2013년 이후이면 1의 값을 가지고 이전이면 0의 값을 가진다.

$D_{i,t}$ 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되면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2012년까지 그리고 2013년부터 보육 관련 사항에 대한 문항이 변경됨에 따라 실제 가정양육을 했는지 여부를 동일하게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만 0세 자녀가 있으면 $D_{i,t}$ 이 1의 값을 가지도록 정의하였다. 이는 만 0세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낼 확률이 적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가정양육수당 지

급대상 여부를 대체한 것이다.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자녀의 나이를 만 0세와 만 1세로 확대하여서도 추정을 실시하였다.

모형1과 동일하게 pooled sample과 개인 고정효과를 포함한 추정을 모두 시행하고, 연도 고정효과는 모든 경우에 있어 포함된다.

마. 종속변수(취업 여부)에 따른 추정한 결과

모형1은 2013년 이후 자료만 이용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자녀를 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취업 확률 격차를 추정한 것이다. (1)열의 결과는 pooled OLS 결과로 개인 고정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이고, (2)열의 결과는 FE 모형 결과로 개인의 비관측 특성이 통제된 결과이다.

〈표 VI-3-2〉 가정양육수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모형1 pooled	(2) 모형1 FE	(3) 모형2 Pooled	(4) 모형2 FE	(5) 모형2 Pooled	(6) 모형2 FE
가정양육수당	-0.240*** (0.018)	-0.070*** (0.013)				
DD (만0세)			-0.068 (0.047)	-0.038 (0.033)		
DD (만0-1세)					-0.026 (0.032)	-0.004 (0.023)
obs	6803	6803	9567	9567	9567	9567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2차년도 low data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pooled OLS 결과,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자녀를 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확률이 24% 더 낮았다. 개인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개인의 비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그 확률이 7%로 낮아진다.

모형2는 이중차분모형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2013년 가정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여성의 취업상태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정한 것이다. (3)열과 (4)열의 결과는 처치집단을 만0세 자녀가 있는 지로 정의한 결과이고, (5)열과 (6)열은 만0세-만1세 자녀 여부로 정

의한 결과이다. (4)열과 (6)열은 개인 고정효과를 포함한 결과이다.

〈표 VI-3-1〉에 제시된 결과는 β_1 추정치이다. 가정양육수당의 보편적 지급은 만 0세 또는 만 1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여성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바. 종속변수(주 40시간 이상 근로 여부)에 따른 추정 결과

다음은 주당 40시간 근로 여부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자녀를 둔 여성의 풀타임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위와 동일한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표 VI-3-3〉 가정양육수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주40시간 이상 근무)

구분	(1) 모형1 pooled	(2) 모형1 FE	(3) 모형2 Pooled	(4) 모형2 FE	(5) 모형2 Pooled	(6) 모형2 FE
가정양육수당	-0.177*** (0.017)	-0.043*** (0.012)				
DD (만0세)			-0.058 (0.046)	-0.052* (0.028)		
DD (만0-1세)					0.006 (0.031)	0.003 (0.021)
obs	6802	6802	9566	9566	9566	566

2013년 이후 자료만으로 추정한 결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풀타임 근로 가능성이 17.7% 낮고, 개인 고정효과까지 포함한 결과 4.3% 낮게 나타났다.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2013년 가정양육수당의 보편적 확대가 여성의 풀타임 근로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개인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에서 가정양육수당의 보편적 확대가 만 0세 자녀를 둔 여성의 풀타임 근로 가능성을 5.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그 외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 결론

본 연구와 유사한 분석을 실시한 김미곤 외(2019)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개인 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가정양육수당 혜택 지수의 증가가 해당 지자체의 기혼 여성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대상 자녀 연령은 만 0-2세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와 분석대상 및 분석범위(지자체 vs 개인), 분석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절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연구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김미곤 외(2019)의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가정양육수당 혜택지수가 높아질수록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가정양육수당 혜택지수 상승에 따른 고용률 감소분이 4.2%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표 VI-3-1>의 (1)열, (2)열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자녀를 둔 여성이 많아질수록 그 지역의 기혼 여성 고용률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약 7% 낮다는 위의 결과와 일부 일관된다. 그러나 김미곤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이 보편화된 2013년 이후로 한정하였을 때에는 가정양육수당의 부정적 효과가 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이후로 한정하여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여성의 고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김미곤 외, 2019)의 분석 결과 모두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또는 확대가 여성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이 소득 대체수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답자 중 일부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을 가정양육수당으로 잘못 인식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미이용자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별도 추출한 자료를 활용한 것,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사례가 적고, 육아휴직 여부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VII

정책 제언

- 01 영유아 가구 현금지원체계 재구조화
- 02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양육지원 체계 구축
- 03 맺는 말

VII. 정책 제언

제 7장에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하여 온 가정양육수당을 비롯한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의 가정양육지원 제도와 현황을 살펴본 결과와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가구의 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심층면담 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지원체계 재구조화, 가정양육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영유아 가구 현금지원체계 재구조화⁴⁹⁾

가. 가정양육수당 제도 개선의 필요성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대체 수단으로 2010년 도입되었고, 2011년에는 0~2세 전계층, 2013년에는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간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주로 지원단가 인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동, 보육 학계에서는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영아의 불필요한 기관 이용을 차단하고, 영유아가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유아 부모들도 기관 이용 영유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육료 수준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어야 하며, 보육료 인상 수준에 맞춰 매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여성계에서는 지원단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

49) 본 보고서는 정부가 만3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의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동 학계와 영유아 부모, 여성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는 0~2세 전계층으로 확대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간 유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양육수당 제도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하락 추세를 보였고, 부모들에게 ‘안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으로 주어 기관 이용을 부촉이게 만들었다. 본 조사에서도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하였고 정책의 도움정도도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2년부터 영아수당(2022년 출생아 월 3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부터는 0,1세 영아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도입으로 그간 0~5세 전 계층에 지원하여 오던 가정양육수당 제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12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으로 축소되었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될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24개월~취학 전으로 더욱 축소된다. 앞서 제시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현황을 보면, 0~11개월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은 91.7%(2021년 기준)로 이 연령대 대부분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연령이 12~23개월로 높아지면 수급률이 57.9%로 떨어지고, 24~35개월 17.4%, 36개월 이상은 6~7%까지 떨어진다는(보건복지부, 2021).

또한 가정양육수당이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된 2013년 이후 추세를 보면, 0~12개월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나, 12~23개월은 71.2%에서 57.9%(△13.3%p)까지 떨어졌고, 24~35개월은 30.5%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17.4%(△13.1%p)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13, 2021). 이는 2012년 무상보육 이후 기관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보육서비스 질 개선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점차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의 현금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주요 정책대상이 제외된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유사 중복 성격의 현금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의 현금 지원정책이 새로이 시행되었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된 데 반해 정책 홍보는 이에 미

치지 못하여 부모들이 이들 정책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현금지원 정책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보장, 부모의 선택권 보장,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의 목적은 상이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단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아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2013년에는 3~4세로 확대한 바 있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 차원에서 3세 이상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3세 이상 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보다는 국가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집·치원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가정양육수당이 해당 자녀의 양육에 쓰이기보다는 가족 생활비와 섞여 지출되고 있었고,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부모 대부분 어린이집·유치원 계획이 있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이상 아동 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보육·교육기관 적극 이용시기로 평균 2.9세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만3세 이상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하는 정책에 대해 24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부모 51.6%가 찬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56.7%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겠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대상을 0,1세에서 2세까지로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일몰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 및 부모, 가구의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만3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도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겠다는 이유로 부모 중 39.9%가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지적인 바 있어 어린이집·유치원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농어촌, 취약지역 등의 인구소멸 지역의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유도하고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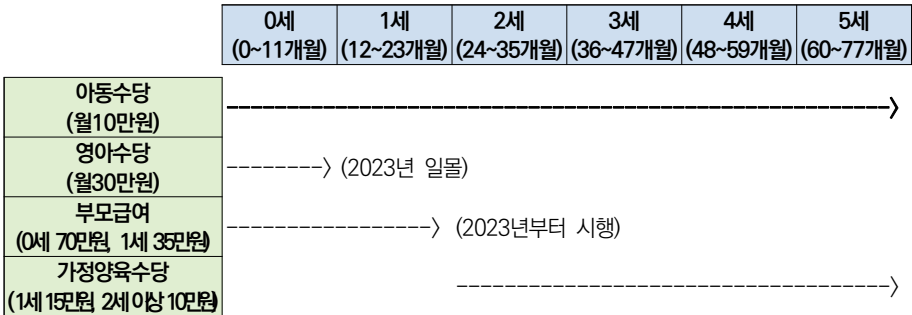
나. 현금지원체계 개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가정내 양육을 활성화하고, 아동가구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0,1세 영아수당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모급여 제도를 발표하였고, 2023년 출생아(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이 지원하고, 20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몇 년간 가정양육수당 외에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의 지원목적이나 지원대상이 유사 중복되는 현금지원정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들은 정작 이들 정책을 제대로 구분하거나 지원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단순화시키고, 정책 수요자 대상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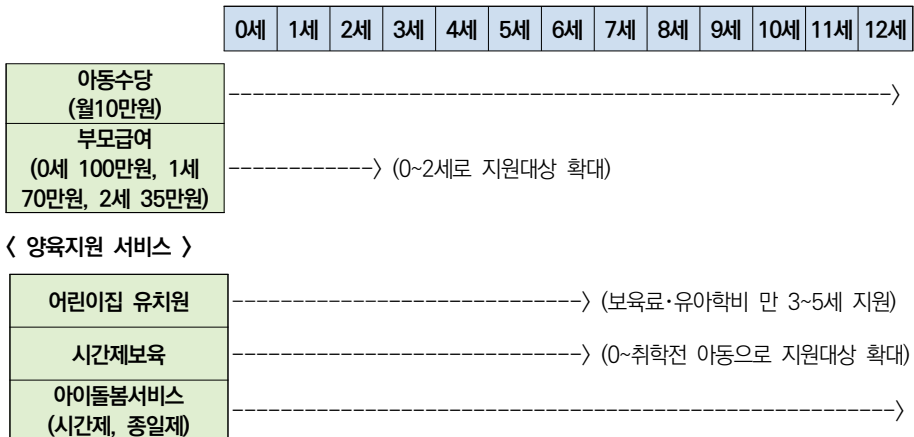
[그림 VII-2-1] 현행 영유아 현금지원체계



따라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하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일몰한다. 부모급여는 0세 100만원, 1세 70만원, 2세 35만원을 지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양육수당 일몰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또래 아동들에 비해 발달이 늦거나 장애 등 개인적 특성이 있는 아동,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조손

가구 등 가구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호주 등과
국의 사례와 같이 특별수당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다.

[그림 VII-2-2] 영유아 현금지원체계 개편(안)



이 외에도 시간제보육 지원대상을 0~35개월에서 취학 전 유아로 확대하고,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문화바우처 등의 양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육 바우처를 대체 지원한다. 단, 현금 대체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월10만원)보다 혜택 수준을 높이고, 각각의 지원 금액을 공시하여 부모 만족도를 높인다.

2.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양육지원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현재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자녀양육정책은 현금지원 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로 영유아의 과도한 기관 이용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의 현금지원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였고, 2023

년부터는 부모급여⁵⁰⁾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나 서비스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집 주변의 자녀양육 지원 인프라 충분성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부모 중 76.0%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을 받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종일제), 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양육 물품 등의 대여서비스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 부모-자녀 체험실 등 영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유아 대상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농어촌 등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거점 형태의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일부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간제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부모의 요구에 따라 기관을 이용하거나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 신청, 결제 등이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아동 발달 특성 상 기관 이용이 바람직한 연령의 아동을 위해서는 질 높은 어린이집·유치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자녀가 24개월 이상인데도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 근처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질 개선을 위해 평가, 컨설팅, 장학, 지도점검,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 또한 저출생 장기화로 어린이집·유치원이 과잉 공급 상태이나 농어촌 등의 취약지역에는 공급 부족 상태이므로 보육·교육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공급해 나간다.

3. 맺는 말

본 연구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의 특성과 어린이집·유치원 이외의 서비스(돌봄 및 교육)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

50) 2023년 영아수당은 일몰되고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됨.

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영유아 가정 양육지원정책 관련 법 및 제도,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현금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포털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나타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과 이미지, 사용처 등을 살펴보았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가구의 특성 및 양육방식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 생애단계별 적정 양 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양육수당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등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 및 제도, 가정양육수당 제도 변화, 지원 실적,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육·교육 비용 규모,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아동 가구의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 개월 이상 취학 전 영유아 부모 총 31명을 대상으로 FGI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자문회의와 간담회 개최하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하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일몰한다. 단, 아동 및 부모, 가구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이 보완적으로 마련한다. 아동 발달 특성 상 기관 이용이 바람직한 연령의 아동을 위해서는 질 높은 어린이집·유치원을 확대한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게 위하여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현금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다. 특히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아수당 지원 제도는 정책 효과를 검증해 보지도 못한 채 2023년 일몰되고 1년 만에 부모급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아동’을 정책의 가장 중심에 놓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8, 2019, 2020,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 고제이·신윤정·강신옥·오미애·안형석(2015).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 교육통계연보 2010.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2011.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연보 2012.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2013.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 2014.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2015.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연보 2016.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2017.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2018.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통계연보 2019.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연보 2020.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2021.
-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김나영·황선영·엄지원(2019).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미곤·고제이·이철희·홍석철·전병옥·여유진·이소영·조성은·전진아·김은정·노용환·서문희·정희정·최은영·김성아·권선정·고경표·서효진(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한국개발연구원.
- 노대명·김대중·김영아·김은경·나병균·박찬용·박혜미·신윤정·심창학·이성애·봉인식(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남.
- 보건복지부(2009). 2009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1a). 201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1b). 2011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2a). 2011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b). 2012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a). 2012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3b). 2013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4a). 2013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4b). 2014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a). 2014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a). 2015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a). 2016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7b). 2017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8b). 2018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c).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8d).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보건복지부(2019a). 2018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9b). 2019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c).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9d).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보건복지부(2020a). 2019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0b). 2020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c). 2020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0d).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보건복지부(2021a). 202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보건복지부(2022a). 2021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c). 2022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d).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보건복지부(2022f).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관련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년 3월 31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572> (2022. 5.10. 인출).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송다영(2006). 핀란드의 가족정책-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s)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50-353.
- 송다영·박은정(2019).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4, 93-135.
- 신윤정·박세경·최성은·김필숙·최은영(2007).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이현주·김태완·최성은·최숙희·권지은·이수형(2009). 양육수당 도입방안

- 마련.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혜진(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손창균·김태우(2016). 기관 미이용 아동 가구의 보육정책 인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신윤정·최윤경·이운진(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이운진·손창균·김정민(2016). 2016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이재희·김혜진(2020).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최은영·김영민(2020). 보육료 합리화 및 가정양육지원체계 마련. 충청남도·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3호.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jsessionid=tWD9-7vCkX2k1hmTVL8T6+-p.mogef10?mid=news400&bbtSn=708334 (2022. 7. 6. 인출).
- 여성가족부(2016). 2016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Ⅲ-1).
- 여성가족부(2017). 2017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Ⅲ-1).
- 여성가족부(2019).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여성가족부(2022).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1).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 윤승희(2015).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1-24.

-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II) -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이채정(2017).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이혜원(2013).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은영(2012).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최현수·최준영·이경진(2012). 2013년 양육수당 확대 개편에 따른 선정기준 조정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육진흥원(2021).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내부자료.
- 홍승아·김은지·선보영(2013). 가정내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양육수당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류연규·김수정·정희정·이진숙(2008). 일가정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Hiilamo, H., & Kangas, O. (2003).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Political frames in the making of child home care allowance in Finland and Sweden. paper for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 The role for social policy. November, Copenhagen.
- Leira, A. (2006). Parenthood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1970s-2000s. In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pp. 27-52). Policy Press.
- OECD (2021a). Family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AMILY> (2022. 6. 10. 인출)

OECD (2021b).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2022. 10. 28. 인출)

Repo, K. (2010). Finnish child home care allowance-users' perspectives and perceptions. in Jorma Sipila and Katja Repo and Tapio Rissanen (ed), cash for childcare : the Consequence for caring mothers, Edward Elgar Pub.

[홈페이지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01&lsiSeq=237515#> (2022. 5. 10. 인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120대 국정과제 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https://www.opm.go.kr/opm/info/government04.do> (2022. 5. 10. 인출).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2022. 3. 29일자. 정책사용설명서 아동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원대상·혜택은?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86109829> (2022. 10. 30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사업소개, 사업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2&MENU_SITE_ID=FRONT&SEQ=16 (2022. 2. 22 인출).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 (2022. 5. 30. 인출).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aide-au-recouvrement-des-pensions-alimentaires> (2022. 6. 14. 인출).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carte-familles-nombreuses> (2022. 6. 14. 인출).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llocation-de-base-ab> (2022. 6. 14. 인출).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llocation-de>

- rentree-scolaire-ars (2022. 6. 14. 인출).
-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llocation-de-soutien-familial-asf> (2022. 6. 14. 인출).
-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 (2022. 6. 10. 인출).
-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ime-l-adoption> (2022. 6. 14. 인출).
-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ime-la-naissance> (2022. 6. 14. 인출).
-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complement-de-libre-choix-du-mode-de-garde-cmg> (2022. 6. 14. 인출).
-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complement-familial-cf> (2022. 6. 14. 인출).
- 프랑스 가정수당기금(CAF)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s-enfants-en-garde-alternee> (2022. 6. 14. 인출).
- 프랑스 행정부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4> (2022. 6. 10. 인출).
-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joustava-hoitoraha> (2022. 6. 10. 인출).
-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joustava-hoitoraha-maara-ja-maksaminen> (2022. 6. 10. 인출).
-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kotihoidontuki#monikko-per-5> (2022. 6. 9. 인출).
-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kotihoidontuki-maara-ja->

maksaminen (2022. 6. 9.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osittainen-hoitoraha#monikkoper-8> (2022. 6. 11.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osittainen-hoitoraha-maara-ja-maksaminen> (2022. 6. 11.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yksityisen-hoidon-tuki#yhden-vanhemman-per-6> (2022. 6. 11.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yksityisen-hoidon-tuki-maara-ja-maksaminen> (2022. 6. 11.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KESS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2022. 4. 30. 인출).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한국노동패널 1-22차년도 유저가이드,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2&key=151> (2022. 9. 10. 인출).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데이터다운로드, 자료추출 시스템, <https://www.kli.re.kr/kli/login.do?key=116&TARGET=%2Fklips%2FselectBbsNttList.do%3FbbsNo%3D98%26key%3D526> (2022. 9. 10. 인출).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데이터가이드, 설문지,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41&key=149> (2022. 9. 10.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 tat1.do> (2022. 4. 30.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https://jumin.mois.go.kr> (2022. 4. 30. 인출).

[신문기사]

대구 둘째셋째 출산장려금 사라졌다(매일신문, 2022. 1. 16일자 기사)

생일 하루 차이로 2년간 360만원 덜 받아"...영아수당이 뭐길래(머니투데이, 2021.11.9.일자 기사)

출산장려금 '해남의 역설'... 지원금 받고 36%가 5년내 떠나더라(중앙일보 2022.3.15.일자 기사)



Abstract

Home Care Allowance Support Statu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Misun Yang, Nayoung Kim, Eun Jung Park, Miae Oh, Shinyeong S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receiving support of home care allow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childcare programs and education services other than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home care allowance support policy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urthermore, the purpose is to review the current childcare support system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support system for each child's growth stage.

To achieve this purpose,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laws, systems and previous overseas researches related to home care allowance, statistical data on children receiving home care allowance were analyzed, surveys on households receiving home care allowance were conducted, and big data analysis, in-depth analysis of FGI, meetings and advisory meeting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a survey of households receiving home care allowance for 24 months or more, the use of home care allowance support mostly began at birth but stopped at around age 3 or older due to the use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then for the purpose of private education such as English academies. There was a persistent dis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home care allowance.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home care allowance i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parents' right to choose, this was used for the living expenses of the entire family rather than for the cost of

raising the recipient child, and expenditures were in the order of food, essential living expenses, medical expenses, children's insurance, children's savings, and apartment application.

In addition, among children aged 24 months or older who received home care allowance, more than half of them planned to use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and 23.9% did not, with 31.4% going to kindergarten, 31.3% to daycare center, and 13.3% to both facilities. More than 30% of children from less than 24 months of age used private academies, tutors, and study materials, and 23.6% of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answered that the childcare support infrastructure is sufficient.

Most of them chose 3 to 4 years of age as the appropriate starting time for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the average was 2.9 years old. 51.6% of the households receiving the 24-month care allowance were in favor of the plan not to support the home care allowance for children aged 3 or older, and the rest were against it. 56.7% of those aged 3 or older were willing to send to a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if the support for home care allowance stopped, and those who were not willing to answered that it was because 39.9% were dissatisfied with the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service, 18.2% were burdened as they have to pay additional monthly fees for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and 10.3% preferred English education, and 8.3% selected private academies as it was suitable for prior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As a policy measure, recipients of parental benefit support, that is implemented from 2023, should be expanded from current children aged 0, 1 years to 2 years old, and review removal of the home allowance support policy. However, addi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who have difficulty using daycare centers/kindergarte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ents, and households should be supplementarily prepared, an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use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for childre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low-income families, and to solve blind spots in infrastructure in areas

where population is disappearing such as rural areas and vulnerable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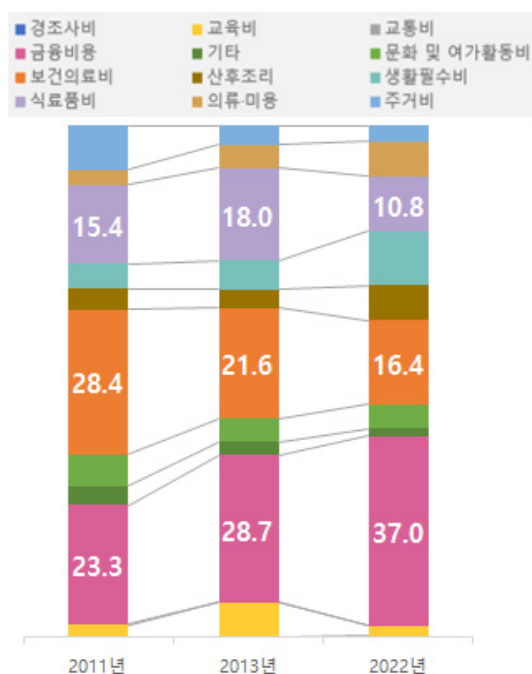
In recent years, cash subsidies policies that have similar and overlapping support purpose and recipients such as child allowance and infant allowance have been introduced in addition to the home care allowance. However, since beneficiaries of these policies could not properly distinguish between these policies or know exactly about the contents of suppor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olicies and increase publicity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policies.

Cash subsidies such as infant allowance and parent allowance can be used to expand childcare support services that can alleviate parents' burden on childcare such as childcare support program (full day), part-time childcare, and rental services such as toys, books, and childcare items. The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is already providing services centered on infants, such as rental of toys and books, and parent-child experience centers, so services for toddlers should be expanded. Furthermore, measures to operate childcare support centers in the form base centers such as branch offices for areas with difficult access such as rural areas should be reviewed.

Keyword: Home Care Allowance, Child Care Support System

부록 1. 빅데이터 추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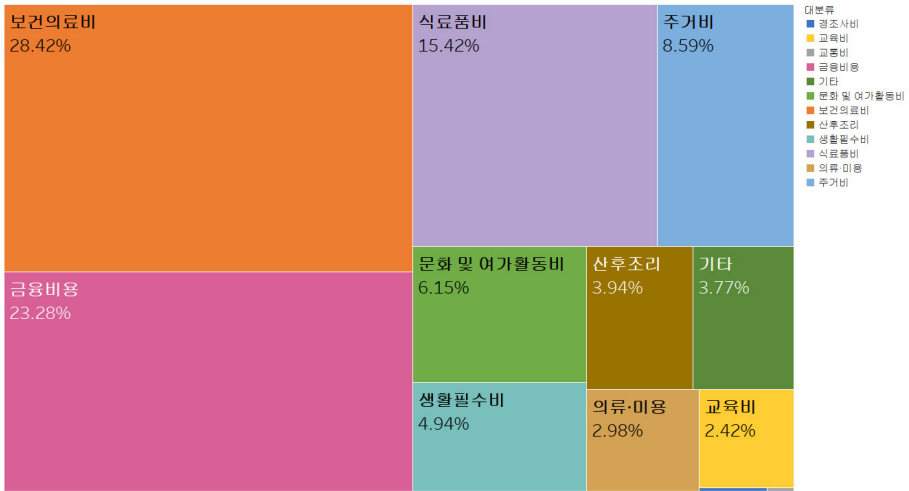
[부록 그림 IV-3-1] 가정양육수당 관련 전체 채널 사용처 연금 비중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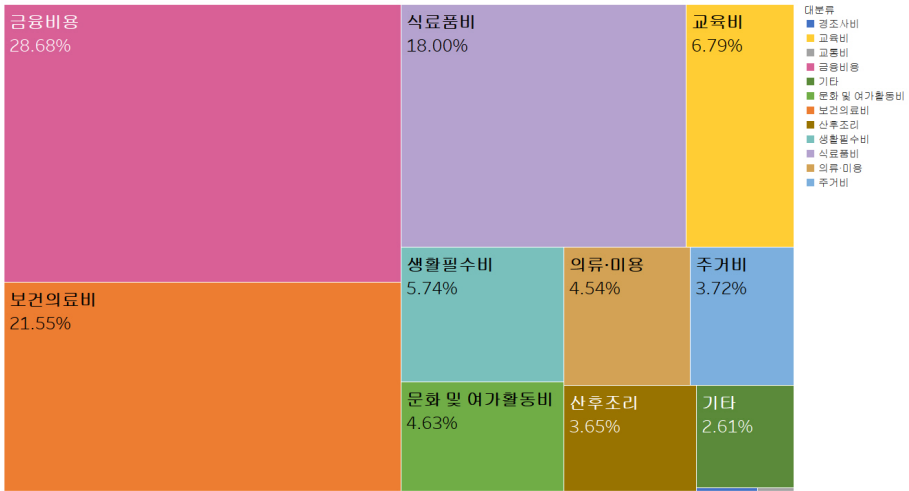
[부록 그림 IV-3-2] 가정양육수당 기간별 사용처 변화: 2011, 2013, 2022

<2011_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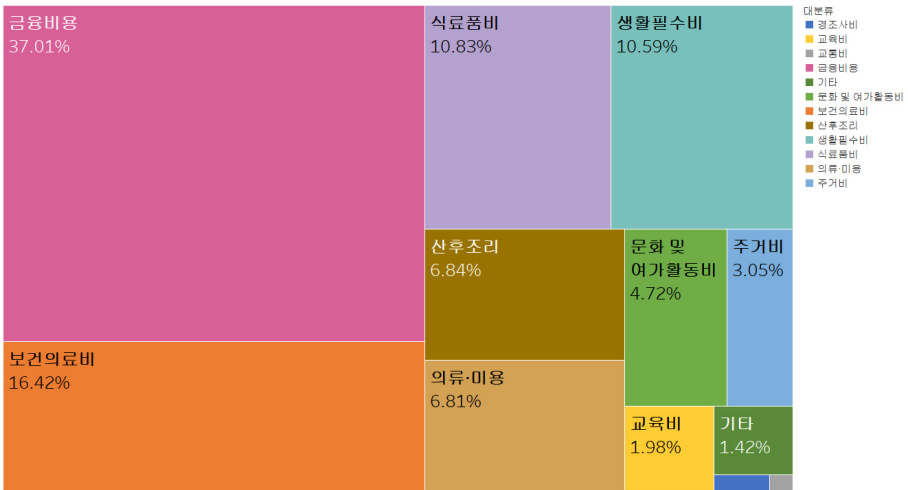
대분류and% of Total 합계 : 2011연금항. Colour shows details about 대분류. Size shows sum of 합계 : 2011연금항. The marks are labelled by 대분류and% of Total 합계 : 2011연금항.

<2013_양육수당>



대분류and% of Total 합계 : 2013연금항. Colour shows details about 대분류. Size shows sum of 합계 : 2013연금항. The marks are labelled by 대분류and% of Total 합계 : 2013연금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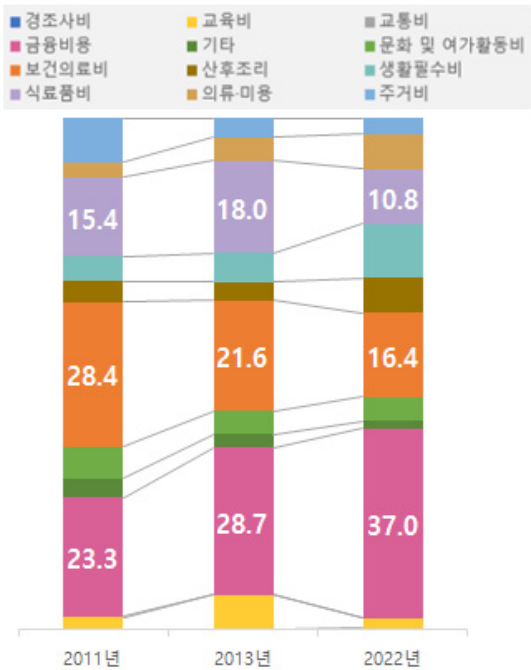
<2022_양육수당>



대분류and% of Total 합계 : 2022연금항. Colour shows details about 대분류. Size shows sum of 합계 : 2022연금항. The marks are labelled by 대분류and% of Total 합계 : 2022연금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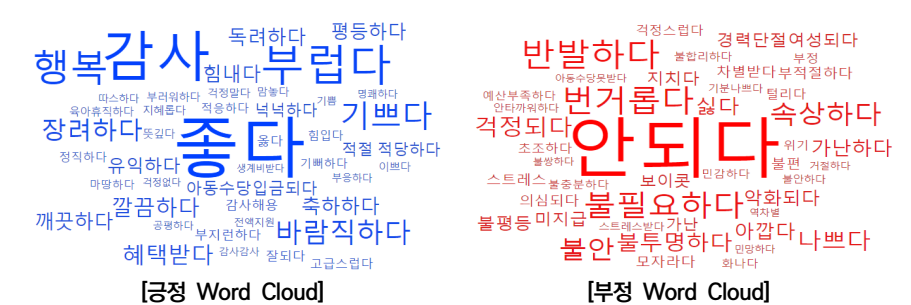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부록 그림 IV-3-3] 아동수당 관련 전체 채널 사용처 언급 비중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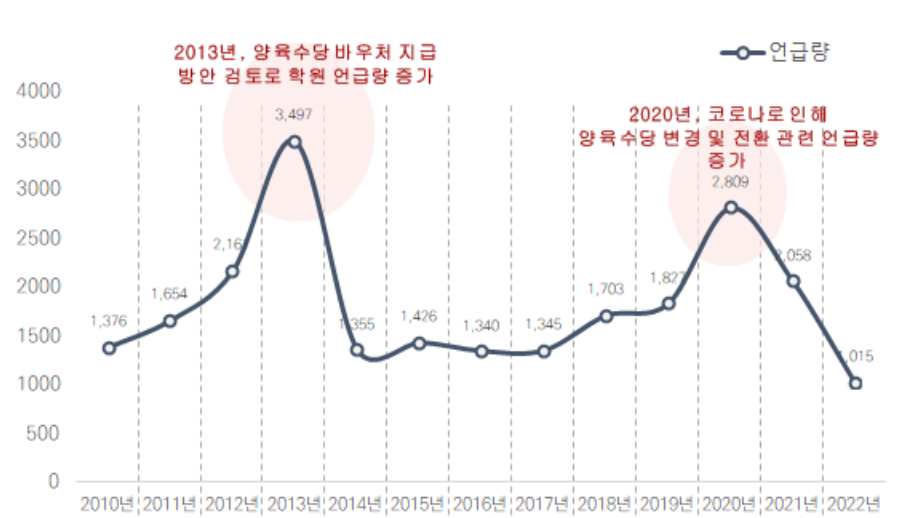
[부록 그림 IV-3-4] 2018년(아동수당 도입 시기) 긍·부정 분석 결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가. 카페 채널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언급

[부록 그림 IV-5-1]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언급량 변화 추이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부록 표 IV-5-1〉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관련 문서 발생량

단위: 건, %		
사용 키워드	문서발생량	비중
유아체능단, 놀이학교	229	1.0
학원	2,347	10.0
학습지	464	2.0
영어유치원, 영유	6,475	2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관련 언급 분석 결과, 다양한 종류의 학원(영어유치원, 미술학원, 유아체능단 등)에 대한 언급이 커뮤니티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카페 채널 문서 총 23,566건 중 카페 문서수는 16.0%를 차지한다.

“전환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월 열집 결제하고 삼월 달부터 양육 수당을 받으려면 몇 일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15 일날 대부분 열집 비용 결제 하잖아요. 요게 그 달 일일부터 말일까지 수업료 인가요.” 2013-12-10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다르지 않나요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아동있으면 다 주는 거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다니는 친구들 받는 거로 알아요. 기관 다니는 친구들에겐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되고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 사실 학원이니까 양육수당 지금 대상이 아닐지...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 몰겠네요^^;.” 2022-04-13

“전 광주 ecc생기기 전에 분당 ecc다녔어요 분당 ecc원장님이 광주에도 개원하신거예요. 영유는 어학원이라 나라지원금 없어서 양육수당 으로 전환신청 하셔야 해요.” 2018-09-29

“놀이학교는 학원 분류라 지원금 안나와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받으시고 더 보태서 수업료 내셔야하는데 100 넘을거예요. 어린이집은 보육료 100프로 지원돼서 부모부담금이 엄청 적어요^^.” 2018-07-26

“영유는 유아 영어학원이라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예요. 그래서 양육수당 가정보육 으로 전환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면 돼요.” 2020-03-11

“국제유아체능단 대기하다가 강서유아체능단에 한자리 났다는 연락 받고 등록했어요. 수업료는 3개월에 99만원식비, 교재비 등은 별도구요. 한 달 평균 대략 55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다니면 나라에서 유치원 지원금 대신 양육 수당 10 나오니... 비용은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수업 내용은 수영은 주 3회, 영어는 주 5회 교재 튠튼영어, 줄넘기, 인라인 스케이트, 태권도, 발레 등은 주 1회, 뮤지컬 퍼포먼스에 인성교육까지.” 2016-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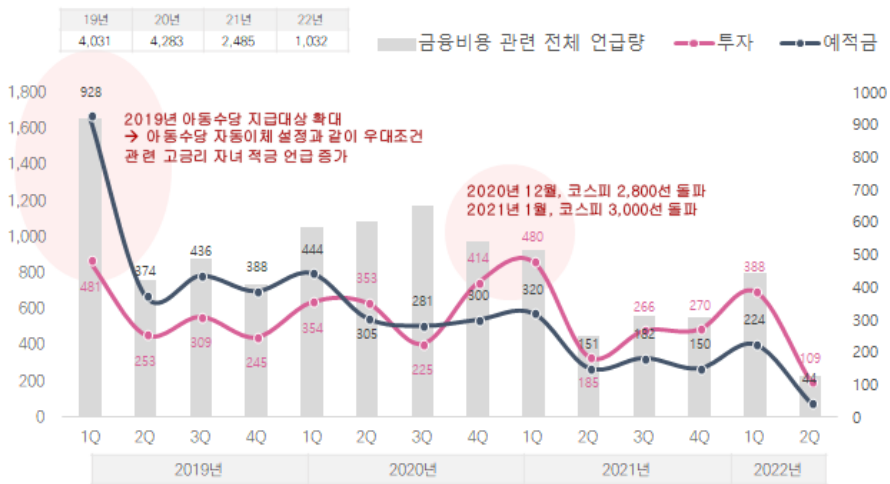
나. 카페 채널 아동수당 금융비용 관련 언급

〈부록 표 IV-5-2〉 아동수당 금융비용 관련 문서 발생량

단위: 건, %		
사용 키워드	문서발생량	비중
투자	주식	1,339
	펀드	584
	투자	2,045
	배당	489
	청약	1,756
	재테크	251
예/적금	예금	591
	적금	4,2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부록 그림 IV-5-2〕 아동수당 금융비용 관련 문서 발생 추이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임.

카페 채널 문서 총 77,146건 중 금융비용 관련 언급 카페 문서 수는 15.0%를 차지한다.

“투자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은 주식 많이 하시더라구요. 영아, 아동 수당 전부 다 투자하시나요.”
2022-04-25

“저도 주식한다면 미국주식으로 하려고 했어요ㅋㅋ 영아, 아동수당 전부 다 투자하시나요.”
2022-04-25

“아동수당 주식계좌로 자동 입금되구요.. 친척들 주시는 용돈이나 새배돈 등 모두 아이의 주식계좌로 입금해서 우량주 위주로 매수하고 있어요. 나중에 성인되면 선물로 주려요.”
2022-04-16

“29개월 주식 1300만원 있네요. 아동수당 같은거랑 친척용돈 모아졌어요.”
2022-04-29

“18년생 아동수당 500만원 청약 이용 근데 둘째는....통장도 못 만들었네요.”
2022-02-05

“저는 cma에 넣어두고 아동수당, 각종 양가 생일이벤트축하금 등 펀드나 etf 같은거 넣어 주고있어요.”
2021-11-07

“알아보시면 아기 적금 중에 금리 높은게 있어요!! 아동수당 10만원 매달 들어오는 걸 엄마 입출금 통장으로 받고, 그 수당으로 매달 아기 적금 통장 들어가게 하면 조건 좋은 그런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2021-09-17

“저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용돈 모두 다 적금해요. 거치식. 청약. 자유 등.” 2021-08-26

“취학 이전인 7세까지 매월 받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은 펀드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재테크 상품을 활용해 아이의 미래를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수 있어요. 더불어 자녀와 함께 매달 적립금액과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대화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금융, 재테크 쉽게 받아들이고 성공할 수 있어요.”
2020-10-15

“막 돌 지났네요^^적금 예금 청약 하나씩 들까하는데요. 잘 알 못이라. 얼마씩 들고 계실까요 알아보니까1.새마을금고 5프로짜리 1년 적금 있던데.. 이걸 꼭 줄서서 하는 건가요 2.그거 아니면 주거래은행으로 들면되나요 3.아니면. 아동수당 연계해두면 이자 더 쳐주고 그러는 곳이 있나요? 팁좀 주세요 선배맘님들.”
2020-06-28

다. 카페 채널 영아수당 관련 인식 VoC

1) 영아수당에 대한 인식

“안내문에 영아수당이 있으니 헛갈려서요.” 2022-03-19

“저도 헛갈려서 꼼꼼히 알아봤는데, 22년생부터 수당 제도가 바뀌어서 24개월 전까지는 영아수당 30, 아동수당 10이 맞고요, 24개월부터는 아동수당 10에 양육수당 10이에요. 전기 세는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어서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2022-04-26

“아동수당1인 10만원 동일한 거로 알아요. 올해 애기 태어난 영아수당1인30으로 헛갈리신

건 아닌가 싶네요.”

2022-02-10

“안녕하세요 ㅎㅎ 2022년 수당에 대해서 헛갈려서 글을 남겨 봐요. 양육수당이랑 영아수당이랑 합쳐진건가요 아니면 따로인 건가요.”

2022-03-17

“2022년 2월 출생아가 mam입니다. 3월에 출생신고하고 오늘 첫 월급받는 날인데요. 새벽에 아동수당으로 20만원 입금되어있네요. 아동수당이 아니고 영아수당 아닌가요. 그리고 출생 신고하면서 수당 이것저것 신청했는데, 양육수당은 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용어도 헛갈리고 물어볼데도 없어서 답답하네요.”

2022-03-17

“올해 1월 둘째 출산해서 영아수당이랑 아동수당은 다른계좌로 따로 들어오는데 둘 다 엄마명의 계좌 행복키움수당은 기존에 첫째 신청한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고 주민센터에선가 전화왔어서 같은 계좌로 받고는 있는데 돈이 섞여서 헛갈려서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

2022-04-01

“22년 출산예정 mam입니다. 참고로 전남mam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침이라 그런지 헛갈려서요. 영아수당, 산후조리서비스지원이랑은 별개인 거죠?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남 도단위 출산지원금도요.”

2022-01-02

2) 영아수당 소급 적용, 중복 지원, 수령금액 등

“저도 유성구인데 새벽1시쯤 영아수당만 들어왔어요! 3월생인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된 건지.”

2022-04-25

“네넵 아동수당은 소급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영아수당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부터 해당이 돼요!! 저희 집에도 둘째가 있어서 물어봤었던 거 같아요.”

2022-03-19

“혜택도 다 소급 지원되어요. 영아수당 아동수당이요.”

2022-02-03

“영아수당 아동수당 중복 지급이에요.”

2022-01-01

“양육수당이 올해부터 영아수당으로 바뀐 거예요 금액도 달라지고 같은 거라서 중복 안 나와요 영아수당 아동수당 받는 거고 어린이집 가면 아동수당만 나와요.”

2022-01-04

“영아수당30 아동수당10 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2-01-13

“경기도면 다문화아이 담임일 때만 5만원 받는 거고 영아수당이랑 중복으로 받지 못해요. 보조는 해당되지 않아요.”

2022-01-12

“양육수당 영아수당은 보육료 대체 수당이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기관 보내면 안 나와요.”

2022-02-28

“영아수당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2022-03-25
“맘님들 전라북도 전주 영아수당 아동수당 얼마씩 입금되나요.”	2022-04-25

부록 2. 부록 표

1.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가구 조사 표본 배분

〈부록 표 V-1-1〉 가정양육수당 표본 배분

단위: 명

시도		24~35개월	36개월 이상(취학전)	합
전국		754	1,246	2,000
서울		79	176	255
부산	시/구	42	80	122
	군	11	16	27
대구	시/구	33	58	91
	군	14	15	29
인천	시/구	45	73	118
	군	7	10	17
광주		29	46	75
대전		28	47	75
울산	시/구	23	46	69
	군	11	16	27
세종		18	31	49
경기	시/구	99	176	275
	군	12	17	29
강원	시/구	24	35	59
	군	13	17	30
충북	시/구	26	40	66
	군	13	16	29
충남	시/구	31	44	75
	군	13	17	30
전북	시/구	25	37	62
	군	10	14	24
전남	시/구	22	29	51
	군	17	21	38
경북	시/구	30	43	73
	군	14	17	31
경남	시/구	37	61	98
	군	11	16	27
제주		17	32	4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4개월 ~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가구 조사 표본 산출한 결과임.
보건복지부(2022f).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관련 내부자료.

2. 표본 요약 통계

〈부록 표 V-2-1〉은 조사 표본 중 만 0세-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수와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되는 아동 수, 그리고 그 비율을 나타낸다.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아동이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일 수 있으므로 위 수치는 가구 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013년과 이전과 이후의 보육 관련 조사 구성이 달라졌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록 표 V-2-1〉 조사 표본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수와 양육수당 대상이 되는 아동 수
단위: 명, %

연도	양육수당 대상	전체 미취학 아동수	비율
2009	350	889	0.39
2010	276	891	0.31
2011	280	911	0.31
2012	264	984	0.27
2013	413	1380	0.30
2014	348	1302	0.27
2015	356	1314	0.27
2016	322	1256	0.26
2017	291	1188	0.24
2018	437	1852	0.24
2019	365	1612	0.23

자료: 한국노동패널 12차-22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부록 표 V-2-2〉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의 성비

단위: 명, %

연도	남자	여자	양육수당대상	남자비율
2009	193	157	350	0.55
2010	153	123	276	0.55
2011	147	133	280	0.53
2012	135	129	264	0.51
2013	227	186	413	0.55
2014	186	162	348	0.53
2015	200	156	356	0.56
2016	172	150	322	0.53
2017	143	148	291	0.49
2018	202	235	437	0.46
2019	170	195	365	0.47

자료: 한국노동패널 12차-22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부록 표 V-2-2〉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되는 아동의 성비를 나타낸다. 남성 아동은 2016년까지 50% 이상이었으나 2017년부터 50% 미만에 불과하다. 성비가 크게 차이나는 않는다.

〈부록 표 V-2-3〉은 연령별 구성을 나타낸다. 만 1세, 만 0세, 만 2세 순으로 많다.

〈부록 표 V-2-3〉 가정양육수당 대상 연령별 구성

단위: 명

연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합계
2009	3	19	31	54	48	88	107	350
2010	5	7	28	40	62	50	84	276
2011	3	12	21	38	51	77	78	280
2012	3	14	14	21	42	60	110	264
2013	107	175	78	26	11	9	7	413
2014	63	142	88	28	9	14	4	348
2015	84	153	70	20	11	4	14	356
2016	61	128	93	22	8	4	6	322
2017	51	124	76	23	5	7	5	291
2018	108	170	82	29	18	13	17	437
2019	90	125	67	30	21	21	11	365
합계	578	1069	648	331	286	347	443	3,702

자료: 한국노동패널 12차-22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부록 표 V-7-1〉 자녀양육지원 정책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아동수당,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정책	계(수)
전체			100.0(138)
유아교육 분야	50.0	50.0	100.0(48)
보육 분야	55.1	49.9	100.0(60)
연구기관 등 정책 분야	70.5	29.5	100.0(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내 양육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V-7-2〉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가정양육수당 인상 vs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단위: %(명)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다소 중요	동등	다소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계(수)
전체	8.7	28.3	6.5	17.4	6.5	26.1	6.5	100.0(138)
유아교육 분야	6.3	18.8	-	25.0	18.8	25.0	6.3	100.0(48)
보육 분야	10.0	35.0	10.0	15.0	-	25.0	5.0	100.0(60)
연구기관 등 정책 분야	10.0	30.0	10.0	10.0	-	30.0	10.0	100.0(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내 양육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V-7-3〉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가정양육수당 vs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단위: %(명)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다소 중요	동등	다소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계(수)
전체	4.3	17.4	19.6	15.2	13.0	21.7	8.7	100.0(138)
유아교육 분야	0.0	6.3	25.0	25.0	6.3	31.3	6.3	100.0(48)
보육 분야	5.0	25.0	25.0	15.0	10.0	10.0	10.0	100.0(60)
연구기관 등 정책 분야	10.0	20.0	0.0	0.0	30.0	30.0	10.0	100.0(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내 양육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표 V-7-4〉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vs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단위: %(명)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다소 중요	동등	다소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계(수)
전체	2.2	19.6	23.9	23.9	10.9	17.4	2.2	100.0(138)
유아교육 분야	6.3	12.5	12.5	31.3	12.5	25.0	0.0	100.0(48)
보육 분야	0.0	20.0	35.0	15.0	15.0	10.0	5.0	100.0(60)
연구기관 등 정책 분야	0.0	30.0	20.0	30.0	0.0	20.0	0.0	100.0(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내 양육지원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임.

부록 3.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자녀양육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정부로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및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양육 비용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통계 자료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표 종류	시도	조사구 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①구/동 ②시/동 ③군
1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읍면·동 _____로 _____길		
응답자의 아동과의 관계	☐ ① 모 ☐ ② 부 ☐ ③ 조부모 ☐ ④ 기타()		
조사담당자		조사표 작성일	2022년 월 일

▣ 조사대상 판별 문항

1. 귀댁의 자녀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1-1. 2020년 8월 이전에 태어난 자녀 중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2. 귀댁 자녀 중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등을 '나이 어린 자녀'부터 적어 주십시오.

※ 문항 1-1 응답에 따라 응답 란 자동 생성

1) 아동 번호	01(막내)	02	03
2)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2019년 8월 이전만 입력 가능)	년 월	년 월	년 월
3)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4) 출생순위는 몇 번째입니까?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5)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건강함 ② 질병 있음 ③ 장애(법정) 있음 ④ 장애(법정)와 질병 있음			

〈표 1〉 출생년월별 개월수 환산표 및 연령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만5세	2016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69	68
만4세	2017	67	66	65	64	63	62	61	60	59	58	57	56
만3세	2018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만2세	2019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만1세	2020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0세	2021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0세	2022	7	6	5	4	3	2	1	0	0	0	0	0

※ Ⅰ ~ Ⅴ까지는 2020년 8월 이전에 태어난 자녀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합니다.

(2016년 1월부터 ~ 2020년 8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 가정양육수당 받는 아동 모두 조사)

I.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에 관한 질문

※ 20 년 월(자동 생성) 생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____년 ____월 생 자녀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적어 주십시오.
- 1차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2차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2. ____년 ____월 생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집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은 있으나 믿고 보낼만한 질 높은 기관이 없어서
② 어린이집·유치원이 집에서 멀어서(접근성 문제)
③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보내려고
④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냈으나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서
⑥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내는 부모 부담 비용(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이 부담돼서
⑦ 의사소통 가능한 연령이 되면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려고
⑧ 아이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염이 우려되어 ⑩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아 기다리려고
⑪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⑫ 기타()
3. ____년 ____월 생 자녀가 현재(2022년 8월 기준) 가정양육수당을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 ① 월 20만원 ② 월 15만원 ③ 월 10만원
4. ____년 ____월 생 자녀가 정부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35개월 10만원, 36개월~79개월 10만원
- ① 매우 적절 ② 적절 ③ 부적절 ☞ 문항 4-1로 ④ 매우 부적절 ☞ 문항 4-1로
- 5-1. (지원단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월 ()만원

5. 년 월 생 자녀가 매달 지원받은 가정양육수당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을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	---------------------

- ①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② 자녀 저금 및 주택 청약 ③ 자녀 보험비
- ④ 주식 또는 펀드 ⑤ 식료품비(분유, 이유식, 간식 등) ⑥ 생활필수비(기저귀, 젖병 등)
- ⑦ 아동 의료비 ⑧ 문화 및 여가활동비(도서, 공연비, 문구류 등) ⑨ 가족 전체 생활비
- ⑩ 기타()

6. 정부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이 자녀양육 비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 ② 어느 정도 도움 ③ 별로 도움되지 않음 ④ 전혀 도움되지 않음
 문항 6-1로 문항 6-1로

- 6-1.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정부로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도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양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금, 주식 또는 펀드 등에 적립하고 있어서
- ② 아이한테 드는 비용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어서
- ③ 가족 전체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 ④
- ⑤ 기타()

II.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관한 질문

1. 년 월 생 자녀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이용 경험 있음 문항 3로 ② 이용 경험 없음 문항 2로

II-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경험 없는 경우

2. 년 월 생 자녀를 앞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어린이집에 보냄  문항 2-1로 ② 유치원에 보냄  문항 2-1로
③ 어린이집·유치원 둘다 보냄
④ 아무데도 안 보냄  **Ⅲ. 학원 등 사교육기관 이용에 관한 질문으로**

- 2-1. (④ 아무데도 안 보냄)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사교육 기관에 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2-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 있는 경우) 이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언제부터 보낼 계획입니까? (※ 문항 2에서 ③ 어린이집·유치원 둘다 보냄 응답할 경우에는 각각 응답하도록 설정)

① 어린이집 ()년 ()월부터

② 유치원 ()년 ()월부터

2-3. ____년 ____월 생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 모두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서 ② 모가 미취업 상태이나 다른 일로 바빠서
 ③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④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어서
 ⑤ 아동 발달을 위한 교육을 위해 ⑥ 주위에 놀이 상대가 없어서
 ⑦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⑧ 기타()

II-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경험 있는 경우

3. ____년 ____월 생 자녀가 이용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어린이집 ☐ 문항 3-1로 ② 유치원 ☐ 문항 3-2로
 ③ 어린이집, 유치원 둘다 이용 ☐ 문항 3-1, 문항 3-2로

3-1. (어린이집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자녀가 이용한 어린이집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이용한 어린이집 유형이 다양한 경우에는 모두 ✓표해 주십시오.

-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③ 민간어린이집
 ☐ ④ 가정어린이집 ☐ ⑤ 법인단체어린이집 ☐ ⑥ 직장어린이집
 ☐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3-2. (유치원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자녀가 이용한 유치원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이용한 유치원 유형이 다양한 경우에는 모두 ✓표해 주십시오.

- ☐ ① 공립유치원 ☐ ② 사립유치원

4. ____년 ____월 생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항 3에서 ③ 어린이집 유치원 둘다 이용 응답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각각 이용 이유를 답해 주십시오.)

- ① 생업(취업, 자영업) 등으로 직접 돌보기 어려워서 ② 모가 미취업 상태이나 다른 일로 바빠서
 ③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④ 보육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⑤ 아동 발달을 위한 교육을 위해 ⑥ 주위에 함께 돌 상대가 없어서
 ⑦ 기타()

5.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습니까? 이용 경험이 다양한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 어린이집, 유치원 둘다 이용 시 각각 적어 주십시오.)**(자동생성)**
예: 2020년 1월부터 2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두 번에 걸쳐 이용한 경우에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간으로 응답해 주세요.
- 1) 어린이집 ()년 ()월부터 ()년 ()월까지
2) 유치원 ()년 ()월부터 ()년 ()월까지

Ⅲ. 학원 등 기관 이용에 관한 질문

1. 년 월 생 자녀가 학원 또는 방문과외, 학습지 등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합니까?

① 이용 ② 미이용

☞ 문항 1-1로 ☞ IV.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

1-1. 학원 또는 방문과외, 학습지 등의 교육서비스를 언제부터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생후 ()년 ()개월 부터

2. 년 월 생 자녀가 다니는 학원 또는 방문과외, 학습지 등의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학원, 학습지 광고 □ ② 맘카페 및 블로그 □ ③ SNS 이용 후기

□ ④ 친구 또는 지인 □ ⑤ 이웃 주민 □ ⑥ 형제자매

□ ⑦ 기타() ⑧

3. 년 월 생 자녀가 현재(2022년 8월 기준) 이용하는 교육서비스를 모두 ☒표해 주십시오.

□ ① 문화센터 □ ② 반일제 학원 □ ③ 시간제 학원

☞ 문항 4-1로 ☞ 문항 4-1로 ☞ 문항 4-1로

□ ④ 학습지(방문형,비방문형) □ ⑤ 개인 및 그룹 과외 □ ⑥ 교재 활용 교육

□ ⑦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⑧ 기타()

4-1. 년 월 생 자녀가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① 매일 ② 주 3~4회 ③ 주 1~2회 ④ 격 주 ⑤ 월 1회

4-2. 년 월 생 자녀가 교육기관(학원, 문화센터 등)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① 자녀가 원해서 ② 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④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

⑤ 남들이 다 해서 ⑥ 주변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⑦ 부모 퇴근시간까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⑧ 기타()

4-3. 년 월 생 자녀가 교육기관(학원, 문화센터 등)에 다니는 비용으로 한달에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월 ()만원

- ① 문화센터 : 백화점, 마트, 공공기관(박물관, 도서관 등)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② 반일제 학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곳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 보육하는 학원 유사한 기관 이용(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 ③ 시간제 학원 : 시간제로 운영하는 학원
- ④ 학습지 : 정기적으로 유료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학습지와 선생님 방문, 학습지 가정 배송 모두 포함
- ⑤ 개인 및 그룹 과외 : 교사가 가정에 방문하거나 자녀가 교사나 이웃 가정에 방문하여 개인 또는 그룹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지도받는 경우
- ⑥ 교재교구 등 방문교육 : 학습지와 다르게 교구구입이 추가 되고 선생님 방문교육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모두 여기에 포함됨. 예) 하바, 오르다, 몬테소리, 기베 등
- ⑦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정기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해당 예) 홈런, 아이스크림 등

IV. 정부지원 양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

1. 정부는 가정내양육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 월 생 자녀는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이용 중임 ② 과거에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미이용 ③ 이용 경험 없음

1-1. 년 월 생 자녀가 시간제보육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 ① 매일 ② 주 3~4회 ③ 주 1~2회 ④ 격 주 ⑤ 월 1회

1-2. 년 월 생 자녀가 시간제보육 이용 비용으로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월 ()천원

1-2. 년 월 생 자녀를 위해 매월 내는 시간제보육료가 어느 정도 부담됩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음 ③ 부담됨 ④ 매우 부담됨

3. 정부는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난감 및 도서대여, 부모-자녀 프로그램, 양육상담 및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년 월 생 자녀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 체험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용 경험이 있는 서비스를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 ☐ ① 장난감 대여 ☐ ② 도서 대여 ☐ ③ 양육상담 ☐ ④ 부모자녀프로그램 ☐ ⑤ 부모교육
☐ ⑥ 기타() ☐ ⑦ 기타()

3-1. 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V.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

1. ____년 ____월 ____생 자녀를 낳 시간에는 주로 돌보는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주 양육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부모 ☞

☐ ② 혈연인(친외조부모, 친인척 등)

☞ 문항 1-1로

☐ ③ 비혈연인(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파출부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모 등) ☞ 문항 1-2로

- 1-1. ____년 ____월 ____생 자녀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가족이나 친인척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이 자녀를 1주일 기준으로 가장 오랜 시간동안 돌봐주는 가족 또는 친인척을 골라 주세요.)

① 동거 친조부모 ② 동거 외조부모 ③ 비동거 친조부모

④ 비동거 외조부모 ⑤ 동거 친인척 ⑥ 비동거 친인척 ⑧ 비해당(비혈연인 지원)

- 1-2. ____년 ____월 ____생 자녀를 돌보는 비혈연인은 누구입니까?

(※ 이 자녀를 1주일 기준으로 가장 오랜 시간동안 돌봐주는 가족 또는 친인척을 골라 주세요.)

① 동거 비혈연인 (주5일 이상) ② 아이돌보미 ③ 베이비시터

④ 파출부·가사도우미 ⑤ 이웃 보육모 ⑥ 기타() ⑧ 비해당(혈연인 지원)

2. ____년 ____월 ____생 자녀를 주변에 있는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개인 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② 비용이 부담되어서
③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④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⑤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⑥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⑦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⑧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⑨ 기관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⑩ 기타()

3. 혈연 또는 비혈연이 이 자녀를 주로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혈연 ()번	비혈연 ()번
------------------------------	-------------------------------

① 하루 종일(정기적으로)

② 하루 몇 시간씩(정기적으로)

③ 필요할 때마다(불규칙적으로)
(☞ 문항 12으로)

④ 부모 출근 후~기관 등원 전

⑤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 전

⑥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하원 후~부모 퇴근 전

4.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혈연인 또는 비혈연인)에게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비해당 8 기입함)

혈연 ()번	비혈연 ()번
--------------------	---------------------

- ① 지불 ② 지불 안 함

4-1.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 주십시오.

- 1) 혈연 월 () 천원
2) 비혈연 월 () 천원

VI. (가구 질문) 가정양육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

1. 귀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시작 연령으로 몇 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세

2. 아동의 발달 특성 상 만 3세 이상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 3세 이상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정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절대 반대
 ☞ 문항 2-1로 ☞ 문항 2-1로

2-1.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이유:

3.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문항 3-1로 ③ 고민 중

3-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추가로 낼 비용이 부담돼서
- ②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 ③ 초등학교 선행 학습에 학원이 적합해서
- ④
- ⑤ 기타()

4. 2023년부터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2023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 2025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부족 ④ 절대 부족
 문항 41로  문항 4-1로

4-1. 부모급여(2023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 2025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수준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세 : 아동 1인당 월 ()만원 1세 아동 1인당 월 ()원

VI. (가구 질문) 가구 특성 및 영유아 부모에 관한 질문

1. 귀댁 가구의 가구원은 총 몇 명입니까?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 ⑥ 7명 이상

2. 귀댁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동 기준으로 응답하며 기타 가구원은 제외함.)

① 조부모+부모+자녀 ② 조부모+한부모+자녀 ③ 한 조부모+부모+자녀 ④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⑤ 부부+자녀 ⑥ 한부모+자녀 ⑦ (한)조부모+자녀 ⑧ 친인척+자녀 ⑨ 기타()

3. **자녀 부모**의 연령, 학력과 건강상태, 직업, 월평균소득을 질문합니다.

구분	부	모
1) 만 연령으로 몇 세입니까? (※ 2022년 8월 1일 기준)	만 세	만 세
2)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중퇴인 경우 이전 학력으로 기입합니다.) ① 고졸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수료 이상		
3)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건강 ② 질병 ③ 장애(법정) ④ 질병과 장애		
4)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취업 ② 육아휴직 중 ③ 미취업		
5)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⑥ 농·임·어업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숙련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⑪ 무직, 주부(가사) ⑫ 군인, 학생		
6) 취업 중이라면 일주일에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시간	시간
7)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기준)	만원	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